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159-000068-10

PHWR Vol 5-GL2012020

ISSN 2234-8433

2013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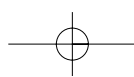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Division of HIV and TB Control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목 차

- 제1편_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총괄 2
- 제2편_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12
- 제3편_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63
- 제4편_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212
- 제5편_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251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총괄

○ Contents

○ 1. 국가결핵관리사업 개요	3
● 가. 목적	3
● 나. 비전과 목표	3
● 다. 결핵관리사업 체계	4
○ 2.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개요	5
● 가. 배경 및 필요성	5
● 나. 사업 내용	7
● 다. 법적근거	8
○ 부록. 홍보 가이드라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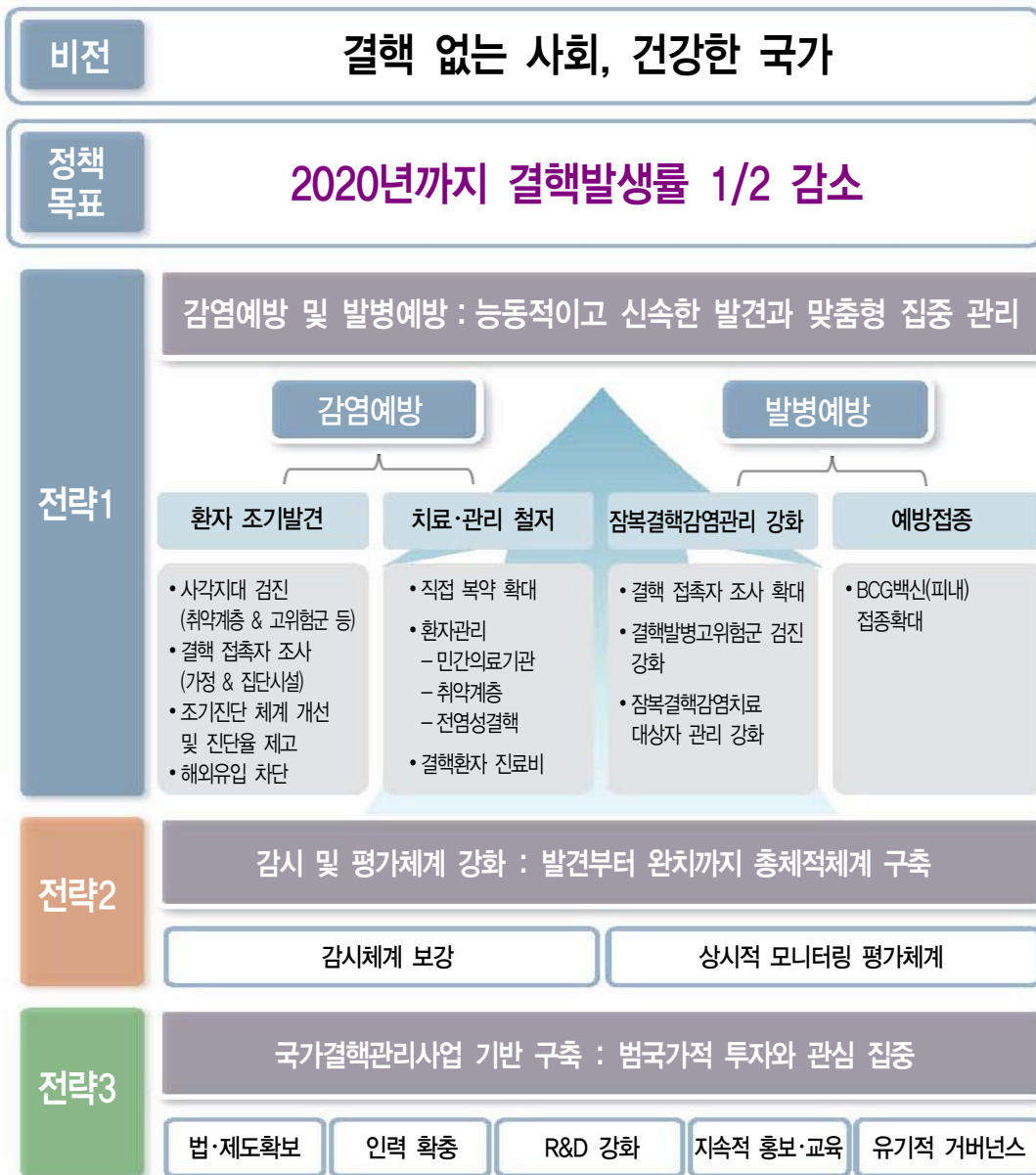


국가결핵관리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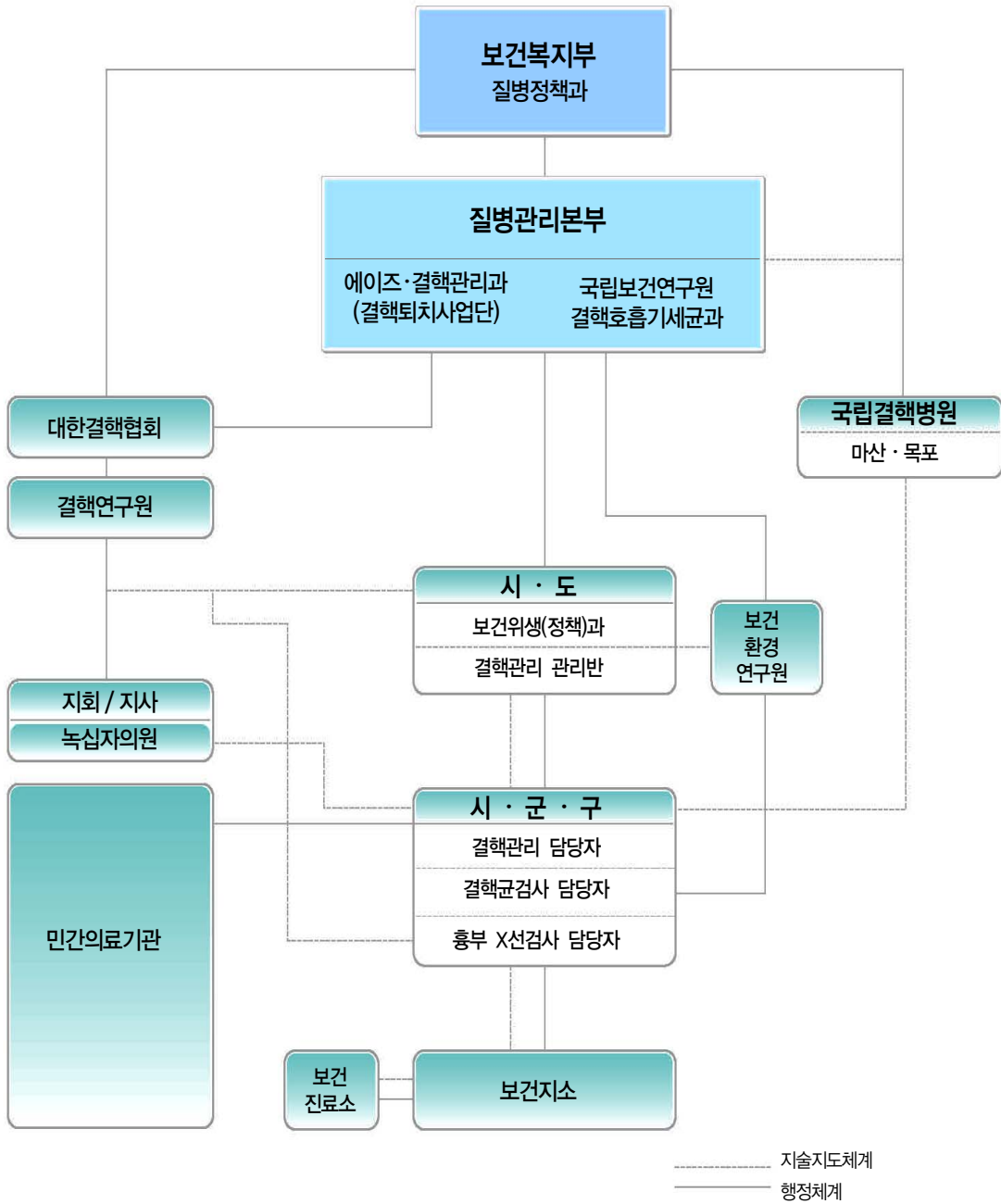
가. 목적

-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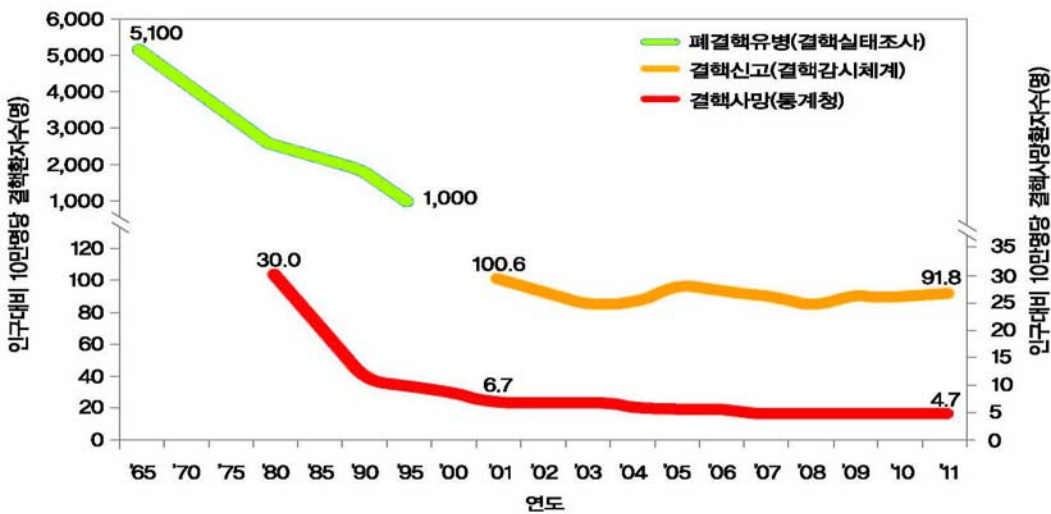
다. 결핵관리사업 체계



가.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결핵문제 및 증가(반전)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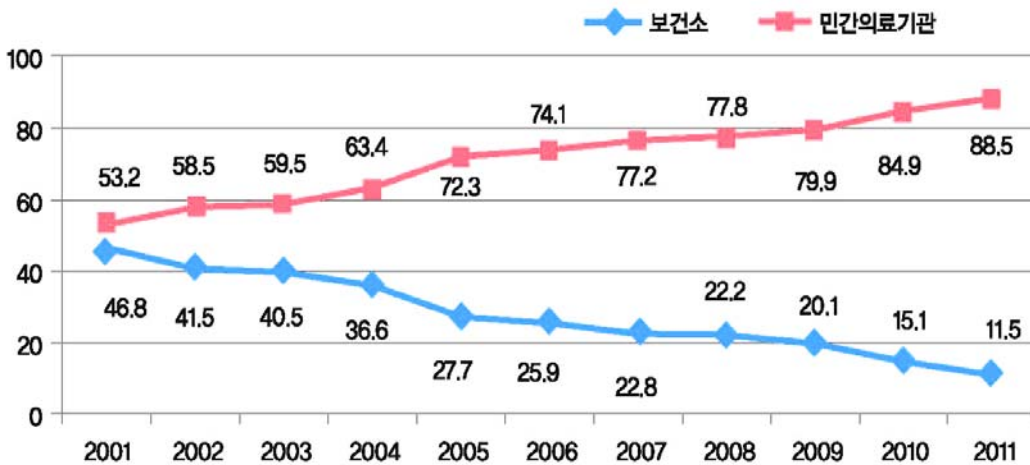
- 1962년부터 1995년까지는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결과 빠른 속도로 환자가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 속도 둔화 (1965년 1,240천명 → 2000년 259천명)



자료원 : 1. 제7차전국결핵실태조사결과, 보건복지부·대한결핵협회, 1995
 2.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2012
 3.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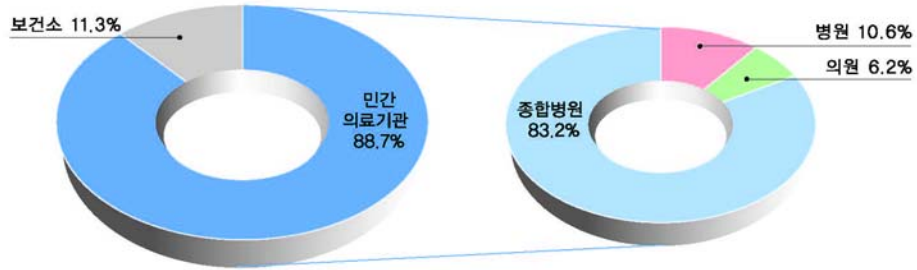
■ 결핵환자의 민간의료기관 선호도가 증가

- 보건의로 환경 변화로 인하여 결핵환자의 민간의료기관 선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료원 :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2012

- 결핵 신고 신환자 중 민간의료기관 신고 비율이 '01년 53.9%에서 '11년 88.7%으로 증가



- 중소병원 및 의원 1개소당 결핵환자 평균 7명 발생,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지원하는 것은 비용효과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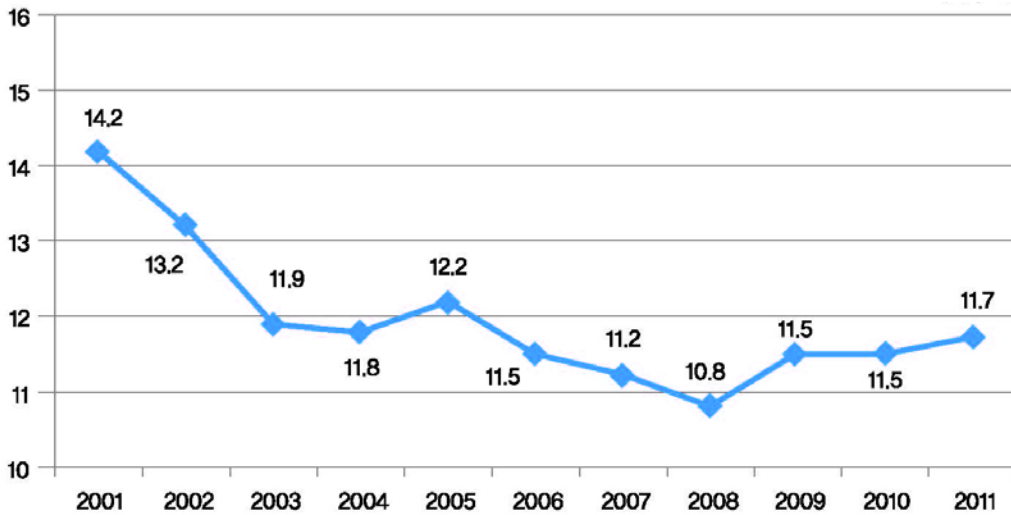
의료기관 수(개)	116	4,200
심평원청구건수(건)	41,962	29,836

자료원 : 1.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2012
 2. '10 의료기관 심사평가원청구건수 71,798건(4,316개 의료기관)

■ 결핵재발환자 추이(2001년~2011년)

재발비율

(단위 : %)



자료원 :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질병관리본부, 2012

■ 다제내성 결핵환자 현황

-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신환 810명, 재발 1,000명으로 전체 1,800명 추정(Global TB WHO, 2011)
- MDR-TB 및 XDR-TB는 장기적 치료(약 18개월 이상) 및 약제비 부담 등으로 완치가 어렵고 호흡기를 통해 타인에게 확산될 우려가 큼(전염성 결핵환자 1명은 10~15명을 감염시킴)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결핵은 우리나라 감염병 중 환자 발생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아 감염과 발병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지원 필요

- 결핵환자의 치료중단 주요인은 경제적 부담임
- 결핵은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타인에게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전염성 결핵환자 격리 필요

나. 사업 내용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

- 의료기관 결핵(호흡기)환자의 가족·동거인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지원

■ 의료기관 결핵관리

- 결핵관리운영비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상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를 위한 운영비 지원
- 결핵환자관리비지원
 -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일정 이하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비(환자등록, 보건교육, 복약상담 등) 지원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 결핵(다제내성 및 비순응)환자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결핵환자의료비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의 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다. 법적근거

-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투약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인(檢案)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9조(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 및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결핵예방법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결핵예방법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법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 결핵예방법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결핵예방법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경비
 6. 제20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홍보 가이드라인

가. 홍보 메시지(안)

- 결핵환자의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드리겠습니다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및 결핵담당자를 통하여 치료를 마칠 때까지 보건교육, 복약관리, 내원독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사회, 결핵 없는 나라! 결핵ZERO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결핵예방 수칙,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침 에티켓
 - ▶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 ▶ 2주 이상 기침 시 가족과 친구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 ▶ 2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결핵 검진은 필수!

- 결핵은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 ▶ 결핵은 호흡기 감염성 질환이므로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
 - ▶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핵검사는 필수!
 - ▶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는 필수!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 Contents

○ 주요변경사항	13
○ 1. 개요	14
○ 2. 사업추진체계	15
○ 3. 사업내용	17
● 가. 지원대상	17
● 나. 지원범위	17
● 다. 지원비용	18
● 라. 지원원칙 및 지급기준	21
○ 4. 사업추진방법	22
● 가. 사업시행 절차	22
● 나. 의료기관의 역할	23
● 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역할	26
● 라. 결핵환자접촉자검진실시 기준	28
● 마. 쿠폰작성방법	33
○ 부록. 1. 관련서식	39
○ 2. 관련Q&A	58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내용	검진비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참고 18p)
	PPD시약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상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무상배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접접촉자분류 - 가족·동거인 - 독거 - 집단시설 - 참여거부 - 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첩발급여부 - 가족·동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첩발급 · 검진 거부 · 자비 검진 - 독거 - 집단시설 - 접촉자검진발견
	추가검진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검사대상자 - 1차검사결과 흉부 X선은 정상 또는 타질환 이고 TST 음성인 대상자 중 만 18세미만이거나 결핵 고위험군¹⁾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0주 추가검사대상자 - 만 18세이하 또는 결핵 고위험군¹⁾인 자가 처음 검사결과 흉부 X선 정상(타질환)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IGRA 검사 미시행)

1) 결핵고위험군 : 장기간스테로이드사용자(예정자),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규폐증, HIV(+),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자, TNF 길항제 사용자



개요

가. 사업 목적

-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 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

나. 사업 목표

- 결핵 진료 및 신고하는 의료기관의 접촉자검진사업 100% 참여
-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100%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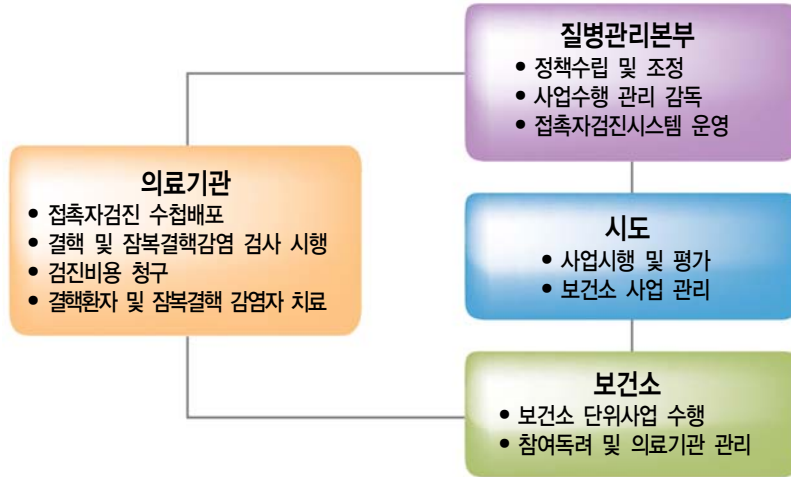
다. 추진전략

공공	▶	접촉자 조사를 위한 체계 및 인프라 구축(예산 및 행정지원 등)
민간	▶	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실시(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

라. 추진경과

2008.3.19	결핵퇴치 2030 Revision 수립 - 접촉자 조사관리 강화 및 접촉자조사·잠복결핵감염 치료의 효과적 수행, 감시
2010.1.1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 -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건강진단 등의 조치
2010.1.25	결핵예방법 전면개정 -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관리
2011.4~5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시범사업 시행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의료기관 대상 - 전염성 호흡기결핵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흉부 X선) 및 잠복결핵감염(TST, IGR) 검사지원
2011.6~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전면 시행
2011.9~	결핵검진에서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추가지원
2011.11~	전염성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에서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로 지원대상 확대
2012.2~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 추가 지원

가. 사업수행체계도



나.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및 기술지원
- 지자체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접촉자검진사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도

- 시·군·구 보건소 사업 관리 및 보고
 - 시·군·구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예산 집행 결과 보고 포함)
- 시·군·구 보건소 모니터링 및 평가
 - 접촉자검진수첩 및 PPD시약 관리 모니터링
 - 사업실적 평가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홍보 및 보건소 담당자 교육
- 예산확보 및 집행

●● 시·군·구

- 사업 등록 및 관리
 - 참여의료기관 등록 및 관리
 - 접촉자검진내역 등록 및 관리
 - 관할 의료기관의 접촉자검진수첩 및 PPD시약 (등록)관리
- 관할 의료기관에 접촉자검진수첩 배포 및 PPD시약 구입·배포
- 해당 의료기관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급
-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예산 집행 결과 보고 포함)
- 예산확보 및 집행

●● 의료기관

- 의료기관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에게 접촉자검진수첩 배포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시행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용 청구
- 무상배정 받은 PPD시약 관리 및 사용현황 보고
- 실적관리 및 보고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 진단코드 A15.00~16.91, A19.1~A19.9, U88.0, U88.1
 - 단, 소아(96개월 미만)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결핵 여부와 상관없이(폐외결핵 포함) 모든 소아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및 동거인 등)
 - 예) 68개월 소아결핵환자가 폐외결핵으로 진단받아 치료중인 경우 소아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접촉자검진 지원가능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 하루 8시간 이상·1주일 5일이상·최근 3개월 이상 매주 거주지를 방문한 자

- 지원제외대상
 -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 직장동료, 간병인, 친구 등 같이 거주하는 사례가 아닌 경우
 - 학교, 근로산업체 등 집단 및 수용시설 등에서 호흡기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하여 접촉자조사 실시

나. 지원범위

●● 결핵검진

- 흉부 X선검사
- 객담도말 검사 : 항산균검경, 항산성 집균도말, 항산성 형광염색 집균도말
- 객담배양 검사 : 항산성 고체배양, 항산성 액체배양
 -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는 흉부 X선검사 결과 결핵의심자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검진

- TST : Tuberculin Skin Test(투베르쿨린 검사)
- IGRA 검사 : 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인터페론감마분비 검사)
 - ※ 주의사항 : 흉부 X선검사는 쿠폰을 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이 되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권장연령에 맞춰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

다. 지원비용

●●● **검진비 수가(2013.2.1~2014.1.31)**

(단위 : 원)

항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진찰료*	만6세이상	17,300	15,700	14,100	13,200
	만6세미만	17,900	16,300	14,800	13,900
흉부 X선	만8세이상	7,700	7,400	7,100	6,500
	만8세미만	8,500	8,200	7,900	7,100
결핵피부반응(TST)		1,900	1,800	1,800	1,800
인터페론(IGRA)		102,100	98,100	94,200	90,000
항산균검경		1,800	1,700	1,600	1,600
항산성집균도말		4,400	4,300	4,100	4,100
항산성형광염색집균도말		6,700	6,400	6,200	6,100
객담배양_고체		16,900	16,300	15,600	15,600
객담배양_액체		16,900	16,300	15,600	15,600

※ PPD 시약은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무상 배정

* 진찰료

- ① 검사처방 시 발생하는 진찰료(처방비)
- ② TST(결핵피부반응검사) 결과 판독시 발생하는 진찰료(판독비)
- ③ 흉부 X선검사, IGRA(결핵균특이항원자극인터페론)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진찰료

●● <참고자료> 2013년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 검진수가 계산

(단위 : 원)

연령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만8세이상	흉부 X선	25,000	23,100	21,200	19,700
	흉부 X선, IGRA	127,100	121,200	115,400	109,700
	흉부 X선, TST 시행	26,900	24,900	23,000	21,500
	흉부 X선, TST 시행, IGRA	129,000	123,000	117,200	111,500
	TST 시행	19,200	17,500	15,900	15,000
	TST 판독	17,300	15,700	14,100	13,200
	TST 판독, IGRA	119,400	113,800	108,300	103,200
만6세이상~만8세미만	흉부 X선	25,800	23,900	22,000	20,300
	흉부 X선, IGRA	127,900	122,000	116,200	110,300
	흉부 X선, TST 시행	27,700	25,700	23,800	22,100
	흉부 X선, TST 시행, IGRA	129,800	123,800	118,000	112,100
	TST 시행	19,200	17,500	15,900	15,000
	TST 판독	17,300	15,700	14,100	13,200
	TST 판독, IGRA	119,400	113,800	108,300	103,200
만5세이상~만6세미만	흉부 X선	26,400	24,500	22,700	21,000
	흉부 X선, IGRA	128,500	122,600	116,900	111,000
	흉부 X선, TST 시행	28,300	26,300	24,500	22,800
	흉부 X선, TST 시행, IGRA	130,400	124,400	118,700	112,800
	TST 시행	19,800	18,100	16,600	15,700
	TST 판독	17,900	16,300	14,800	13,900
	TST 판독, IGRA	120,000	114,400	109,000	103,900
만5세미만	흉부 X선	26,400	24,500	22,700	21,000
	흉부 X선, TST 시행	28,300	26,300	24,500	22,800
	TST 시행	19,800	18,100	16,600	15,700
	TST 판독	17,900	16,300	14,800	13,900

※ 최종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생된 진찰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검진비 지원 예시

- 예시 1) 만 20세 성인, 종합병원 방문
 - 2013년 3월 5일 : 검사처방(흉부 X선, TST, IGRA)
검사시행(흉부 X선, TST, IGRA)
흉부 X선검사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3월 8일 : TST 판독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3월 10일 : IGRA 검사 결과 나눔
 - 2013년 3월 15일 : IGRA 검사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검사비 : 7,400원(흉부 X선)+1,800원(TST)+98,100원(IGRA)
 - 진찰료 : 15,700원(처방비)+15,700원(TST 판독비)+15,700원(IGRA결과확인 진찰료)
 - ※ 3월 5일 검사처방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3월 8일 TST 판독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3월 15일 IGRA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만일 IGRA 검사 결과는 나왔으나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검사결과 확인에 대한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음
- 예시 2) 만 7세 소아, 상급종합병원 방문
 - 2013년 4월 1일 : 검사처방(흉부 X선, TST)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4월 2일 : 흉부 X선, TST 시행 <의료기관 방문>
 - 2013년 4월 4일 : TST 판독함, 흉부 X선 결과 확인 <의료기관 방문>
 - 검사비 : 8,500원(흉부 X선)+1,900원(TST)
 - 진찰료 : 17,300원(처방비) + 17,300원(판독비)
 - ※ 4월 1일 검사처방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4월 4일 흉부 X선, TST 판독에 대한 진찰료 1회 발생
- ▶ 4월 1일에 검사 처방을 하고 4월 2일에 검사만 시행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지만 진찰료는 발생하지 않음

라. 지원원칙 및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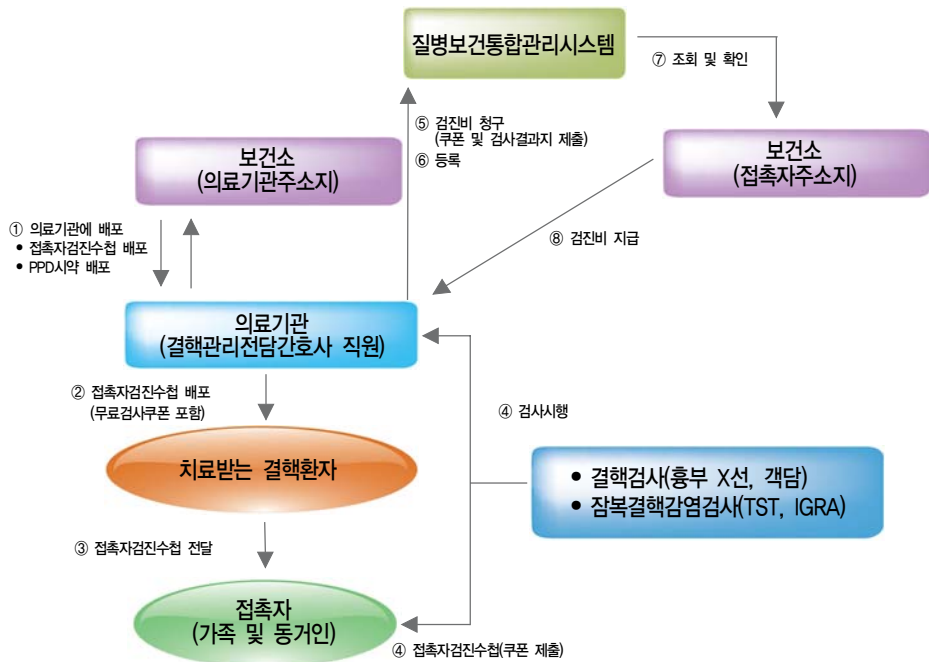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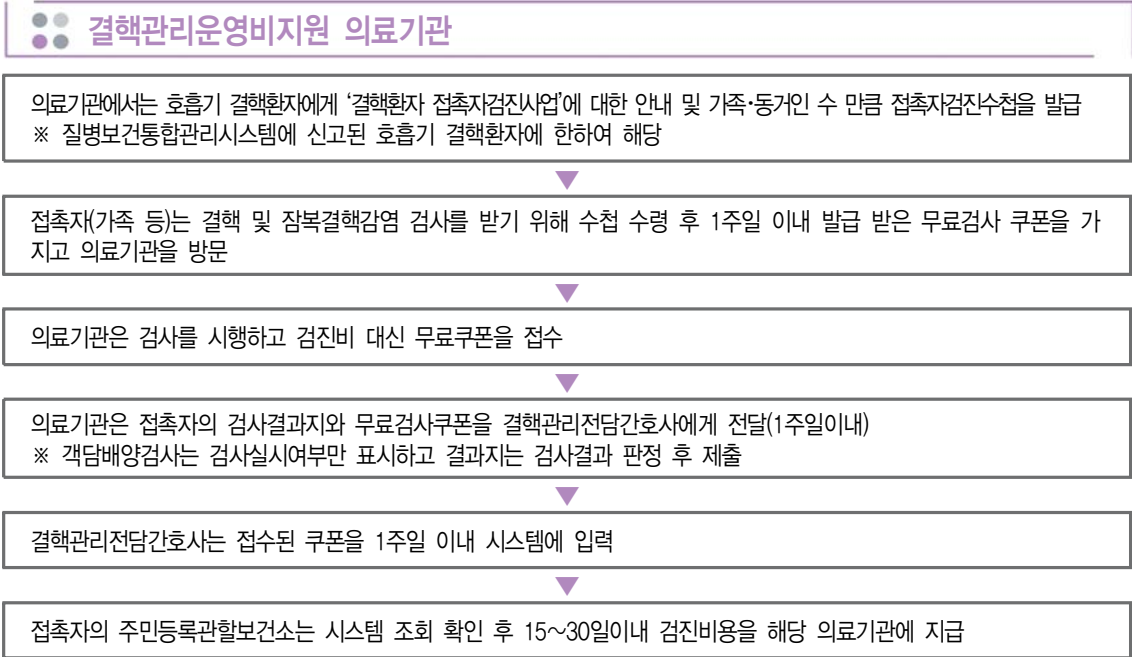
● 지원원칙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되어 치료받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 ※ 사전에 접촉자검진쿠폰을 이용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재발환자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음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에서 인정한 검사일정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라. 결핵접촉자 검진실시 기준 참고)
- TST 실시 후 48~72시간 이내 판독 한 경우
 - ※ TST 판독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검사비는 지원 가능
 - 흉부 X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임신부 및 당일 해당 병원에서 다른 진료로 흉부 X선검사한 경우 잠복결핵 감염검진만 시행하여도 지원가능
 - ※ 지원 시 다른 진료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함
- 흉부 X선검사결과 결핵의심인 경우만 객담검사 지원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는 동시에 최대 3개까지 지원가능. 단, 처방시 발생하는 진찰료는 1회만 지원
 - ※ 흉부 X선검사 처방일(판독일)과 객담검사 처방일이 동일한 경우 진찰료 1회 지원

● 지급제외 기준

- 본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없음
- IGRA 검진비 지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음
 - ❖ 5세미만 : 비용청구 불가능
 - ❖ 5~18세 : 고위험군¹⁾ BCG예방접종을 1세(12개월)이후 또는 2회접종한 경우 시행
 - ❖ 13~18세 : TST검사결과 양성 확인 후 시행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대한 처방을 하였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진찰료(처방비)를 청구할 수 없음

가. 사업시행절차



나. 의료기관의 역할

-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참여확인서'(서식 1)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호흡기 결핵환자(A15.00~A16.91, A19.1~A19.9, U88.0, U88.1)로 치료중인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의 수를 문의하여 해당 수 만큼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
 - ※ 단, 소아(96개월미만)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 여부와 상관없이(폐외결핵 포함) 소아결핵환자로 치료중인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지원
- 검사시행 후 접촉자검진비 관할 보건소로 청구(쿠폰 및 검사결과지 포함)
 - 주기적으로 접촉자의 무료검사 쿠폰 및 검사결과지를 관할 보건소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 무상으로 배정받은 PPD시약 사용현황을 매월 관할보건소에 송부

● 결핵환자의 신고 및 교육

- 결핵환자 진단 시 지체 없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
- 호흡기결핵환자의 접촉자검진비 국가지원 사항 안내
- 발급받은 접촉자검진수첩으로 1주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및 관리

■ 접촉자검진수첩 발급

- 발급대상 : 호흡기결핵환자로 치료중인 자(p17 가.지원대상 참고)

※ 단, 소아(96개월미만)결핵환자의 경우 진단코드와 상관없이(폐외결핵포함) 소아결핵환자로 치료중인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지원

- ※ 제외 : 전입하여 사전에 무료검사쿠폰으로 검진을 실시한 경우
- 발급시기 : 결핵을 진단받은 후 즉시 발급
 - 환자 가족 및 동거인 수 만큼 진료 의료기관에서 발급

■ 접촉자검진수첩 관리

-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촉자검진수첩을 배포 받을 때 인수증(서식 2)을 작성
 - 추가 수첩배포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요청
- ※ 폐업 또는 사업참여를 중단할 경우 남은 접촉자검진수첩은 해당보건소로 반납
- 대상자에게만 발급하여야 하며, 만일 관리 소홀로 분실한 경우 분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보건소에 분실사유서(서식 3)를 제출
- 발급받은 수첩을 환자 또는 접촉자가 분실하였을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쿠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PPD시약 관리

- 보건소에 PPD시약 수요량을 제출하고 배정 받을 때 기존에 제출한 수요량이 일치한지 확인
 - 추가 PPD시약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요청
- 배정 받은 PPD시약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대상자에게만 사용
- 매월 5일 전달에 사용한 PPD시약 사용현황을 제출(서식 4)
- 만일 관리 소홀로 분실한 경우 분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보건소에 분실사유서(서식 3)를 제출
 - ※ 폐업 또는 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남은 PPD시약을 해당보건소에 반납

PPD시약 보관 및 사용시 주의사항

- 2~8°C 온도에서 보관
- 온도가 자주 변하는 냉장고 문쪽에는 보관하지 않음
- PPD 시약의 Batch No.와 유효기간을 확인
- 시약을 개봉한 시간을 바이알에 적고, 24시간이 지나면 폐기
- BCG 백신과 다른 곳에 보관

●● 검사 실시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결핵 : 흉부 X선검사,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대상 : 흉부 X선검사결과 결핵의심 판정자
- 잠복결핵감염 : TST, IGRA
 - ※ 주의사항 : 흉부 X선검사는 쿠폰을 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이 되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경우 권장연령에 맞춰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8~10주 추가검사(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
 - 만 18세이하 또는 결핵 고위험군¹⁾ 자가 처음 검사결과 흉부 X선 정상(타질환),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 (IGRA 검사 미시행)

●● 추서관리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경우 본인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여 치료
 - 잠복결핵감염치료는 고위험군¹⁾이 아닌 경우는 35세미만으로 한정

- ※ 치료를 하지 않는 잠복결핵감염자에게서 결핵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보건 교육 실시

●● 비용 청구

■ 청구방법

- 접촉자의 검사결과가 나오면 검사쿠폰을 작성하신 후, 검사결과지 및 검사쿠폰을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쿠폰 검사 판독일에 자비체크
 - ※ 접촉자검사결과지 : 흉부 X선검사결과지(판독지), IGRA 검사결과지,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결과지

■ 비용지급기한 및 절차

- 처방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여 접촉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접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처방일 당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최종 주민등록상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TST 판독의 경우 TST 처방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기한 : 의료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15~30일 이내 지급

●● 청구 및 지급내역현황 조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검진사업-검사비관리'를 통해서 확인가능
 - 홈페이지 관리자를 통한 개별 가입 및 로그인
 - 가입시 권한 : 의료기관 접촉자검진비조회
- 보건소에서 검진비 입금시 가능한 아래와 같은 문구로 입금함
 - 결핵(주소지 시·군·구 보건소명)문구로 입금

예시) 서울△△구보건소에서 ○○○ 의료기관에 5건에 대하여 240,000원 입금시 입금자 명에 결핵(△△구보건소)으로 입금

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역할

●● 접촉자검사내역 등록

■ 접촉자검사쿠폰 등록시기 및 방법

- 등록시기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접촉자 확인 후 즉시
 - ※ 결과 나온 후 1개월 이내 접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결과 확인시 발생하는 진찰료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
- 등록방법
 - ① 사업관리-접촉자검진-환자목록에서 호흡기결핵환자의 수첩발급현황 등록
 - 분류 : 가족·동거인_수첩발급/참여거부/자비(보건소), 독거, 집단시설, 접촉자검진발견
 - 결핵환자 추서관리를 통해 독거, 집단시설, 참여거부 등 등록
 - ② '접촉자관리(등록)' 메뉴에서 쿠폰에 작성된 결핵환자 조회 후 접촉자검진내역 등록
 - 추가접촉자 및 추가검사도 동일하게 등록
 - ※ 다른 관할에서 등록한 접촉자의 검사내역 조회는 정보가 제한됨

■ 접촉자검사쿠폰 등록시 주의사항

- 접촉자검진쿠폰 등록
 - 가족·동거인·수첩발급수를 입력한 만큼 접촉자 등록 가능
 - 독거, 집단시설, 접촉자검진발견을 체크한 경우는 접촉자 등록 불가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호흡기결핵으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불가능
- 접촉자검진쿠폰 등록내역 수정
 - 검사비용과 관련된 데이터(주민등록상주소지, 검사결과, 의료기관정보) 입력시 주의
 - 검사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입력한 기관에서 삭제 및 수정가능
 - 검사비가 지급완료 된 후 등록된 다음 항목 수정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수정 요청
 - 정보광장 - 질문과답변 : '접촉자검진사업 - 수정요청서' 제목으로 첨부(서식 4)하여 비공개로 수정 요청

※ 수첩일련번호, 주민등록상주소지, 주민번호, 검사항목, 의료기관
- 수첩일련번호 및 해당 검사결과를 알고 있으나 자비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반드시 자비 또는 보건소검사 체크 후 등록
 - ※ 자비 및 보건소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내역 일부만 입력하여도 등록 가능함

●● 접촉자검사대상자 관리

■ 결핵환자 및 접촉자교육

- 결핵환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검진의 중요성 안내
- 접촉자검진비 국가지원 사항 안내
- 결핵환자의 접촉자 검진여부 확인 및 검진독려
- 추가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일정기간(8~10주) 후 추구검사의 필요성 설명 및 안내

※ 8~10주 추가검사(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
 - 만 18세이하 또는 결핵 고위험군¹⁾인 자가 처음 검사결과 흉부 X선 정상(타질환),이면서 TST 음성인 경우 (IGRA 검사 미시행)

■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 결핵으로 진단받은 자는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관리
- 잠복결핵감염자가 치료하는 경우
 - 매월 치료과정 및 결과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접촉자관리 - 잠복결핵감염자치료대장에 치료시작일, 치료상황, 최종결과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경우 담당주치의에 진료 받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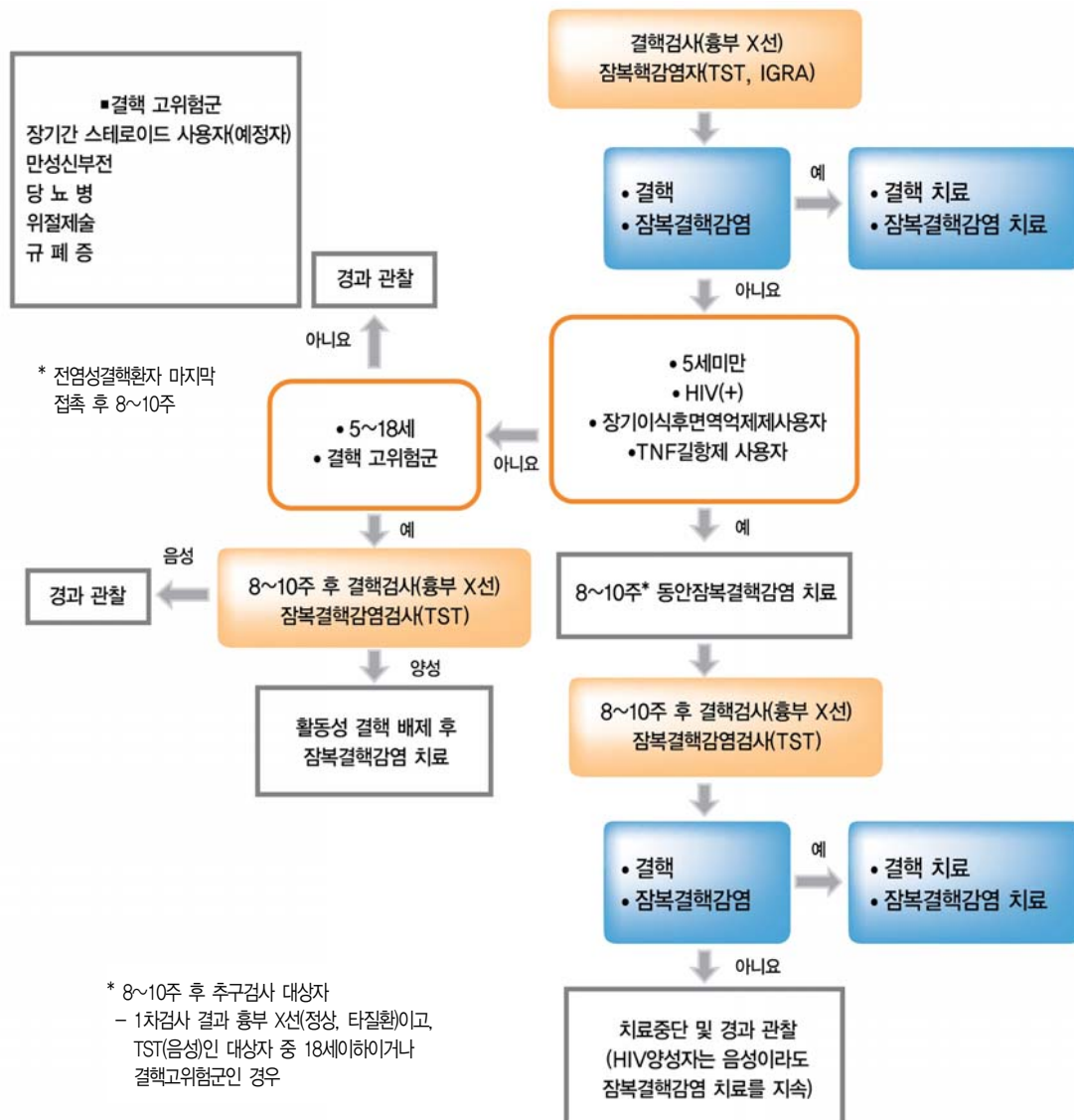
●● 접촉자검진실적 보고

- 매월 실적은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보고(서식 6)
 - 보고방법 : 시스템에 매월 5일까지 전월 실적을 등록하여 관할 보건소에 보고
 - 보고내용 : 접촉자검진내역
 - 실적은 쿠폰 내역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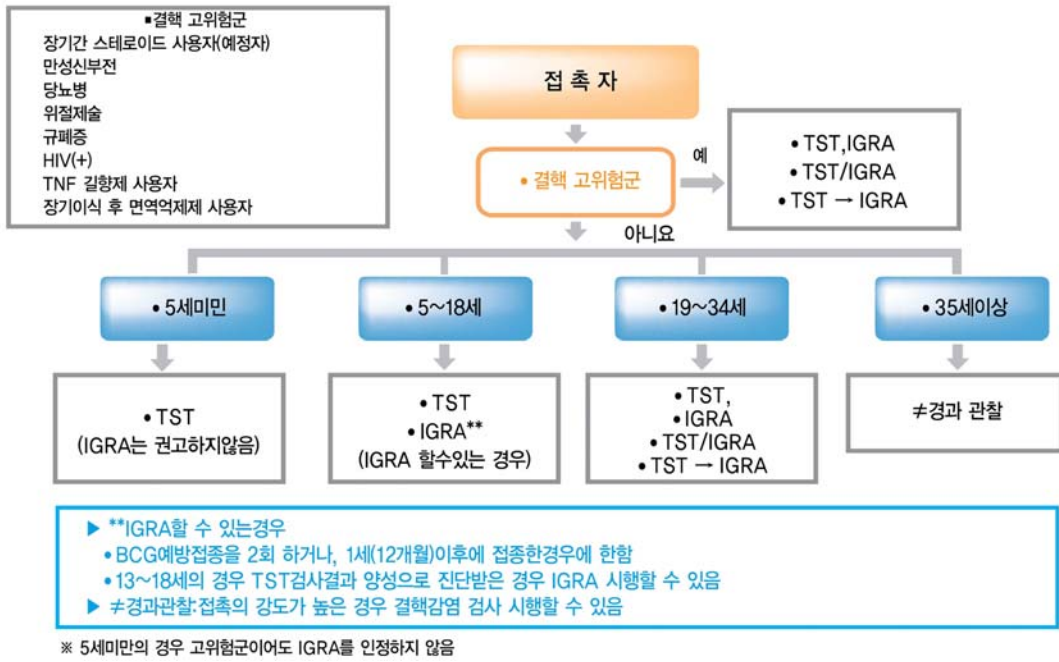
라.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실시 기준

- 2011년 결핵진료지침(IX. 환자관리 2. 접촉자 검진)에 근거하여 실시
- ※ IGRA 검사는 처음 1번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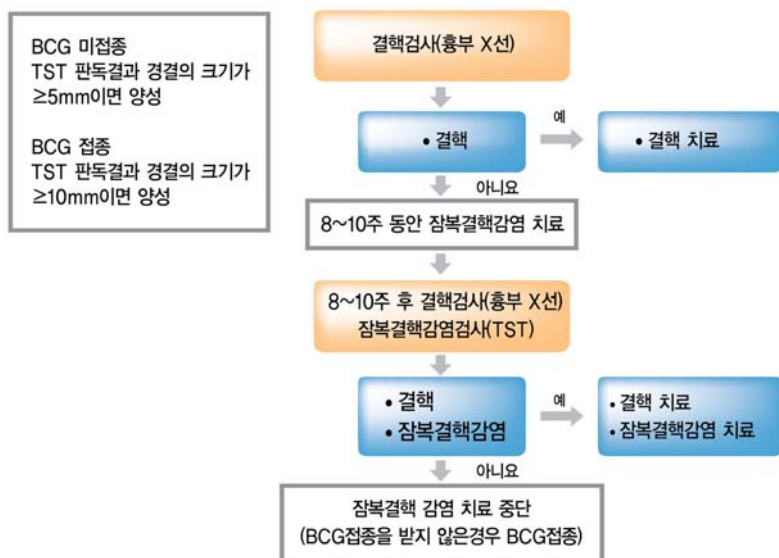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접촉자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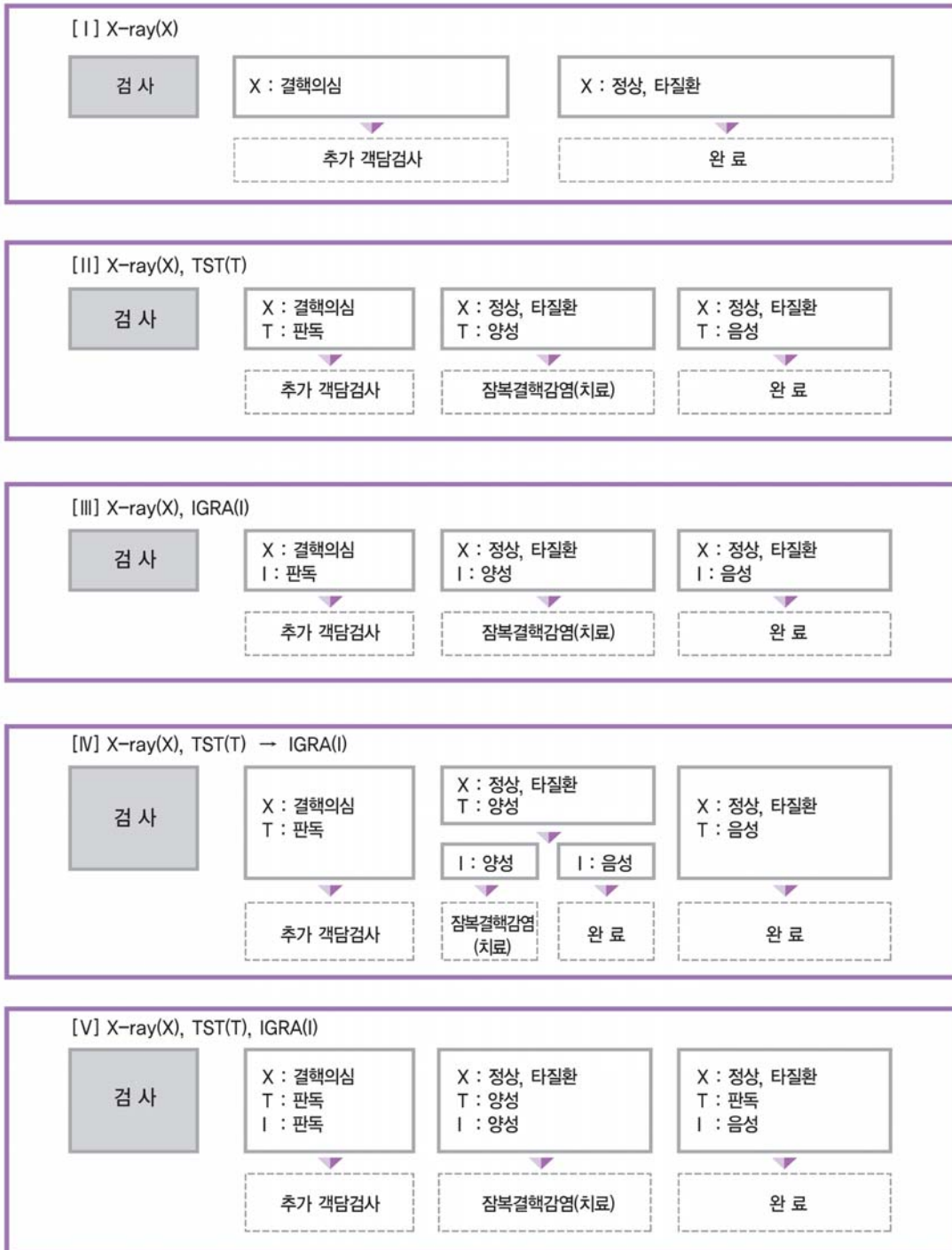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접촉자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검사의 적응증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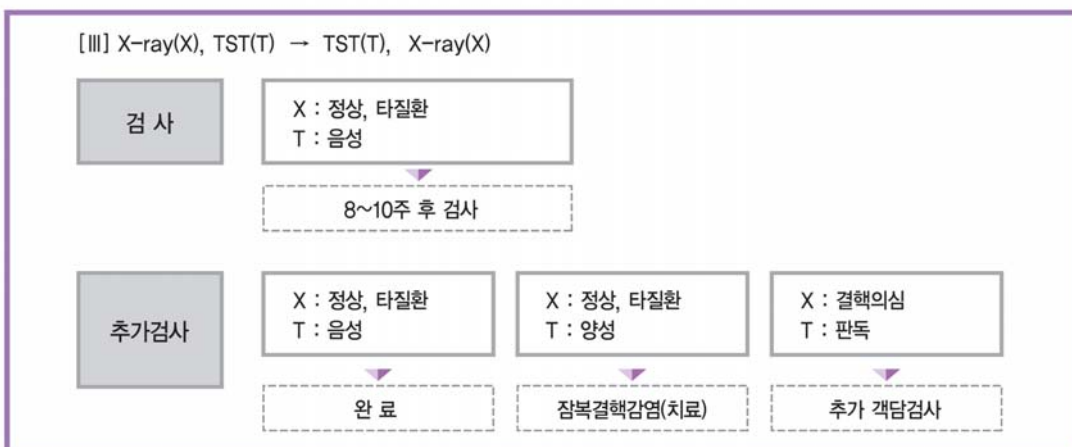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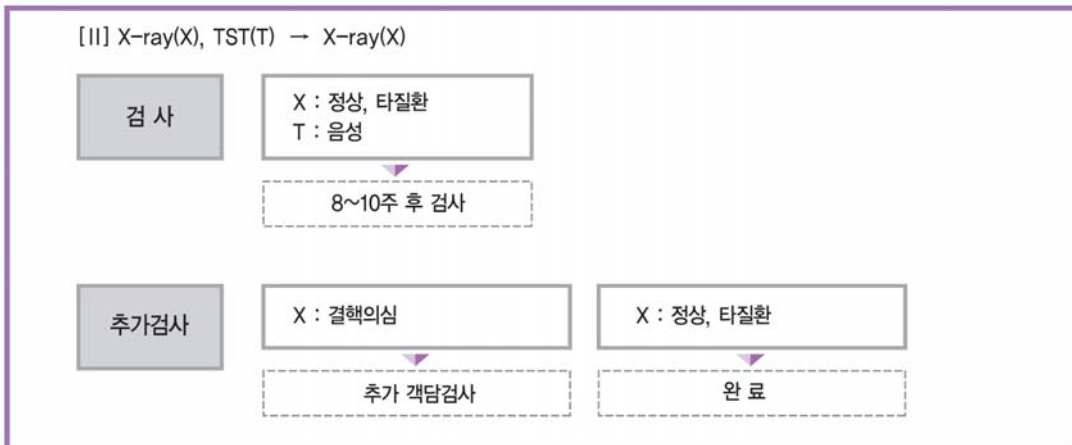
●● 밀접접촉자(가족·동거인)의 접촉자 검진 : 신생아



■ 1차 검사



■ 1차검사 후 8~10주 후 추가검사



■ 흉부 X선검사

- 결과 : 정상, 결핵의심, 타질환

■ 투베르쿨린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 주사 방법 :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의 팔꿈치 5~10cm 아래의 전박 내측부위에 PPD 시약(RT-23 2TU) 0.1ml를 피내 주사
 - ※ 피내에 0.1ml PPD 시약을 정확히 주사하면, 직경 6~10mm의 팽진(wheal)이 생김
- 판독 방법
 - 피내주사 48~72시간 후에 형성되는 지연형 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경결을 측정하는 것임
 - 팔의 긴축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경결의 가장 긴 직경을 mm 단위로 측정
 - ※ 홍반(발적)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며, 경결이 없는 홍반은 0mm로 기록함
- 판독 결과
 - 투베르쿨린 검사 양성(positive)
 - 1차 검사에서 10mm 이상인 경우
 - BCG를 접종하지 않은 신생아에서 5mm 이상인 경우
 - 투베르쿨린 검사 양전(positive conversion) : 8~10주 이후에 실시한 2차 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을 경우, 양전으로 판정하며 이는 최근감염을 의미함
 - 5세 미만, 면역저하자 : 1차 결과보다 6mm이상 증가한 모든 경우 (3mm → 9mm)
 - 5세 이상, 정상면역자 : 10mm이상이면서 1차 결과보다 6mm이상 증가한 경우 (6mm → 12mm)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방법 : 혈액 검사
 - ※ 결핵균에 대한 인체의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결핵균에 감염된 림프구들은 세포매개 면역 반응을 통해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능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결핵균 특이 항원을 사용하여 수치 측정
- 결과
 - 양성
 - Quantiferon-TB Gold In-tube : 0.35 IU이상
 - T-SPOT.TB : Spot 수 10개 이상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결과 : 양성-결핵

마. 쿠폰작성방법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쿠폰(1차검사)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쿠폰(1차검사)>_앞

0000-0000-0000

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쿠폰(1차검사)

수신 : _____		보급수관 : _____	
가족동거인 수 : _____ 명			
환자정보		주인등록번호	
접촉자정보 (환자와의 관계 : _____)			
성명		주인등록번호	
연락처	TEL : _____ H-P : _____	개인정보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인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과거력여부	과거 결핵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과거 잠복결핵감염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기저질환여부	<input type="checkbox"/> 규폐증 <input type="checkbox"/> 위-장질환 등 <input type="checkbox"/> 알 <input type="checkbox"/> 만성신부전증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알콜중독 <input type="checkbox"/> HIV <input type="checkbox"/> 스 테로이드복용 <input type="checkbox"/> 면역억제제복용(TNF-α)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BCG 접종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미내 <input type="checkbox"/> 2회 접종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1세 이후 접종 <input type="checkbox"/> 무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사내역 : 흉부X-선, TST, (IGRA)는 동일한 날에 처방되어야 함			
	처방일	검사일	판독일
<input type="checkbox"/> 흉부X-선	<input type="checkbox"/> 정성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	///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경결 : mm	///	///
<input type="checkbox"/> IGRA	<input type="checkbox"/> Quantiferon TB-Gold in Tube <input type="checkbox"/> 양성갯수()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	///
	<input type="checkbox"/> T-Spot <input type="checkbox"/> 양성갯수()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결과	<input type="checkbox"/> 정성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잠복결핵감염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08~10주 후 추가검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여부	<input type="checkbox"/> 치료안함 <input type="checkbox"/> 치료시 처방 01월 03월 05월 07월 09월 11월 13월 15월 17월 19월 21월 23월 25월 27월 29월 31월 기타		
※ 치료 및 타진료, 추가검사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대상급종합병원	중급종합병원	병원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진료과	
	진료의사성명	연락번호	
청구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수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수첨표지에 작성된 일련번호
접촉자 작성

의료기관 작성

접촉자 작성

처방일 및 판독일 포함하여
최대 진찰료가 3회 지원됨

② 쿠폰 사용일을 TST 판독일에 작성

③ 쿠폰 사용일을 흉부X-선 판독일
또는 IGRA 결과확인일 작성

- 흉부X-선 당일 판독한 경우
흉부X-선 검사일과 동일하게 작성

의료기관 작성

- 접촉자검진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처음 사용
 - 기저질환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 체크, 임신부의 경우 반드시 체크
 - 결핵의심과 잠복결핵감염 결과 시 결핵의심으로 결과 체크
 - 흉부 X선, TST, (IGRA)는 동일한 날에 처방하고, 만일 TST양성으로 IGRA를 처방한 경우 TST판독일과 IGRA 처방일이 동일하여야 함
 - 치료 및 타진료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하여 접촉자가 부담한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고 해당 사업에서 진찰료가 지원되지 않음
 - 진료과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 (예 :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1차검사)_뒤

②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TST판독, 정밀IGRA검사시행)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사결과 및 검사내역 : TST판독, IGRA 검사는 동일한 날 처방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input type="checkbox"/> IGR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시행 : TST검사결과 양성10m이상인 경우 시행		
* 흉부X선, IGRA검사만 시행한 경우 <input type="radio"/> 번을 사용하지 마시고 <input type="radio"/>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검사와 관련된 결과는 ①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③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최종)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흉부X선, TST, IGRA검사제정일 및 TST판독일에 최종검사결과 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최종 판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			
※ 동 결과는 ①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차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접촉자 작성

▪ 분리하여 사용

▪ 접촉자 작성

- 1차검사 후 결과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②, ③ 쿠폰을 분리하여 사용함
 - ②, ③ 쿠폰은 무료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제출 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됨
 - TST를 시행하여 TST판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② 쿠폰을 제출
 - 1차검사시 흉부 X선, TST를 시행하여 TST 양성인 경우 IGRA검사 시행
 - 흉부 X선 또는 IGRA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③ 쿠폰을 제출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_뒤

5 추가검사결과 판독 쿠폰(TST판독)

접촉자정보		병문일 :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사결과 및 검사내역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 중 검사와 관련된 결과는 ●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중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접촉자 작성



▪ 분리하여 사용

6 추가검사결과 판독 쿠폰(최종)

접촉자정보		병문일 :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흉부X-선, TST, IGRA검사치환일 및 TST판독일에 최종검사결과 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최종 판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			

※ 중 결과는 ●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중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접촉자 작성

- 추가검사 후 결과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결핵의심과 잠복결핵감염 결과 시 결핵의심으로 결과 체크
 - ⑤, ⑥ 쿠폰을 분리하여 사용함
 - ⑤, ⑥ 쿠폰은 무료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제출 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됨
 - TST를 시행하여 TST판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⑤ 쿠폰을 제출
 - 흉부 X선결과를 당일 판독하지 않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⑥ 쿠폰을 제출

●● 객담도말 및 배양양성검사 쿠폰(결핵의심자)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자)_앞

-

-

⑦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

수신 : _____ 부건소장

접촉자(결핵의심)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실제거주지									
검사내역	처방일	//	〇지비	검사일	//	〇지비	판독일	//	〇지비
							⑧, ⑨, ⑩ 쿠폰사용일		
객담도말	〇균집 경(1회) ○ 양성 ○ 음성								
	〇균집 경(2회) ○ 양성 ○ 음성								
	〇균집 경(3회) ○ 양성 ○ 음성								
	〇집도말(1회) ○ 양성 ○ 음성								
	〇집도말(2회) ○ 양성 ○ 음성								
	〇집도말(3회) ○ 양성 ○ 음성								
	〇항원 양성 집도말(1회) ○ 양성 ○ 음성								
	〇항원 양성 집도말(2회) ○ 양성 ○ 음성								
객담배양	〇배양_고체(1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〇배양_고체(2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〇배양_고체(3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〇배양_액체(1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〇배양_액체(2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〇배양_액체(3회) ○ 양성 ○ 음성 ○ 검사중 ○ NTM									
※ 치료, 타진료, 추가검사료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 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대상 급중합병권	다중 합병권	다병권	다의권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진료과				
진료의사성명				연하번호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면, 팩스

※ 흉부X-선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객담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의원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시행 가능

※ 객담배양검사 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불 요청할 수 있음

▪ 접촉자 작성

▪ 의료기관 작성

▪ 접촉자 작성

▪ 처방일 및 판독일 포함하여
최대 진찰료가 4회 지원됨

 ▪ ⑧ ⑨ ⑩ 쿠폰 사용일 결과확인일에
순서대로 작성

▪ 의료기관 작성

- 흉부 X선 결핵의심이 되어 객담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체크
 - 객담도말 검사결과 후 시스템 등록(배양은 검사중으로 등록)
 - 치료 및 타진료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하여 접촉자가 부담한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고 해당 사업에서 진찰료가 지원되지 않음
 - 흉부 X선검사당일 판독하여 객담검사를 처방하는 경우 자비란에 체크(진찰료 1회 지원)
 - 진료과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 (예 :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자)_뒤

⑧ 객담도말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방문일 : 년 월 일

접촉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연락처	TEL : H-P :		

※ 중 결과는 ⑧ 쿠폰에 적성하시기 바랍니다.
 ※ 중 부분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객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분리하여 사용

⑨ 객담배양(액체)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수신 : 보건소장

접촉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연락처	TEL : H-P :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첨부 : 객담검사결과지
 ※ 객담배양(액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분리하여 사용

⑩ 객담배양(고체)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수신 : 보건소장

접촉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연락처	TEL : H-P :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첨부 : 객담검사결과지
 ※ 객담배양(고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접촉자 작성

- 객담검사 결과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
 - ⑧ ⑨ ⑩쿠폰을 분리하여 사용함
 - ⑧ ⑨ ⑩쿠폰은 무료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제출 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됨
 - 객담도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⑧쿠폰을 제출
 - 객담배양_액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⑨쿠폰을 제출
 - 객담배양_고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⑩쿠폰을 제출

〈서식 1〉 참여확인서

참 여 확 인 서			
의료기관번호		의료기관명	
기관분류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전화번호			
주소			
청구은행명		청구계좌번호	
접촉자검진수첩 인수자명		접촉자검진수첩 인수자연락처	
PPD시약 인수자명		PPD시약 인수자 연락처	
<p>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 검진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병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p>			

〈서식 2〉 인수증

인 수 증			
배포기관 (보건소명)		수량	
수령기관 (의료기관명)		수 첩 일련번호 (수첩에한함)	
위와 같이 인수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인 수 일 :		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	
배 포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4〉 PPD시약 사용현황

날짜	배정량 (vial)	사용량 (vial)	사용량(cc)		폐기량 (vial)	보관량 (vial)	Lot (제조번호)	검진 대상(건)	분실량 (vial)	반납량 (vial)
			검사량	자연 소모량						

- ◇ 1달 동안 사용한 PPD시약의 사용현황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해당 보건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바람
- 개봉한 vial을 기준으로 작성함(이틀에 걸쳐 사용한 시약은 개봉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 ※ 사용량 vial과 cc단위로 작성(1vial = 1.5cc)
 - ※ 폐기량 : 유효기간 경과하여 폐기하는 시약량
 - 자연소모량 : 시약 개봉 후 24시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시약량
 - ※ 반납량 :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중간에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보건소로 PPD시약 남은량을 반납함

예시) PPD시약 사용현황

날짜	배정량 (vial)	사용량 (vial)	사용량(cc)		폐기량 (vial)	보관량 (vial)	Lot (제조번호)	검진 대상(건)	분실량 (vial)	반납량 (vial)
			검사량	자연 소모량						
1월 1주	100	3	1.0	3.5	-	97		10	-	-
1월 2주	-	4	1.3	4.7	-	93		13	-	-
1월 3주	-	3	0.8	3.7	-	90		8	-	-
1월 4주	-	4	1.5	4.5	-	86		15	-	-
1월 5주	-	2	0.5	2.5	-	84		5	3	-
총계	100	16	5.1	18.9	-	81		51	3	-
2월 1주	100	2	1.0	2.0		79		10		
2월 2주		1	0.1	1.4		78		1		
2월 3주		1	0.5	1.0		77		5		
2월 4주		5	1.2	6.3		72		12		
총계	100	25	7.9	10.7		72		79	3	

- ◇ 1달 동안 사용한 PPD시약의 사용현황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해당 보건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바람
 - 개봉한 vial을 기준으로 작성함(이틀에 걸쳐 사용한 시약은 개봉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 ※ 사용량 vial과 cc단위로 작성(1vial = 1.5cc)
 - ※ 폐기량 : 유효기간 경과하여 폐기하는 시약량
 - 자연소모량 : 시약 개봉 후 24시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시약량
 - ※ 반납량 :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중간에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보건소로 PPD시약 남은량을 반납함

〈서식 5〉 수정요청서

수 정 요 청 서	
수첩일련번호	
수정 전	
수정 후	
<p>상기의 대상자 정보를 수정요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p> <p>담당자 (서명 또는 인)</p>	

〈서식 6〉 월별실적보고양식

■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용

사업 기간	등록(건)				청구 (건)	환자현황				접촉자검진결과(명)				잠복결핵 감염치료 여부			
	1차		추가			계	개담 도말 양성 배양 음성	개담 도말 양성 배양 음성	개담 도말 음성 배양 음성	개담 도말 음성 배양 음성	정상	결핵 의심	결핵 확진	잠복 결핵 감염	타질환	유	무
	계	X	T	I													
총계																	
○○ 병원																	
○○ 병원																	
○○ 병원																	
⋮																	
⋮																	
⋮																	
⋮																	

※ X : X-ray, T : TST, I : IGRAs

※ 등록일 기준(단, 청구는 청구일 기준임)

〈서식 7〉 접촉자검진 수첩-검사쿠폰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1차검사) (앞)

□ □ □ □ - □ □ □ □ - □ □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1차검사)				
수신 :			보건소장	
□ 환자 정보		(가족동거인 수 :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접촉자정보 (환자와의 관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개인정보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뒷면참조)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과거력여부	과거결핵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과거 잠복감염결핵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기저질환여부	<input type="checkbox"/> 규폐증 <input type="checkbox"/> 위·장절제 등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만성신부전증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알코올중독 <input type="checkbox"/> HIV <input type="checkbox"/> 스테로이드복용 <input type="checkbox"/> 면역억제제복용(TNF-α등)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BCG 접종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피내 <input type="checkbox"/> 2회접종 <input type="checkbox"/> 경피 <input type="checkbox"/> 1세이후 접종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모름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검사내역 : 흉부 X선, TST, (IGRA)는 동일한 날에 처방되어 함		처방일	검사일	판독일 (②, ③쿠폰 사용일)
③□흉부 X선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 /	/ /	/ / <input type="checkbox"/> 자 비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 /	/ /	/ / <input type="checkbox"/> 자 비
<input type="checkbox"/> IGRA	<input type="checkbox"/> Quantiferon TB-Gold In Tube <input type="checkbox"/> 양양수치()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input type="checkbox"/> T-Spot <input type="checkbox"/> 양성갯수() <input type="checkbox"/> 음성 <input type="checkbox"/> 판독불능	/ /	/ /	/ / <input type="checkbox"/> 자 비
결과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결핵의심 <input type="checkbox"/> 잠복결핵감염 <input type="checkbox"/> 타질환 <input type="checkbox"/> 8~10주 후 추가검사		
잠복결핵감염 치료여부		<input type="checkbox"/> 치료안함 <input type="checkbox"/> 치료시 처방 ○ 19月 ○ 16月 ○ 1&R3月 ○ R4月 ○ 기타		
※ 치료, 타진료, 추가검사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 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진료과	
		진료의사성명	면허번호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1차검사) (뒤)

● 의료기관에 알려드립니다

- ◎ 흉부 X선검사 또는 잠복결핵감염검사(TST, IGR)를 원하는 경우, 무료로 동일한 날에 실시합니다.
 - IGR검사의 경우 TST 판독날 시행(TST 양성으로 만 13세 이상인 경우)될 수도 있음
 - 흉부 X선검사는 쿠폰사용한 날 반드시 처방되어야 함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 X선검사(판독지), IGR, 해당 검사결과지 등 첨부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예, 수신 :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 ◎ 청구 후 15~30일 이내 보건소에서 귀 기관으로 검진비를 입금하여 드립니다.
- ◎ 각 검사결과 판독 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쿠폰작성 방법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검사비지급 관리와 검사안내를 위해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TST를 시행하신 경우 반드시 48~72시간 이후에 해당 의료기관을 재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해당 검사에만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 (앞)

②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TST판독, 정밀IGRA검사시행)

<input type="checkbox"/>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검사결과 및 검사내역 TST판독, IGRA 검사는 동일한 날 처방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input type="checkbox"/> IGR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시행 : TST검사결과 양성(10m이상)인 경우 시행		
• 흉부 X선, IGRA검사만 시행한 경우 ②번을 사용하지 마시고 ③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검사와 관련된 결과는 ①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③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최종)

<input type="checkbox"/>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흉부 X선, TST, IGRA검사처방일 및 TST판독일에 최종검사결과 판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최종 판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			

- ※ 동 결과는 ①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1차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차검사결과 판독 쿠폰 (뒤)

- ◎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TST 시행 후 48~72시간 이내 방문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TST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1차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방문시 사용가능합니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 (앞)

④	□ □ □ □ - □ □ □ □ - □ □ □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				
수신 :				보건소장
▣ 접촉자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 예 □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 검사내역 : 흉부 X선, TST는 동일한 날 처방되어야 함		처방일	검사일	판독일 (⑤,⑥쿠폰사용일)
□ 흉부 X선	□ 정상 □ 결핵의심 □ 타질환	/ /	/ /	/ / □ 자 비
□ TST	□ 양성 □ 음성 경결 : mm			/ / □ 자 비
결과	□ 정상 □ 결핵의심 □ 잠복결핵감염 □ 타질환			
잠복결핵감염 치료여부	□ 치료안함	□ 치료시 처방 ○ 9월 ○ 16월 ○ 1&R3월 ○ R4월 ○ 기타		
※ 치료, 타진료, 추가검사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 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진료과	
	진료의사성명		면허번호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쿠폰(추가검사) (뒤)

● 의료기관에 알려드립니다

- ◎ 추가쿠폰대상자는 흉부 X선검사결과 정상(타질환), TST 음성(IGRA검사 미시행)으로 18세이하거나 또는 고위험군에 한합니다.
 - ※ 고위험군 : 장기간스테로이드사용자(예정자), 만성신부전, 당뇨병, 위절제술, 규폐증, HIV(+),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자, TNF 길항제 사용자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 X선검사(판독지), 해당 검사결과지 등 첨부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 예) 수신 : 서울특별시 00구 보건소장
- ◎ 청구 후 15~30일 이내 보건소에서 귀 기관으로 검진비를 입금하여 드립니다.
- ◎ 각 검사결과 판독 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쿠폰작성 방법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검사비지급 관리와 검사안내를 위해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TST를 시행하신 경우 반드시 48~72시간 이후에 해당 의료기관을 재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해당 검사에만 1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추가검사 판독쿠폰 (앞)

⑤ 추가검사결과 판독 쿠폰(TST판독)			
<input type="checkbox"/>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검사결과 및 검사내역			
<input type="checkbox"/> TST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경결 : mm		
※ 동 검사와 관련된 결과는 ④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TST 검사 시행 후 48~72시간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⑥ 추가검사결과 판독 쿠폰(최종)			
<input type="checkbox"/>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흉부 X선판독을 검사시행 당일 또는 TST 판독 당일날 시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최종 판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제출			

- ※ 동 결과는 ④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검사 판독쿠폰 (뒤)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TST 시행 후 48~72시간 이내 방문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TST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추가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방문시 사용가능합니다.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 (앞)

⑦	□ □ □ □ - □ □ □ □ - □ □ □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																			
수신 : 보건소장																			
■ 접촉자(결핵의심)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거주지																			
■ 검사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처방일</td> <td style="width: 15%;">/ / □ 자 비</td> <td style="width: 15%;">검사일</td> <td style="width: 15%;">/ /</td> <td style="width: 15%;">판독일 (⑧,⑨,⑩사용일)</td> <td style="width: 15%;">/ / □ 자 비</td> </tr> <tr> <td></td> <td></td> <td></td> <td>/ /</td> <td></td> <td>/ / □ 자 비</td> </tr> <tr> <td></td> <td></td> <td></td> <td>/ /</td> <td></td> <td>/ / □ 자 비</td> </tr> </table>	처방일	/ / □ 자 비	검사일	/ /	판독일 (⑧,⑨,⑩사용일)	/ / □ 자 비				/ /		/ / □ 자 비				/ /		/ / □ 자 비
처방일	/ / □ 자 비	검사일	/ /	판독일 (⑧,⑨,⑩사용일)	/ / □ 자 비														
			/ /		/ / □ 자 비														
			/ /		/ / □ 자 비														
■ 객담도말	<input type="checkbox"/> 균검경(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균검경(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균검경(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집균도말(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집균도말(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집균도말(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형광염색집균도말(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형광염색집균도말(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checkbox"/> 형광염색집균도말(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 객담배양	<input type="checkbox"/> 배양_고체(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고체(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고체(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액체(1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액체(2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input type="checkbox"/> 배양_액체(3회) <input type="radio"/> 양성 <input type="radio"/> 음성 <input type="radio"/> 검사중 <input type="radio"/> NTM																		
※ 치료, 타진료, 추가검사로 인하여 진찰료가 이중 발생 될 경우 자비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정보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상급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의원																		
	의료기관명 : _____ 전화번호 _____																		
	요양기관번호 _____ 진료과 _____																		
	진료의사성명 _____ 면허번호 _____																		
청구일 : 년 월 일 (병원장 서명 또는 인)																			

-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 흉부 X선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객담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의원 제외)
- ※ 객담배양검사 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불 요청할 수 있음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쿠폰(결핵의심) (뒤)

● 의료기관에 알려드립니다

- ◎ 이 쿠폰은 흉부 X선검사결과 결핵의심자로 객담검사를 원하는 경우, 무료로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를 동일한 날에 실시합니다.
 - 흉부 X선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객담검사를 시행합니다.(의원 제외)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객담검사결과지 첨부
 - 객담배양_액체 및 고체의 경우 검사증을 체크하고 추후 제출
 -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 수신 : 해당 지역 보건소장 예) 수신 :서울특별시 00구 보건소장
- ◎ 청구 후 15~30일 이내 보건소에서 귀 기관으로 검진비를 입금하여 드립니다.
- ◎ 각 검사결과 판독 후 작성하시어 본 쿠폰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쿠폰작성 방법

- ◎ 쿠폰일련번호 및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검사비지급 관리와 검사안내를 위해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쿠폰은 해당 검사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우편, 팩스)

■ 객담도말판독쿠폰

⑧ 객담도말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 동 결과는 ⑦ 쿠폰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동 쿠폰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객담도말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객담배양_액체 판독쿠폰

⑨ 객담배양(액체)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수신 : 보건소장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 첨부 : 객담검사결과지
- ※ 객담배양(액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객담배양_고체 판독쿠폰

⑩ 객담배양(고체)검사 결과 판독 쿠폰(최종)			
		수신 : 보건소장	
접촉자정보		방문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Tel : H.P :	SMS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 첨부 : 객담검사결과지
- ※ 객담배양(고체)검사 결과 판독 후 1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본 쿠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객담도말판독쿠폰 (뒤)

- ◎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본 쿠폰은 객담도말 검사결과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객담배양_액체 판독쿠폰 (뒤)

- ◎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본 쿠폰은 객담배양(액체) 검사결과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객담검사결과지 첨부
 - ※ 단,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관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객담배양_고체 판독쿠폰 (뒤)

- ◎ 굵은 선 테두리 안은 접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 본 쿠폰은 객담배양(고체) 검사결과 판독시 사용가능합니다.
- ◎ 검사 결과 후 쿠폰을 작성하시어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객담검사결과지 첨부
 - ※ 단,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관하지 마시고 접촉자검진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Q&A

접촉자 검진대상

Q 2012년 10월에 호흡기결핵환자로 진단받고 현재 치료중인 환자의 가족이 접촉자 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해도 괜찮은가요?

A 예
현재 호흡기결핵환자로 치료중인 가족·동거인의 경우 접촉자검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결핵으로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접촉자검진수첩을 받았는데요. 같이 다니는 회사동료에게 수첩을 전달해도 괜찮은가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가족·동거인 등 같이 거주하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사동료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접촉자검진수첩 발급은 불가능하며 회사에서 결핵환자 발생은 「국가결핵관리지침_결핵역학조사관리지침」에 의해 접촉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Q 57개월 소아결핵환자가 폐외결핵으로 치료받는 경우 소아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에게 접촉자 검진을 위한 접촉자 검진수첩을 발급해 드려도 되는가요?

A 예
96개월미만 소아결핵환자의 경우 진단코드에 상관없이 결핵으로 치료받는 경우 가족·동거인의 접촉자 검진을 위한 접촉자검진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Q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동거인이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관련된 보건교육 실시와 결핵환자의 치료 중에는 언제든지 접촉자 검진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세요

Q 가족 중 같이 거주하지는 않는데 주기적으로 매주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접촉자검진수첩 발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하루에 8시간 이상·1주일에 5일이상 매주 거주지를 방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수첩발급이 가능합니다.

수 첩

Q 결핵환자로 진단받았는데 다니는 병원에서는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A 본 사업은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으로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을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후 접촉자검진수첩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 참여 의료기관 현황 조회는 '결핵바로알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접촉자검진수첩을 받았는데요. 수첩 안에 포함된 쿠폰은 수첩을 발급받은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한가요?

A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을 참여하는 의료기관 어디서나 쿠폰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참여 의료기관 현황 조회는 '결핵바로알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스케줄

Q 5세(60개월) 미만에게 IGRA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소아환자 특히 만 5세 이하의 환자에서는 면역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 이므로 면역 검사인 IGRA의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5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 IGRA 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Q 5세(60개월)이상인 접촉자에 대해서 IGRA검사를 시행해도 되는지요?

A 접촉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IGRA 검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5~18세의 경우는 비씨지 접종을 1세 이후에 접종했거나 2회 접종한 경우에만 IGRA 검진비 지원이 가능하며, 13~18세의 경우는 TST검사 양성인 경우 IGRA 검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접촉자검진을 자비로 실시하였는데, 추가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수첩발급이 가능한가요? 환자분은 A15.1로 현재 치료중입니다

A 추가검사는 18세이하이거나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추가검사대상자라면 접촉자 또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기존에 검사한 내역을 자비검사로 등록하신 후 접촉자검진수첩을 발급해 드리면 됩니다. 단, 쿠폰은 4번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등 록

Q 외국인대상자의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는데 오류가 뜨는데 어떻게 등록해야 되나요?

A 외국인 대상자를 입력하시는데 오류가 뜨는 경우는 외국인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 접촉자에게 연락해보니 자비로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자비검사를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접촉자 및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검사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정보를 모두 등록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비검사로 등록가능하며, 검진일정대로 검사하셨다면 그 이후 쿠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검진비 지급

Q 검진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본 수가만 지급해야 되는지?

A 본 사업은 관행수가에 맞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관련 학협회와 협의 후 검진비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본 수가만 지급 가능합니다.(검사비+진찰료 포함된 수가임)

Q TST 판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A TST시행 후 48~72시간 이내 판독하여야 하며 이후에 시행된 것은 판독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IGRA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도 되는지와 의뢰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이 있는지요?

A 의뢰가능하며 지정된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의뢰한 경우도 동일한 수가로 검진비가 지원됩니다.

Q 접촉자가 사업시행 전 자비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사업시행 전 자비로 시행한 검사한 의료기관 협조 하에 환불 가능합니다.

Q 접촉자 검진시 특진비를 접촉자에게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A 의료기관 내규에 따라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Q 의료기관 결핵환자의 접촉자가 보건소에 가서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핵환자의 관할 보건소에 접촉자수첩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접촉자 검진시 다른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접촉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A 본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접촉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접촉자검진 쿠폰을 사용한 날 잠복결핵감염치료약을 처방한 경우 잠복결핵감염치료약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A 접촉자검진 쿠폰을 사용하여 진찰료를 지원 받으셨으면 잠복결핵감염치료약 처방을 보험청구하여 진찰료를 이종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치료약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관리)

○ Contents

○ 주요변경내용	64
○ 1. 개요	65
○ 2. 사업추진체계	68
○ 3.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0
○ 4. 사업내용	78
○ 5. 모니터링 및 평가	83
○ 6. 실적보고	85
○ 부록. 1.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과정	86
○ 2. 교육자료	87
○ 3. 결핵환자 관리내역 입력	110
○ 4. 결핵환자 사례관리	116
○ 5. 예산항목설명	143
○ 6. 관련서식	147
○ 7. 참고자료	211

결핵관리운영비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행정사항	질병관리본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및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예산지원	<p>예산지원항목(배정내역)</p> <p>(1) 인건비(급여, 4대보험료, 퇴직금) - 지원급여: 최대 2,060,000원/월/인 (본인부담 보험료 및 제세 포함) - 사업장 부담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p> <p>(2) 사업지원비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지원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지급 기준(삭제)</p>	<p>예산지원항목(배정내역)</p> <p>(1) 인건비(급여, 4대보험료, 퇴직금) (2) 일반수용비 (3) 공공요금 (4) 기타운영비 (5) 여비 (6) 업무추진비 (7) 행정지원비 등 ※ 지자체 자율로 예산항목 설정</p>
사업관리주체	질병관리본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개요

가. 사업 목적

-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 제공, 철저한 환자관리를 통하여 결핵치료 중단 최소화로 치료성공률 향상에 의한 내성 결핵 방지 및 결핵 조기퇴치 달성

나. 사업 목표

구분	목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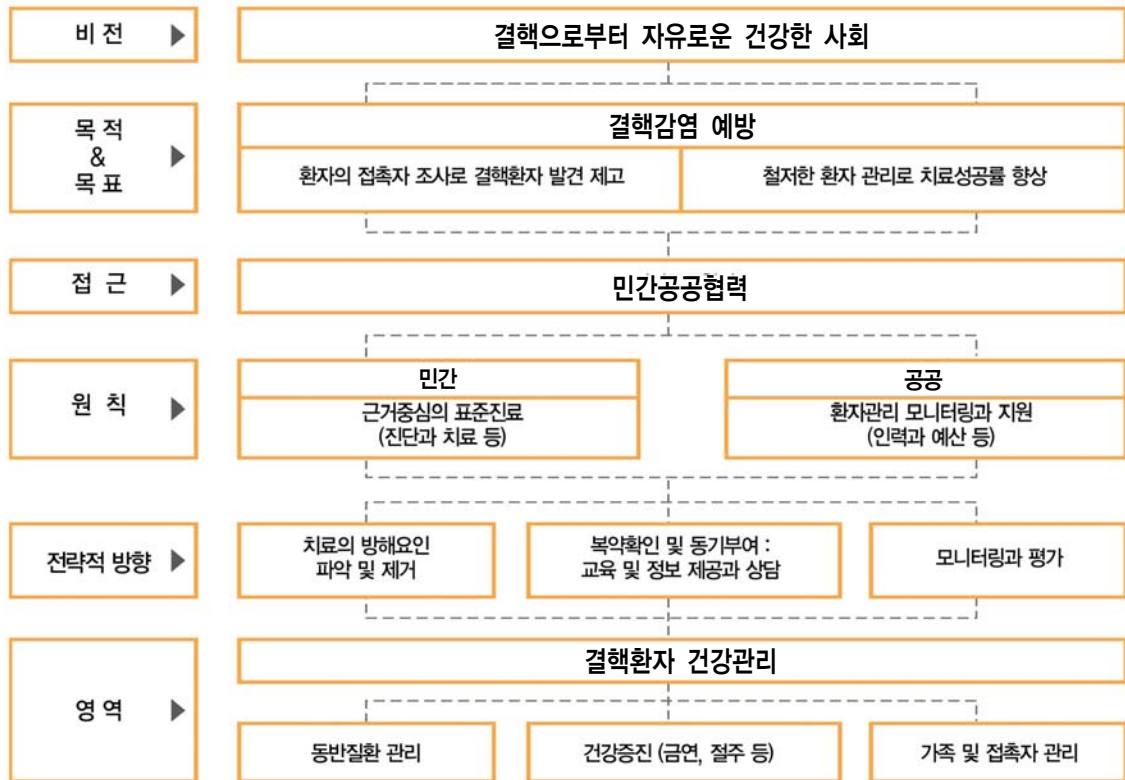
〈 2013년 목표 〉 도말양성 결핵환자(신환, 약제감수성)의 치료 성공률을 85% 이상 달성한다.

등록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결핵환자를 등록 및 관리 (전체결핵환자 100% 관리)
결핵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방법 시행 (표준진단준수율 75%, 표준치료준수율 90%)
치료성공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성공률 증가 • 치료 중단을 감소
내성결핵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결핵 감소

〈 중장기 목표 〉

결핵환자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내성결핵을 방지하고, 합병증 발생 및 결핵사망 등의 감소로 삶의 질 향상
결핵 조기 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발생 50명/10만명을 2020년에 달성

다. 사업개념



라. 추진경과

2006. 4.	결핵퇴치 2030 계획 수립을 위한 결핵전문가 회의 -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의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협력 정책의 도입을 위한 근거 제시
2006. 9.	결핵퇴치 2030 계획 수립·발표 -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협력체계 운영 방안 제시
2007. 4.~12.	2007년도 공공·민간 협력 시범사업 실시 - 결핵신고환자 연 250명이상(05년 기준) 민간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요원 지원(11개 병원, 16명)

2007. 10.	<p>결핵퇴치 2030 Revision을 위한 결핵전문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국가결핵환자관리 모델 근거 마련 제시
2008. 3.	<p>결핵퇴치 2030 Revision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퇴치를 위한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민간·공공협력 사업(안) 제시
2008. 7.	<p>공공·민간 협력사업(TB 도우미사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TB 도우미 사업 실시 ※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에 의한 환자 관리
2009. 2.	<p>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도입(22개 병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2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연 신고환자 250명 이상인 민간 병원 - 지원 내용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2010. 1.	<p>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확대 (45개 병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47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연 신고환자 250명 이상 및 심사평기원 보험 급여 청구건수 300건 이상인 병원 - 지원내용 : 전년 동
2011. 1.	<p>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전국 실시(97개 병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7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연 신고환자 100명 이상 및 심사평기원 보험 급여 청구건수 200건 이상인 병원 - 지원 내용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12. 1.	<p>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지속 실시(116개 병원, 결핵전담간호사 21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민간병원 확대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전년 동
2013. 1.	<p>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핵환자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수행 체계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주체가 지자체로 변경 - 사업비 지원(116개 병원, 결핵전담간호사 2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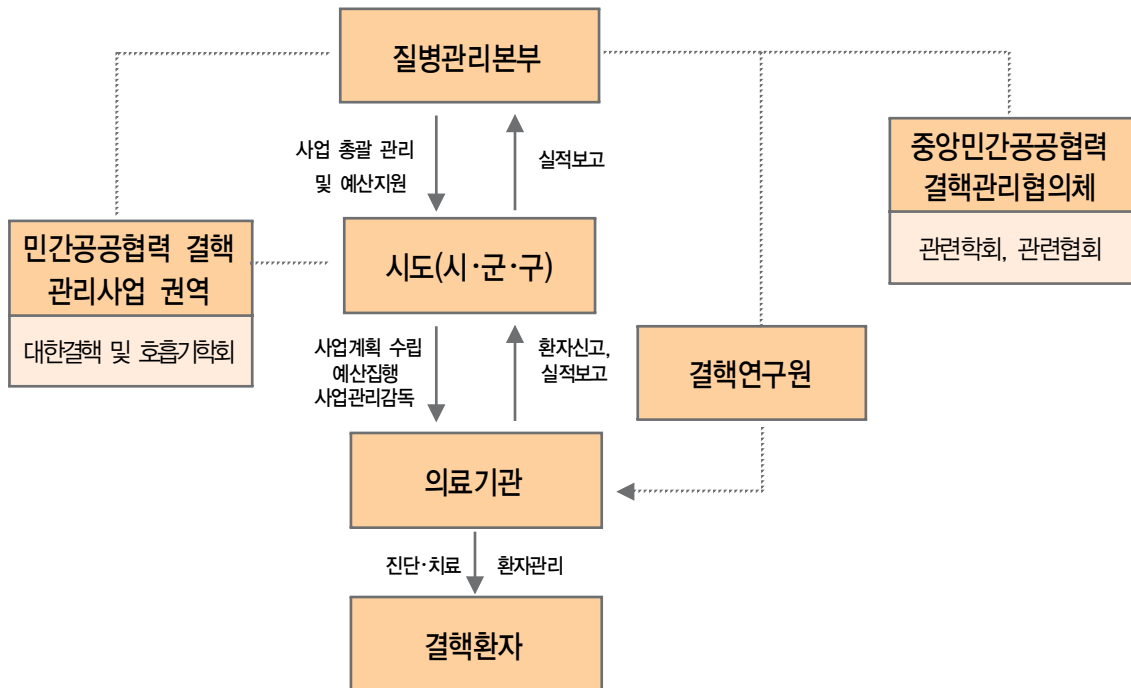
마. 결핵관리운영비지원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100명 이상 또는 심평원 청구인원 200명 이상인 병원

0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수행체계



나.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 사업 총괄 관리 및 예산지원
 - 행정, 예산 지원 등 사업 관리
 -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업 홍보
 - 사업 관련 지침 및 환자 관리 교재 개발
 - 중앙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협의체 운영(자문, 심의조정 등)

- 구성 :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원)

- 역할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자문, 심의 조정(참여의료기관 선정, 관리 대상자 및 권한 범위 선정)
 - 민간·공공 의료기관 의견 조정 등 협의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운영평가 등

시·도

- 결핵관리운영지원사업 계획 수립
- 결핵관리운영지원사업의 예산 관리, 집행 등 운영
- 시·군·구 결핵관리운영지원사업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

시·군·구

- 결핵관리운영지원사업 수행 관련 행정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 관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 결핵관리운영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대한결핵협회(결핵 연구원)

- 결핵관리운영지원사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지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권역분석회의 운영 관리

- 구성 : 결핵관리운영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시·도 결핵관계자, 관할 의료기관 보건소 관계자 등
- 운영주체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구성 : 참여 민간의료기관을 1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분석회의 구성
- 역할
 - 지역별, 분기별 결핵환자 진단과 치료 등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 지역별, 분기별 결핵환자 접촉자(가족)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검토
 - 권역별로 보건의료인 대상 민간공공결핵관리 표준지침 교육 및 질 관리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운영관련 업무협의 등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의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장애 요인 분석 및 해결
- 표준결핵진료지침에 근거한 결핵 진단과 치료
- 환자관리 및 치료 정보 제출(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인력 구성 및 역할

● 책임사업자(운영위원)

- 사업 운영, 관리 총괄
 -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해당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분석, 검토
 - 타부서의 결핵환자관리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내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권역별 분석회의 참여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관리
 - 결핵관련 교육 이수 여부 점검
 - 국가결핵관리사업 외 타 업무 수행 여부 점검·관리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 결핵환자 관리
 - 결핵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결핵관련 교육 및 상담, 복약확인 등
 - 결핵환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서비스 연계
 -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수행
- 결핵환자의 접촉자 검진
- 입원명령지원사업 관련 제반 업무
- 국가결핵환자관리사업 관련 행정 업무 지원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수행 및 결과 산출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록물 보관, 관리
 - 전산시스템에 상담기록 입력
 - 사업계획서, 보고서 및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권역별 분석회의 참여

나.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자격기준 및 관리

● 자격기준

-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임상경력 또는 지역사회 보건사업 2년 이상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
 -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간호사
 - ※ 사업기관 소속 간호사로 기존 정규직 및 계약직 간호사 가능

●●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된 인력은 사업 기관 소속으로 인사권이 사업기관에 있음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 사립학교의 경우, 국민연금을 사학연금으로 대신 할 수 있음
 - 자격조건을 갖춘 간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간호사는 지양함
 - 인력의 교체 시에는 시·군·구(시·도)에 통보(·:교육 소요 인력 파악)(서식 19)

●● 근무 규정

-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름
- 휴가는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0조)에 준함
 - 휴가는 가급적 담당주치의의 진료일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
 - 산전·후 휴가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군·구(시·도)에 보고
 - 책임사업자는 대체인력(PRN간호사 등)을 미리 채용하여 사업이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함
 - 대체인력의 근무규정은 기존 인력과 동일하게 적용
-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민간·공공협력사업 결핵관리사업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병원 일반 업무 등의 수행을 금함

●● 교육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기본교육을 수료(60점 이상시 수료증 발급)(부록 1)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심화교육 연 2회 참석
- 기본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국가결핵관리사업 사이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다. 상담실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설치의 기본 조건

- 채광, 통풍 등 환기가 잘되는 공간(환풍기, 창문 등 구비)
- 타인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환자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공간
 - ※ 상담실의 출입문 개폐 시 내담자의 노출이 우려될 때는 파티션 설치
- 환자 및 환자가족의 심리적 안정 유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 ※ 기본적인 상담실 시설 : 컴퓨터, 이동전화기, 상담테이블, 복사기(팩스, 프린터 등),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보관함, 파티션(필요시)

●● 전염성 결핵환자 면담 시 주의사항

- 의료진은 상담 시 N95 마스크 착용
- 환자는 일반 마스크 착용 권장

라.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보관

-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는 (서식 7, 서식 8)양식에 의함
 - 차기년도 사업계획서(서식 7)는 사업 개시 이전 년도 12월 15일까지 해당 시·군·구(시·도)에 제출
 - 최종보고서(서식 8)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서술형을 피하고 개조식으로 작성(임, 음으로 끝나도록)하되 번호나 기호를 사용하여 육하원칙에 의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그림이나 도표 이용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는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함
-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는 5년 이상 보관하고, 시·군·구(시·도),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제출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함
 -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사업의 운영

-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침 수행
 - 사업자는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침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
- 다음의 경우에는 시·군·구(시·도)의 승인을 얻어야함
 - 사업 내용의 일부, 세부사업 내역 및 소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시·도)는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보고하고 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에 따른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정보 보호

- 사업기관 및 시·군·구(시·도)는 질병관리본부 외 타 기관의 정보요구가 있거나 사업내용의 이용 및 이를 적용한 연구발표 등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결핵환자의 개인정보 등 대외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반드시 이중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장(열쇠는 분리하여 보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기관은 정보 보안을 위한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사업의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외비의 유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기관 및 시·군·구(시·도)는 이에 응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
- 사업기관 및 시·군·구(시·도)는 환자의 관련 정보를 다루거나 환자와 직접 만나는 인력이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의료법 제19조, 결핵예방법 제29조)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지된 내용을 확인한 후 서약서(서식 9)를 받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결과 및 산출물 관련사항

- 사업의 산출물(보고서, 책자, 리플릿,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수를 거쳐야 하며, 발행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시·군·구(시·도), 사업기관명 및 로고를 동시에 기재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된 것임을 명시함

예 : 본 책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 ※ 타 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한 산출물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공동기금으로 처리하되, 주관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후원실적 및 사용계획을 실적보고서 제출 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함
- 예산이 지원된 사업 산출물의 소유권은 질병관리본부, 시·도(시·군·구)와 사업기관에 있음

마. 예산관련사항

예산 집행의 원칙

- 예산의 집행·정산 등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사업지침
- 법적 근거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구(시·도)의 지도에 따름
- 사업기관은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지출과 구분 처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원금으로 한 이자 발생액은 반드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사업기관의 자금관리시스템이 본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구분하여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지원 시 사업기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은행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그 외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 기관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카드의 사용을 자제함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해당 사업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

●● 예산의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반기시작 15일 전에 시·군·구(시·도)부터 통보받은 교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교부금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예산교부서류(서식 11)
 - 교부신청공문
 - ○○○○년 ○반기 국민건강기금 ○○○○비(사업명) 교부신청서
 - ○○○○년 자금 소요계획서
 - ○○○○년 교부 신청내역
 - 서식 11-4, 입금용 통장사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포함)
 - 사업자등록증
 - ※ ○○○○년 자금 소요계획서, 서식 11-4, 입금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교부 시만 제출
- 교부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 산출내역서 작성은 사업계획에 근거하되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고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제시할 것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산(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함

●● 예산의 정산

- 예산의 집행상황 파악은 반기마다 보고(서식 12)하도록 하며, 사업기관에서는 사업 종료 후 전문 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은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정산보고서 및 세부집행내역(서식 13)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교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산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함
- 기금예산과 자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는 반드시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 처리함
- 사업비는 사업종료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고, 정산기간 내 국민건강증진기금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전액(사용잔액+이자)을 불용 처리하여 반납함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재산 취득은 지양함
 -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산의 변동 사항(불용, 반납 등)을 관리하여 최종 사업 결과보고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며, 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의 조정

- 사업수행기관은 필요시 예산과 이에 관련된 사업계획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산항목 조정이란 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간의 조정함을 의미
 - ※ 예시) 일반수용비와 기타운영비 간의 조정
- 예산항목 조정 절차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예산항목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사도(사군구)로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도(사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의 승인요청 건에 대한 변경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예산변경승인요청서류(서식 14)
 - 예산변경승인요청공문
 - 변경승인요청서: 자체서식에 의하되 변경사유, 변경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총괄사업비 내역: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후 산출근거
 - 사업계획서 변경 안(사업내용 변경 시)

●● 영수증 및 증빙서류

1) 영수증 관리

-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 가급적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받지 않도록 함
 - 국세청은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 집행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집행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2) 증빙서류

-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예시 : 해당 공문(행사개최, 현장 점검, 지도 방문 등),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등
- 여비
 - 시외교통비를 집행할 경우 출장복명서(일시, 장소, 내용 등) 및 해당 영수증(기차표, 버스표, 톨게이트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함
 - 시내교통비를 집행할 경우는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서식 15)을 첨부함
- 교육
 - 경비(다과비, 인센티브 상품 등)를 집행할 경우 교육보고서(참석자, 교육내용 등) 및 경비내역 영수증(서식 16), 방명록(서식 17)을 증빙자료로 첨부함
 - 교육수당을 집행할 경우 교육보고서(교육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등) 및 방명록(서식 17)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계좌 입금함
- 모든 회의(운영회의 등)
 - 경비(다과비, 인센티브 상품 등)를 집행할 경우 회의록(참석자, 회의안건, 토의사항, 회의결과 등) 및 경비내역 영수증(서식 16), 방명록(서식 17)을 증빙자료로 첨부함
 - 회의수당을 집행할 경우 회의록(참석자, 회의안건, 토의사항, 회의결과 등) 및 방명록(서식 17)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계좌 입금함
 - 병원 내원 환자를 상담하거나 교육 실시 시 사용된 다과비는 환자관리 자료와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함

●● 예산 항목별 설명

구분		산정기준	
1	인건비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수당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2	일반 수용비	회의참석비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자료 제작 및 인쇄비	교육자료(소책자 및 슬라이드 등) 제작·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워크숍, 자문회의 자료, 각종 홍보자료 등)의 복사·인쇄 및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의 인쇄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사업수행을 위한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품 물품 구입의 비용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은행수수료, 물품운송대금 등
		비품수선비	가전제품수리비, 정수기필터교체,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각종 사무용품 비품의 수선비
3	공공요금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 전기요금, 전신·전화료, 우편요금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비용	
4	기타 운영비	강사료	정기·비정기 교육 및 특강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환자인센티브	치료 완료, 완치 등의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상품 등)에 지급되는 비용
5	여비	출장비	사업과 관련된 시내·외 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6	업무 추진비	회의경비	업무협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식비, 다과 및 소모품 등 비용
		교육진행경비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과 및 소모품 등 비용
7	행정지원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행정처리 및 공과금 등 비용발생에 대한 대치금	

※ 자세한 예산항목 설명은 부록 5 참고



사업내용

가. 관리 대상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하는 모든 결핵환자

나. 환자관리

환자관리 내용

- 환자상담(대면, 전화, 온라인 등) 및 보건교육
 - 치료일정 안내
 - 결핵관련 교육 실시(부록 2)
 - 환자에게 교육용 자료(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건강지킴이 수첩 등)를 제공
 - 복용 및 부작용 확인
 - 약제 복용방법을 설명하고 약제부작용이 발생하면 주치의 혹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상담하고, 특히, 에탐부톨 복용자의 경우 시각상의 불편함이 인지되면 반드시 상담토록 교육
 - 결핵환자의 치료 방해 요인 파악하여 해결
- 치료 동기부여
 - 동기 부여 내용
 - 균음전된 경우에는 치료가 양호함을 알려 치료의욕을 북돋아줌
 - ※ 추구검사의 결과는 담당의사로부터 치료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함
 - 결핵에 대한 정보를 안내함
 - 음식, 식기, 피부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
 - 치료기간은 초치료인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주지시킴
 - 약제감수성 결핵인 경우 치료 후 2주 정도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소실된다는 것을 설명 단, 내성 결핵인 경우, 전염성 소실 기간은 객담검사 결과에 따른다는 것을 강조
 - 결핵은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 규칙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 동기 부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환자 본인은 물론 가능한 한 환자 가족들도 적극 상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
 - 상담 분위기를 조성
 - 알기 쉬운 말을 사용
 -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인 수준을 파악하여 환자수준에 맞추어 상담
 - 충분한 질문 시간을 줌
 - 추구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명함 및 연락처를 제공
 - 추구검사의 중요성을 이해시킴

- 환자는 진단 후 되도록 초기에 첫 면담을 하도록 하며, 결핵치료에 필요한 정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도 탈락없이 끝까지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
- 초회 면담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활용하여 환자를 교육하고 결핵관리 요구도에 따라 관리 시작
 - ※ 첫 면담 시에 시력검사 및 색맹검사를 가능한 실시하여 결과를 기록해 둠
- 수약 불협조자에 대해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 지속적인 내원 독려
- 결핵환자 사례관리
 - 결핵환자 사례관리 대상자의 결핵관리 요구도, 건강문제 조사
 - 건강문제 선정에 따른 중재 교육
 - 대상자의 투약 및 건강관리 실천 정도를 확인·평가 등
 - ※ 결핵환자 사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PPM웹사이트에 입력하여 관리(부록 4 참고)
- 가족 검진(결핵 및 결핵감염)을 권장(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참고)
- 다제내성 결핵환자인 경우는 입원명령 절차를 시행(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참고)
- 투약일정, 추구검사 결과 확인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관리 사항 입력(부록 3)
 -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추구 객담 및 엑스선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관리사항을 반드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필요시 따로 배부된 환자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환자관리에 활용 (서식 4)
- 결핵환자의 자료 기록, 분석 및 평가

환자관리 방법 및 절차

과정	내용	방법
환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 진료부서 확인 (의사, 외래/병실 간호사, 감염관리 실 담당자 등과 환자관리 협의) - 결핵환자 신고 담당자 확인 - 전일 또는 매일 오전 해당의료기관에 내원예정인 결핵환자파악 - 매일 재원 환자, 신규입원 환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전산시스템의 결핵질병코드, 항결핵제 처방,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객담, 조직) 결과 등을 통해 결핵환자 확인 - 별도의 결핵환자 확인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이 필요 - 병원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 결핵환자의 진료부서 및 내원예정일 확인 -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결핵환자 확인
환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여부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 신고/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확인 - 잘못 입력된 항목은 담당의사에게 보고하고 수정입력(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 진료 시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부서의 의사 또는 외래/병실 간호사가 상담을 연계
환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 면담 및 상담 - 결핵환자보건교육(교육자료 제공) - 추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원예정일 1-2일 전에 진료확인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예정임을 알림 ✓ 내원일 후에는 투약처방 및 진료상황, 추구검사 사항을 확인 - 복약 및 부작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와의 전화상담으로 투약 방법과 투약상황을 매번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추구관리 사항 입력(부록 3-1) - PPM web site에 결핵환자 사례관리 대상자(균양성 신환자) 입력(부록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전산시스템의 항결핵제 처방,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객담, 조직) 결과 확인하기 · 결핵환자 사례관리 매뉴얼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환자관리” ✓ http://ppm.or.kr “결핵환자사례관리”
환자 퇴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완결 후 치료결과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환자신고내역”

다. 수약 불협조자 조치

- 수약 예정일로부터 3~4일 후에도 수약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에 전화상담을 통하여 수약 중단 이유를 확인하고 복약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
-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약하지 않을 경우 수약 불협조자로 구분하고, 병원 자체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으면 중단퇴록 조치
 - 수약 불협조자 관리
 - 해당 의료기관 진료의사(또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환자의 실거주지 보건소에 비순응 결핵환자관리 요청서(서식 20)를 FAX나 전자메일로 발송
 - 해당 보건소는 비순응 결핵환자관리결과(서식 21)를 요청한 의료기관에 통보
- 수약 불협조자 중 전염성 결핵(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환자는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 명령을 실시함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참고)

라. 결핵환자관리 업무 예시

●●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일일 업무 예시

구분	상세내용	소요시간 (분)	환자수 (명)	업무시간 (분)
- 환자파악 신고 및 정보입력	- 환자파악(진료내용, 검사결과, 내원예정일 환자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 및 정보입력 ※ (필요시) 환자관리기록카드 작성	10	7	70
신환자 면담 (1차 면담)	- 결핵환자 사례관리(추구관리) 설명 - 결핵 질환과 치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 항결핵제 부작용, 약복용 시 주의사항 · 기침/객담 배출시 관리방법 - 식이, 금연, 금주, 동반질환관리 - 가족교육(접촉자 검진 등) - 결핵관리 요구도, 건강문제 조사 · 합병증 및 동반질환 파악 · 결핵에 대한 지식/태도 · 투약 및 약제부작용 · 기타 건강문제 - 시력/색맹측정 - 문의사항 답변 - 건강지킴이수첩, 건강캘린더 등 교육자료 배부 - 추구관리 일정 안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례관리 입력대상자는 내용 입력(PPM web site)	40	2	80

구분	상세내용	소요시간 (분)	환자수 (명)	업무시간 (분)
기존환자관리 결핵관리요구도/ 건강문제조사 (8주, 16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관리 요구도, 건강문제 조사 · 합병증 및 동반질환 파악 · 결핵에 대한 지식/태도 · 투약 및 약제부작용 · 기타 건강문제 - 사례관리 입력대상자는 내용 입력(PPM wed site) - 건강문제 선정에 따른 보건교육 시행(중재) 	20	3	60
전화모니터링 - 첫 2~24주 - 그 이후는 매 2주 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 약복용, 약물부작용, 동반질환관리, 합병증 호전여부, 다음 내원일 파악 등을 확인 - 내원격려 및 동기부여 - 비순응환자 관리 - 투약실천을 평가(4주마다) - 사례관리 입력대상자는 내용 입력(PPM wed site) 	10	7	70
전화상담	약제부작용, 예약변경, 전원 등	10	4	40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일 확인 - 진료내용 - 검사결과(객담, 혈액, 흉부 X선/CT, 조직검사 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관리기록카드) - 전출한 기관 	15	6	90
퇴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및 교육(식이, 동반질환, 투약, 금연 등) - 추후 내원여부 확인 및 안내 - 퇴록 입력(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PPM wed site), 환자관리기록 카드에 기재 	10	1	10
공문관련	공문내용확인 및 시행	30	-	30
접촉자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자검진사업 안내 - 검진절차 설명 및 쿠폰 배부 - 검진사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검사결과 안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상담 	30	1	30
총 업무시간		480(분)		

05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목적 :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 시행시기 : 정기 평가 및 수시 모니터링
- 평가 영역 : 2013년 1월 1일~12월31일까지의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계획 및 수행 결과
- 주체 : 질병관리본부, 시·군·구(시·도)
 - ※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정기 평가 및 수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모니터링 체계 개발

- 목적 : 민간공공협력사업 수행 시 권역별 특성(지리적, 환경적, 사회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결핵관리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함
- 영역 : 권역별 치료성공률 및 사업성과 등 분석
 - 산출지표를 이용한 실시간 사업평가 및 결과의 즉각적인 환류
 - 참여병원 확대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 권역별 사업 정착 및 전체 통일된 분석 프로토콜 사용
 - 지속적인 사업결과 모니터링 및 세부사업 관리 및 발전방안 마련
- 주체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실태조사

- 목적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 평가영역

영역	지표 및 내용
사업실적	환자 규모 (신고환자, 관리환자) 등
상담실적	전화 상담건수, 면담 상담 환자수, 시력 및 색맹 측정 환자수 등
시설	상담실 상태, 위치, 시설 등
업무관련	의무기록열람, 타 업무 병행 여부, 병원 협조 여부 등
근태관련	근무시간, 근무여건 등의 적정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평가자 : 외부 위탁자

환자관리 모니터링

■ 결핵환자 추구관리

- 목적 :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결핵예방법 제7조)
- 영역 : 투약상황, 추구검사사항, 진료내역 및 소견, 약제감수성검사, 가족검진사항 등
-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환자 추구관리 내용 수시로 확인 및 분석
- 주체 : 질병관리본부, 시·군·구(시·도)

■ 결핵환자 사례관리

- 목적 : 결핵환자의 치료에 대한 동기조성과 보건교육 등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결핵환자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치료순응도를 높이고 치료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함
- 영역 : 결핵관리 서비스 확인, 건강관리요구도, 결핵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투약실천율 등
- 방법 : PPM web site에 입력된 결핵환자 사례관리 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 및 분석
- 주체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 결핵환자 만족도 조사(결핵관리 서비스 평가)

- 목적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영역 : 사업내용, 시설이용, 서비스 측면
- 방법 :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동의서를 받은 환자에 대해 결핵연구원에서 전화 설문조사 실시
- 시행시기 : 년 1회
- 주체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활동 평가

- 주체 : 질병관리본부
- 평가 영역
 - 1) 직무수행 태도 평가(50%)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추구관리 내역 및 결핵환자 사례관리 내역(PPM web site)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정기 및 수시교육 참여도, 업무충실성, 업무만족도 등을 평가
 - 2) 서비스 대상 만족도 조사(30%) : 전화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 전화조사는 사업기간 중 1회 실시
 - 조사대상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서비스하는 결핵환자로 함
 - 3) 직무능력 평가 시험(20%)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평가



실적보고

●● 월말실적보고(서식 2)

-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결핵정보통합관리)에 환자 신고 시 『추구관리-관리』를 선택하여 입력한 환자를 기준으로 자동 작성
- 자동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 완료
- 작성된 내용 변경 시 『수정요청』 버튼을 눌러 (시·군·구)관리자가 반려 처리하면 자료를 수정하여 수치 자동 재 집계 후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 완료
- 사업수행 병의원에서는 익월 5일까지 월실적을 보고함

●● 분기실적보고(서식 3)

-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결핵정보통합관리)에 환자 신고 시 『추구관리-관리』를 선택하여 입력한 환자를 기준으로 자동 작성
- 병의원실적현황, 환자등록현황, 치료성적과 같이 3가지 영역이 자동으로 작성되며 치료성적 영역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를 완료
- 작성된 내용 변경 시 치료성적 영역의 『수정요청』 버튼을 눌러 (시·군·구)관리자가 반려 처리하면 자료를 수정하여 수치 자동 재 집계 후 『제출』 버튼을 눌러 보고 완료
- 사업수행 병의원에서는 익분기 5일까지 분기실적을 보고함

부록 01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 과정

- 목적 :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직무능력 향상
- 내용 : 기본교육, 심화교육, 사이버 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사이버 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채용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 전년에 채용되었으나 기본교육과정 미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 이수자로 업무 수행중인 결핵관리전담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회 실시 예정(5월,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련(8월, 11월) - 진료관련(1월, 3월, 10월, 12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 8시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www.kohi.or.kr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 기초 교육 - 국가결핵관리사업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 심층 교육 - 상담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 기초 교육 - 국가결핵관리사업 ※ 매 과정 차시별로 교육 수강

▶ 교육자료1_ 항결핵제

1차 항결핵제

약 그림	약제 이름	용량(최대 용량)	부작용
	Isoniazid (이소니아지드)	식후, 하루 한 번 5mg/kg(400mg)	간독성, 말초신경염, 피부과민반응
	Rifampicin (리팜핀)	공복시, 하루 한 번 10mg/kg(600mg) 450mg(<50kg) 600mg(>50kg)	간독성, 독감양증후군(flu-like syndrome), 피부과민반응, 혈소판감소증
	Ethambutol (에탐부톨)	식후, 하루 한 번 800mg/kg(<50kg) 1,200mg(50-80kg) 1,600mg(>80kg)	시신경염 (시력저하 및 색각의 변화)
	Pyrazinamide (피라진아미드)	식후, 하루 한 번 1,000mg/kg(<50kg) 1,500mg(50-70kg) 2,000mg(>70kg)	간독성, 관절통, 위장장애
	Rifabutin (리파부틴)	공복시, 하루 한 번 5mg/kg(300mg)	간독성, 호중구 감소증

2차 항결핵제

약 그림	약제 이름	용량(최대용량)	부작용
	Prothiomamide (프로치온아미드)	식후, 하루 두 번 250~500mg,	위장장애, 간독성
	Cycloserin (시클로세린)	식후, 하루 두 번 250~500mg,	우울증, 정신장애
	Moxifloxacin (목시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400mg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Levofloxacin (레보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500~1000mg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PAS(파스)	식후, 하루 세 번 3.3g(12g)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부불쾌감, 간독성
	*주사제 Kanamycin(카나마이신) Amikacin(아미카신) Capreomycin(카프레오마이신) Streptomycin(스트렙토마이신)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 50세 미만: 15mg/kg(1.0g) 50세 이상: 10mg/kg(750mg)	이독성, 신독성, 입주위 저린 증상
	Ofloxacin 100mg (오플록사신)	식후, 하루 한 번 300~600mg,	위장장애, 간독성, 신독성, 건파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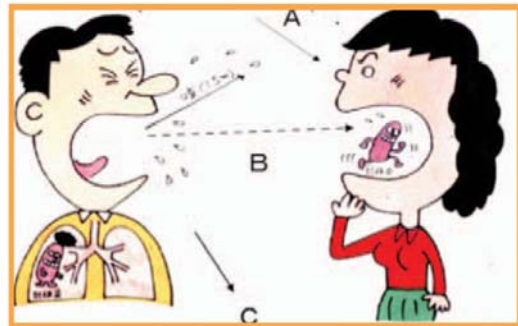
* 최대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권고량이 최대량임
* 소아 용량은 소아 청소년 결핵진료지침 단원 참조

▶ 교육자료1_ 결핵환자 관리 기본교육 자료

■ 결핵은 어떻게 발병하는가?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결핵균은 *Mycobacterium tuberculosis*라는 이름의 세균인데, 치료를 받지 않은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밖으로 튀어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침방울 안에 이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작은 가래 방울을 다른 사람이 흡입하면 결핵균이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결핵균은 서서히 자라 그 수를 늘려가며 균덩어리를 만들어 폐를 조금씩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결핵균이 들어 있는 가래방울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가래방울은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코나 기도의 입구에 걸릴 정도로 큰 것이어서 폐 속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래방울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결핵균은 다른 전염병들을 일으키는 균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감기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은 균이 몸 속에 들어온 후 수일 내지 수주의 일정한 잠복기 후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핵은 일단 감염이 이루어져도 정해진 잠복기가 없어 언제 발병하게 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몸 속에서 존재하면서 평생을 두고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균들을 공격하여 방어를 하고, 그 중 일부는 잡혀 들어가 세포 속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이 균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당뇨병,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제 사용, 영양실조, 만성 신부전증, 알코올 중독, 규폐증, AIDS 등으로 환자의 방어체계가 약해졌을 때 자기를 감싸고 있던 세포를 죽이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사람의 10%에서만 발병을 하고 나머지 90%는 감염은 되었어도 발병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 결핵의 증상은?

1. 전신 증상

- 발열(미열): 결핵 환자에게서 생기는 특징적인 열의 양상은, 주로 오후에 열이 나서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결핵 환자의 열나는 증상이 전형적일 때는 잠을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려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이 나기도 합니다.
- 피로감
- 식욕부진
- 체중감소
- 여성에서 월경 불순

2. 호흡기 증상

- 기침: 처음에는 마른기침만 나오다가 가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래는 특징이 없이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으며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 객혈: 대개 소량이며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흉통: 숨을 쉴 때 가슴속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상당히 진행하여 폐가 많이 파괴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성 결핵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결핵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찍은 흉부 X선의 이상 소견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결핵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은 뚜렷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몸 속에서 결핵균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기 증상이 2-3주 이상으로 만성적일 때 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결핵의 진단은?

1. 객담 (가래) 검사

폐결핵을 진단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은 바로 객담(가래) 검사입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객담을 받아 결핵균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한 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도말검사), 동시에 결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의 배지에 균을 키워보고 균이 자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배양검사). 도말검사는 수 일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객담 안에 많은 수의 결핵균이 있어야만 양성으로 나타나는 데 비하여, 배양검사는 결핵균 숫자가 많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어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핵균 배양에는 2주-8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말 검사에서 결핵균이 없더라도 배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배양검사는 결핵의 진단과 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밤새 폐에 고인 가래를 뱉어내는 아침 첫 가래에 결핵균이 많이 모여 있으므로 아침 첫 가래를 모으는 것이 좋고 대개 보통 2, 3회 이상 반복해서 검사를 합니다.

2. 흉부 X선검사

폐결핵으로 인해 생긴 폐의 염증이나 상처가 흉부 X선검사의 이상소견으로 나타나므로 결핵의 진단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흉부 X선검사서 결핵으로 보이는 병변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활동성 폐결핵은 아닙니다. 다만 가래가 없는 환자에서 간접적인 진단에 도움이 되며 방사선 사진에서의 이상 소견의 크기 변화를 통해 결핵의 활동성 여부나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우연히 흉부 X-에서 발견되어 결핵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3. CT(컴퓨터 단층촬영)

CT는 우리 몸을 마치 단면으로 자른 것과 같은 영상을 보여주므로 흉부 X선검사에 비해 훨씬 더 자세하게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병변의 크기나 침범된 부위, 결핵의 활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기관지 내시경

위의 방법들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기관지 결핵 여부를 진단할 때 내시경을 통해 직접 기관지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면 원하는 부위에 기관지 내시경을 넣어 접근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세척액으로 결핵균을 관찰해볼 수 있습니다.

5. 결핵 피부 반응검사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균의 배양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투베르쿨린(Tuberculin)이라는 물질에 대한 과민성이 생기므로 이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팔에 주사한 후 모기에 물린 것처럼 튀어나오는 경결의 모양을 만져보고 양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가 양성이면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결핵이 발병했다는 뜻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단 자체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잠복결핵감염 진단에 사용합니다.

■ 결핵의 치료는?

1. 약물 치료

결핵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약을 성실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결핵 환자는 약을 밥 먹듯 밥을 약 먹듯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치료는 첫째도 약이요, 둘째도 약입니다. 규칙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결핵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몸의 영양 상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영양 보충을 한다거나 몸을 피로하지 않게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결핵은 다른 질병들보다도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므로 환자 자신의 부주의 또는 그릇된 치료에 의해 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평생 고생하는 난치환자로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핵치료의 원칙>

1. 약의 처방이 적절해야 합니다.

결핵치료약의 처방은 담당 전문의에게 적절하게 받아야 하고, 일반적인 1차 결핵치료에는 효과가 입증된 네 가지 약제를 6개월간 사용하는 표준용법을 쓴다. 또한 결핵 약제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충분한 용량의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충분한 용량의 약을 지시된 방법에 의해서 복용을 하거나 주사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거나 또는 부작용이 두려워서 환자 마음대로 약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반대로 빨리 낮고 싶은 마음에서 약의 용량을 함부로 늘려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 복용은 빠뜨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4. 충분한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일찍 마음대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지시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5. 입원 치료

고열, 객혈, 심한 호흡곤란, 기흉, 농흉 등의 합병증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특히 당뇨병)이 있어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를 합니다.

6. 수술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이 심하여 약이 듣지 않는 환자의 일부에서나 폐결핵으로 인한 합병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 결핵약의 부작용은?

결핵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 부작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결핵약 복용을 끊고 담당의사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1. 위장관 장애

구역, 식욕부진, 가벼운 복통이 가장 흔하며 구토와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다음 진찰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증상이 심하여 약을 복용할 수 없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약제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2. 간에 대한 부작용

미열, 식욕부진, 간부위(오른쪽 상복부)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황달, 매우 드물게는 급성 간기능부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기 증세가 의심되면 즉시 약물 복용을 끊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핵 치료 중 알코올의 섭취, 한약, 보약, 개소주 등은 약물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간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합니다.

3. 리팜핀의 부작용

리팜핀은 소변, 눈물 및 땀 등의 분비물을 적황색으로 변하게 하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시는 분은 렌즈가 착색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혈이 발생하거나 멍이 생길 때는 혈소판감소의 부작용이 의심되므로 즉시 약을 끊고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4. 에탐부톨의 부작용

에탐부톨은 드물지만 눈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과적 질병이 있으신 분은 치료 전 반드시 안과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항결핵제 복용 전에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중 시력 감퇴, 시야의 가운데나 주변부가 안 보이는 경우, 적록색을 구분 못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5. 피라지나미드의 부작용

피라지나미드는 혈중요산을 증가시켜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작용으로 안면 홍조가 있으며 드물게 피부의 과민반응과 광선과민증 반응에 의하여 햇빛 노출부위의 피부가 검붉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발진,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핵진료지침_결핵치료 중 부작용의 발생 시 대처방법 참고)

■ 결핵의 합병증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결핵성 흉막염, 기관지확장증, 진균증, 객혈, 개방성 공동, 기관지결핵, 농흉, 폐암 등이 있습니다.

결핵균이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외 결핵으로, 좁쌀 결핵, 림프절 결핵, 결핵성 흉막염, 결핵성 뇌막염, 장 및 복막강 결핵, 비뇨생식기 결핵, 뼈 및 관절결핵 등이 있습니다.

■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할 경우

- 결핵 치료 중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 눈동자 혹은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거나 구역질이 나는 경우
- 피부에 발진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가려운 경우
- 피부에 점상출혈(여러 개의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코피가 잘 나는 경우
- 눈이 잘 안보이거나 적색과 녹색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 소변의 양이 줄어들거나 안 나오는 경우

■ 결핵에 관하여 자주 접하는 질문들

- “결핵 환자가 쓰던 물건을 함께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면 결핵에 옮을까요?”

결핵은 결핵균이 환자의 폐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야 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는다면 전염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결핵은 환자가 쓰던 물건을 만지거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옮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결핵균은 환자의 기침을 통해 나온 작은 침방울 속에서 꽤 오래까지 죽지 않고 적당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며칠 동안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균 자체가 자외선이나 건조한 상황에 약하기 때문에 결핵환자의 방은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좋습니다.

- “결핵약을 먹고 나서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데요?”

결핵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가운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약제열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찰을 받으셔서 혹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가벼운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자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덜어주는 다른 약을 복용하거나 바르는 약을 쓰면서 결핵치료는 그대로 계속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의로 약을 사서 복용한다거나 결핵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 “결핵에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은 무엇인가요?”

결핵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저 평소에 드시던 대로의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서 결핵약을 잘 복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몸이 허약해서 생긴다고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소주 등 다양한 보양식을 많이 찾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영양 보충을 위해 개고기, 장어 요리 등, 음식으로 드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개소주나 보약 등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약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용하고 계신 결핵약 자체로도 간에 큰 부담이 되는데 한약제를 함께 복용하면 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건강식품, 보약, 영양제를 먹더라도 치료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대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식단에 맞춰야 합니다.



- “결핵 환자인데 직장이나 학교를 쉬어야 할까요?”

폐결핵의 경우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 한 달 이내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력이 없어지게 됩니다(다제 내성 결핵인 경우는 예외). 그러므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대개 전염성의 소실 시기까지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폐결핵이 아닌 림프절 결핵, 결핵성 늑막염, 골관절결핵 등의 폐외결핵 경우는 타인에게 전염력이 없으므로 학교나 직장을 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가족 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결핵은 전염성 질환으로 호흡기결핵인 경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같이 동거하는 가족은 결핵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단순히 감염된 상태라도 발병 위험이 높고, 발병할 경우 결핵성 뇌막염과 같은 치명적인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17세 소아청소년도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반드시 치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소니아지드’라는 항결핵제를 9개월 복용하게 되며, 잠복결핵감염치료를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흉부 X선사진을 촬영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집단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후 결핵발병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치료를 합니다.

- “균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약을 먹어야 하나요?”

증상과 방사선 검사에서 폐결핵 강력히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가래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결핵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핵균이 나오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투약과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 “다른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핵 약제와 다른 약제의 사용은 결핵 약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결핵 약제에 의해서 피임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외 스테로이드제, 항경련제, 기관지 확장제, 항응고제, 경구용, 혈당강화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 균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그 만큼 전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침, 재채기, 웃을 때는 입을 휴지로 가리고 하고, 배출된 객담은 1회용 객담용기에 받아 소각해 버립니다. 또한 사람이 자주 모이는 곳, 밀폐된 공간 등에서는 전염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장소는 피하셔야 합니다. (단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객담에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으며 기침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전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자주 환기시켜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 “어떻게 하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나요?”

결핵은 감염된 사람 중에서 발병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염성 환자를 일찍 발견, 치료하여 전염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기침이 2-3주 이상 계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예방접종(비시지)은 결핵균에 감염되기 전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여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줌으로써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발병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주로 소아결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시지는 약독화 시킨 우형결핵균으로 결핵에 대한 상당한 예방력을 키워주는 백신입니다. 비시지는 제대로 접종되면 접종부위에 조그만 반흔이 남게 됩니다. 영유아 및 소아에서의 결핵성 수막염이나 속립성 결핵 같은 치명적인 결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시지 접종을 권하고 있으며 출생 후 가능하면 빨리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교육자료3_ 기침, 객담 배출시 대처 및 관리방법

결핵에 의한 기침은 치료를 시작하면 곧 호전되어 1~2개월 이내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병변이 심하거나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기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수도 있다. 기침이 지속된다고 하여 치료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핵은 전염성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 손수건 등으로 막도록 한다.
- 티슈 등이 없을 때는 손으로 막지 말고 옷소매에 기침, 재채기를 하도록 한다.
- 사용한 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손을 비누로 씻거나,
-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액으로 씻는다.

♣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 타인을 보호하도록 한다.

- 흡연자는 금연하도록 한다.

♣ 객담도 치료를 하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병증으로 기관지확장증이 있으면 계속 객담이 나오기도 한다.

- 배출되는 객담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리도록 한다.
- 객담이 잘 배출되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한다.

※ 환자의 전염 기간은 유효한 항결핵제로 치료시작하면 급격히 감소하므로 동거 가족과 별거하거나 별도로 식사할 필요는 없다. 초치료인 경우 균음전이 될 때 까지는 타인의 방문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교육자료4_ 기침 예절



재채기나 기침이 나올 때에는 깨끗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휴지가 없을 경우 입이나 코를 손으로 가리지 말고 옷 소매부분으로 가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후 약 20초 동안 따뜻한 물로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어주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청결제로 씻어줍니다.

▶ 교육자료5_ 객혈 시 대처 및 관리

객혈 시 먼저 위장관에서 나오는 토혈과 구분해야 한다. 토혈인 경우에는 검붉은 색이고 흔히 음식물과 혼합되어 있으며 pH는 산성이다. 객혈은 선홍색이고 거품이 있는 객담과 혼합되고 pH는 알칼리성이다. 출혈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검붉은 색으로 객담과 같이 나오기도 한다.

객혈을 하게 되면 환자는 먼저 병이 악화된 것이 아닌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객혈과 병의 진행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향후 치료도중에도 발생하기도 하며,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과 상관없이 잔존 폐병변에서 객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한다.

- ♣ 객혈은 결핵 병변 내, 특히 공동 내 혈관이 노출되거나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해 혹은 합병증으로 진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병이 심하더라도 객혈이 없거나 경중이더라도 병변 내 혈관이 터지면 객혈을 하게 된다.
 - 아스피린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등은 출혈을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 ♣ 대량 객혈이 아닌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지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객혈 시 나오는 피는 참지 말고 뱉어내도록 한다.
- ♣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느 부위에서 출혈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때로는 느끼기도 한다. 엑스선 사진상 병변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면, 대부분은 상부 폐야 부위인 경우
 - 병변 폐를 아래로 하는 측와위 자세를 취하거나 병변에 해당하는 가슴 부위에 수건 등으로 둘러싼 얼음찜질을 권하여 좀 더 빨리 지혈이 되도록 한다.
- ♣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진료 담당의에게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지혈제 등이 포함된 처방을 받도록 한다.
 - 대량 객혈은 하루 100-600ml 이상 나오는 경우이다.
- ♣ 대량 객혈 시에는 질식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다. 따라서 종합병원 혹은 치료받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도록 권한다.
 - 이송되는 동안 혹은 집에서 기도막히지 않기 위해 출혈하지 않는 폐로 피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출혈하는 폐(알 수 있는 경우)를 밑으로 한 측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환자는 안정을 취하고 기침을 조금 억제할 수 있으면 지혈에 도움이 된다. 출혈하는 피는 참지 말고 뱉어내도록 한다. 따라서 출혈에 의해서 기침이 나올 경우에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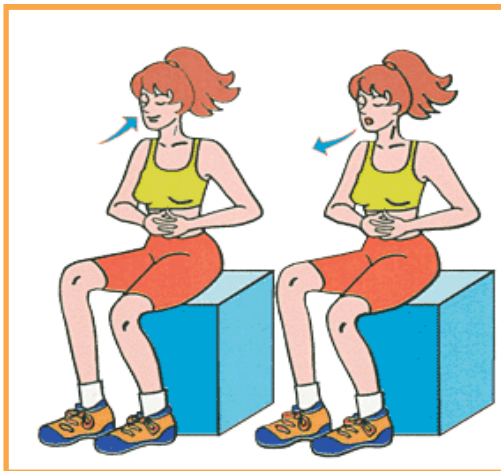
▶ 교육자료6_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호흡법 지도

결핵으로 폐실질의 손상이 심하거나 기도 폐색이 있는 경우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치료 후 일부 병변이 회복되면 호흡곤란도 호전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계속 지속되기도 한다.
 기관지확장제, 산소 투여 등은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정확한 횡경막 호흡법을 알면 도움이 된다. 횡경막 호흡법은 횡경막과 늑간근육을 사용하여 호흡하는 것으로 숨을 마시면 횡경막이 아래로 향하면서 상복부가 팽창하고 흉곽도 넓어지게 된다.

♣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횡경막 호흡법을 가르쳐주도록 한다.

-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손바닥을 대고 몇 번 자연스럽게 숨을 쉬도록 하면서 지켜본다.
- 몇 번 숨을 쉰 후 호기(呼氣) 마지막 부분에서 손바닥으로 배를 누르면서, 환자로 하여금 손바닥을 밀도록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도록 한다.
- 코로 숨을 들이 마시고 입으로 내뿜는다.
- 몇 번 실습한 후 손바닥을 떼고 횡경막 호흡을 하도록 한다.
- 환자는 긴장을 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상기 호흡법이 익숙해지면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도록 한다.

♣ 일반 호흡법은 숨을 들이마셔서 가슴이 팽창되지만 횡경막호흡법에서는 횡경막과 흉곽을 팽창함으로써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는 기분으로 호흡한다.



▶ 교육자료7_ 금연 / 절주 방법

■ 금연

1. 흡연의 유해성

- 흡연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비흡연 고혈압 환자보다 흡연 고혈압 환자가 약 50-60%가 높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악성 고혈압의 유병율이 5배, 뇌졸중이 10배, 뇌출혈도 4배나 더욱 잘 생긴다.
- 담배의 성분인 니코틴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압을 상승시킨다.
- 또한 계속적 흡연은 항고혈압제 치료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를 감소시키며 흡연 시 일산화탄소가 폐로 들어가서 혈중 산소이용률을 저하시킨다.

(1) 담배의 유해 기전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압을 상승시킨다. 또한 계속적 흡연은 항고혈압제 치료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를 감소시키며, 흡연 시 일산화탄소가 폐로 들어가서 혈중 산소이용률을 저하시킨다.

(2) 금연 시작은 늦지 않았다!

흔히 담배를 오래 동안 피워온 사람들은 이미 많은 해를 입었기 때문에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금연 1년이 지나면 전반적인 심장발작의 위험성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15년이 지나면 위험률은 흡연을 한 적이 없는 같은 연령의 사람들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금연은 언제 시작하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금연 지침

- 일시에 끊는 방법을 택한다. 양을 줄이는 방법은 실패한다. 마음먹은 날부터 5일간은 절대 피우지 않는다.
- 의지력을 굳게 한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나는 금연하기로 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암송한다.
- 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 운동을 한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한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혈압을 갑자기 올리므로 위험하다).
- 담배 생각이 날 때 심호흡을 되풀이한다.
-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신다.
- 금연을 시작한 날로부터 5일간은 술과 커피를 금한다.
- 음식을 고기보다는 야채로 먹는다.
- 식사 후에는 그 자리를 즉시 옮긴다.
- 과로, 수면부족, 과식을 피한다.
-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담배연기가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껌이나 은단, 박하사탕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이 5일간을 지키면 일차적으로 금연에 성공한 것이고, 그 후 3개월만 넘기면 자연히 담배와 멀어지게 된다.

3. 수십 년 습관으로 굳어져 너무 끊기가 힘든 경우에는 협상된 방법 이용

-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이 적은 담배를 사용한다.
-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제품(니코틴 패취, 니코틴 껌)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 이용 빈도를 점차 줄여 나간다. : 실제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 담배를 반만 피우고 버린다.
- 담배연기 흡입횟수를 줄인다.
- 담배 대신 안전한 대용물을 이용한다. (예 : 은단, 박하사탕, 껌)

위에 제시된 방법 중에서 과거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거나,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연 계획을 세운다.

금연계획을 세워서 계약서를 쓰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발표한다.

■ 절 주

1. 음주의 유해성과 금주의 효과

정기적으로 다량의 알코올 섭취가 다양한 인종 남녀 모두에게서 혈압을 높이는 것이 증명되었고, 음주 습관이 있는 인종에게서 고혈압의 유병율은 확연히 높다. 또한 알코올은 칼로리 섭취를 증가시켜 체중이 증가하므로 1~4주 이상동안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진다. 평소 알코올 섭취량의 80~85 %를 줄이는 것이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압/이완기압을 5.0/3.0 mmHg 감소시키고, 정상인에게서는 3.8/1.4 mmHg를 감소시킨다. 한 무작위 요인연구는 알코올 섭취만 제한하더라도 4.8/3.3 mmHg 혈압을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코올과 열량섭취제한을 함께 할 경우 혈압을 10.2/7.5 mmHg 낮추고 체중이 10kg 감소한다.

다량의 알코올은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항고혈압제 치료에 저항을 초래하여 똑같은 용량의 약을 복용하여도 비음주자에 비해 혈압강하의 효과가 낮다. 기온변화가 심한 계절(특히, 겨울)에 과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음주는 인체의 체온조절능력을 저하시키고 인지기능을 마비시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바른 음주습관 지침

- 저 칼로리 술을 마신다.
-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적게 마시며 독한 술은 피한다.
- 술을 구입 시 조금만 구입한다.
- 만성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인과 상담한다.
-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총 섭취 열량의 15% 이상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 술의 열량

(1컵 : 200cc, 1잔 : 50cc)

종류	어림치	열량	종류	어림치	열량
소주	1잔	90	브랜디, 위스키	1잔	140
맥주	1컵	100	드라이진	1잔	130
막걸리	1컵	100	포도주(백)	1잔	50
청주	1잔	65	포도주(적)	1잔	40
삼페인	1잔	20	단포도주	1잔	60

3. 금주 실천법

- 주로 술을 같이 마시던 사람과 새로운 취미활동을 시작한다. 정적인 것보 다는 축구, 볼링 등 스포츠가 좋다.
- 주로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을 마치면 곧바로 귀가하여 정원, 텃밭 가꾸기, 가축 기르기, 집안 일 돕기 등도 도움이 된다.
- 주기적으로 금주의 의지를 다지고, 음주가 심한 경우라면 AA 모임에 참가하여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 간호사가 소개를 해주고 비밀을 지켜준다.

▶ 교육자료8_ 결핵환자에 흔한 동반질환 관리

■ 고혈압 관리

고혈압 관리의 최대 목표는 적정 혈압을 유지함으로써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장기의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복용만큼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 내 압력의 증가와 동맥 경화 촉진 작용으로 뇌, 심장, 신장, 말초 혈관, 눈 등 여러 장기에 손상을 야기합니다.

고혈압을 치료 할 때에는 혈압 상승의 정도뿐만 아니라 흡연, 비만, 당뇨, 고지혈증, 신장 질환 등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지 또 표적 장기 손상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면 뇌졸중, 심장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 고혈압 치료법

1) 약물 치료

생활 요법으로 혈압 조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약물로 혈압을 낮추어야 합니다.

혈압은 140/90mmHg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과 용량, 그리고 부작용을 의사에게 물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점

- 주치의의 처방대로 복용시간과 횟수, 용량을 정확하게 복용합니다.
- 자주 혈압을 측정하여 약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 먹고 있는 다른 약이나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은 주치의에게 가져가서 알려줍니다.

2) 식사 요법

- 식사에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여 칼로리를 줄입니다.
- 전곡식품과 생선, 가금류(닭고기 등)와 견과류 섭취를 증가시키고, 육류와 단순당의 섭취를 줄입니다.
- 과일과 채소를 통해 칼륨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 우유 섭취를 통해 칼슘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육류를 섭취합니다.
-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 외식을 되도록 줄입니다. 이러한 식사를 통해 체중 조절과 함께 단백질과 섬유질 및 마그네슘, 칼륨, 칼슘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식을 지속하면 8~14mmHg 정도의 혈압 강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저염식도 식사의요법에서 중요합니다.

♣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

- 음식을 요리할 때 음식의 맛을 소금대신 후추나 향신료로 합니다.
 - 식탁에서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 국, 찌개, 라면 등 국물은 되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육류를 섭취합니다.
 -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 외식을 되도록 줄입니다.
- * 과식에 의한 열량 초과도 비만을 일으키며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 에너지 초과를 막는 식사법

-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 음식을 천천히 먹습니다.
- 간식은 먹지 않습니다.

* 카페인 함유 음료

카페인 함유 기호 식품은 처음에는 약간 혈압을 상승시키나 내성이 빨리되어 혈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차 등의 기호 식품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운동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체중의 감소와 무관하게 5-7mmHg 정도 혈압이 감소합니다.

운동 중의 심박수가 분당 110-120회 정도가 되도록 하거나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30-60분간 하며, 1주일에 3-5회 정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빨리 걷기, 조깅,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줄넘기, 체조 등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법

4) 음주량 조절

각 술 종류에 맞는 잔으로 1일 여자 1잔, 남자 2잔 정도의 소량의 적정 음주는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음을 하면 초기에는 혈관 확장에 의해 혈압이 감소하나 각성 시 혈압이 상승되고 맥박수가 증가되어 심혈관계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5) 금연

금연은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수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 담배를 피우면 15-30분간 혈압이 상승합니다.

6) 체중 감량

비만 중 남성형 비만(상체 비만)은 고혈압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을 1kg 감량하면 수축기 혈압/확장기 혈압은 1.6/1.3mmHg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당뇨병자 관리

1. 당뇨병 예방 및 조기치료

당뇨병 치료를 게을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만 한다면 당뇨병 예방은 물론이러니와,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결과로 비당뇨인과 동일한 수명과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비당뇨인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나은 생활의 질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치료법의 핵심은 생활습관의 개선이다.

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효과

핀란드 당뇨병 예방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당뇨병 발병이 대조군에 비하여 58% 감소하였다. 생활조절은 철저한 식사교육과 하루에 30분 이상 중등도의 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3.2년 후에 치료군은 연간 3%에서, 대조군은 연간 6%에서 당뇨병이 발생하였다.

미국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는 내당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7%이상의 체중감량과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시행한 후 3년 후에 당뇨병의 발병을 비교하였다.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하여 대조군에 비하여 58% 감소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 치료약인 메포르민을 복용한 군에서 역시 31%의 당뇨병 발병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생활습관 개선군이 약제 투여군에 비하여 오히려 더 우수한 당뇨병 예방효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 생활습관 개선의 구체적인 목표

비만한 사람에서 체중감량은 당뇨병에 관련된 모든 인자들(혈당, 혈압, 이상지혈증 등)을 개선시킨다. 일 년 동안에 7~10%의 체중감소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더 이상의 체중감량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감량된 체중은 쉽게 체중 증가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체중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따라서 일단 체중감량이 생기면 최소한 유지할 수는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쉽지 않다.

최적의 식이요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저탄수화물 또는 극도로 제한된 초저탄수화물(하루 130그램 이하)식사 등이 있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권장되지 않는다.

염분제한, 절주, 칼륨과 칼슘의 충분한 섭취, 과일과 채소류의 충분한 섭취, 저지방 낙농제품은 혈압개선 효과가 있다.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과 트랜스불포화 지방을 제한하고 불포화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추천되고 있다. 항산화제, 비타민B 또는 오메가-3 같은 것들은 아직은 일치된 결론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최적의 식사를 위한 영양소의 조성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다. 전체 식사량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열량 이상은 안된다.

포화지방을 포함한 고지방식은 안된다. 하나의 특수한 영양성분의 효과에 대해서 과신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여러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체중감소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뚜렷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주에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신체활동 또는 일주에 최소 90분의 고강도 유산소운동이 필요하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일주일 최소한 7시간의 중등도 또는 고도의 운동

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중감량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다. 비록 체중감량이 없어도, 최소한 체중증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운동을 계속한다면, 혈당개선은 물론이려니와 혈압과 이상지혈증과 같은 심혈관합병증의 위험요소들도 좋아진다.

흡연하는 당뇨병 환자는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조기사망을 또한 증가한다. 흡연과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에서의 영향을 따로 분석한 것이 없으나 적어도 일반인에 나타나는 나쁜 영향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당뇨병 환자는 금연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당뇨병 관리에 금연 치료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당뇨병 환자의 조절 기준 (미국당뇨병학회, 2008)

혈당관리	
당화혈색소(A1C)	<7.0%
식사 전 혈당	90-130 mg/dl
식후혈당(최고값)	<180 mg/dl
혈압	<130/80 mmHg
혈청지질	
LDL	<100 mg/dl
중성지방	<150 mg/dl
HDL	>40 mg/dl

라. 합병증 관리

- 급성 합병증 : 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혈당성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
- 만성 합병증
 - 대혈관 질환 :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 소혈관 질환 :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염, 당뇨병성신증, 발에 생기는 병변 (괴사-DM foot)

마. 결론

국가와 국민이 부유해지면서 생기는 부적절한 음식문화와 덜 움직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당뇨병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의 발생현황이 이를 말해준다. 당뇨병은 환자의 증가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당뇨병은 대부분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발병 및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 가능하다는 질환이다. 필요한 경우에 약물치료까지 병행한다면,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동안 합병증없이 비당뇨인 못지않은 건강수명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생활습관의 개선은 당뇨병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경우에 따라서는 악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다.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는 물론, 가족과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진 사이에 적절하면서 공통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약제 선택(인슐린, 경구 혈당강하제, 고혈압 치료제, 혈청 지방 및 지질 강하제, 그 외 다른 약제)은 당뇨병의 종류, 당뇨병 상태, 합병증 및 동반 질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개인의 식사요법 설정, 적절한 운동요법 설정, 자가 치료를 위한 환자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혈당의 자가 측정 및 소변 중 케톤 검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재방문 시기와 계속 관찰시 방문 횟수 등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교육자료9_ 중단자 관리 및 가정 방문 / 사회복지 연계

1. 중단자 관리

(1) 목적

규칙적인 진료 및 결핵약 복용으로 결핵치료 완치에 이르도록 함

(2) 접근방법

- ① 진료예정일을 지키지 않거나, 규칙적으로 항결핵약제를 투약하지 않는 대상자는 진료 예정일 3일 후부터 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내원 독려 한다.
- ② 결핵환자 사례관리에 따른 재교육을 실시하고 환자가족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 ③ 거동불능자는 입원을 권유한다.
- ④ 병원과의 거리가 먼 지방의 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투약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 ⑤ 전염성이 있는 균양성 환자인 경우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의거 강제 입원 명령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⑥ 중단한 대상자 중 전염성환자는 별도로 계속 추구관리 하도록 한다.

2. 가정방문

(1) 목적

결핵환자 사례관리대상자가 해당병원 내원 불능자이거나 불규칙적인 진료와 투약 불이행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결핵을 완치 하도록 함

(2) 원칙

- ① 결핵환자 사례관리 대상자 중 가정방문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한다.
- ② 가정방문 대상선정은 일주일 이상 내원하지 않고, 환자사례관리 중 파악된 건강문제의 문제목록이 3가지 이상이 중재되지 않는 대상자를 우선시 한다.
- ③ 가정방문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문할 것임을 알리고 방문 시간을 약속한다.
- ④ 가정방문을 통하여 대상자가 가진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건교육을 통해 결핵치료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 ⑤ 거동불능자인 경우 입원을 권유하고 마산, 목포 등 결핵전문병원을 소개한다.
- ⑥ 가정방문이 불가능한 원거리의 대상자는 관할보건소에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연계

(1) 목적

- ① 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연계 제공
- ② 건강문제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결핵을 완치하도록 함

(2) 접근방법

- ① 수급대상자인지 파악한다.
- ②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현황(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 ③ 사회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문인력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전달 체계의 파악한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소개한다.

결핵환자 관리내역 입력

▶ 입력자료1_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및 관리내용(<http://is.cdc.go.kr>)

① 환자신고 : “환자관리(등록)” 메뉴

The screenshot shows the '환자관리(등록)' (Patient Registration) form in the TB management system.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환자사항 (Patient Information):** Fields for name, birth date, gender,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 결핵 과거 치료역 (Tuberculosis Past Treatment History):** Checkboxes for treatment status and duration.
- 결핵 소회검사 (Tuberculosis Chest X-ray):** Grid for recording chest X-ray results.
- 약제감수성 (Drug Susceptibility):** Checkboxes for drug resistance testing.
- 결핵 증상 (Tuberculosis Symptoms):** Grid for recording various symptoms.
- 환자자료 (Patient Data):** Fields for registration date, start date, and management status. A red box highlights the '추가관리' (Secondary Care) and '추가관리시작일' (Secondary Care Start Date) fields.

② 투약상황(필수)

③ 추구검사항(필수)

④ 진료내역 및 소견(필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아웃 | 문의처 안내 | 내정보 | 공지사항

현재 선택하신 메뉴는 "결핵관리 > 신고관리 > 환자관리(보건의소)" 입니다.

환자신고내역 | 투약상황 | 추구검사사항 | 약제감수성검사 | 가족감진사항 | 기타검진 | 관리자메모 | **진료내역 및 소견**

메뉴보기

환자명 : (1170024620130109001)

순번	예약일	검사일	검사내역	진료내역 및 소견

초기화 | 행추가 | 행삭제 | 저장 | 신고서식 | 목록

⑤ 약제감수성검사(필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아웃 | 문의처 안내 | 내정보 | 공지사항

현재 선택하신 메뉴는 "결핵관리 > 신고관리 > 환자관리(보건의소)" 입니다.

환자신고내역 | 투약상황 | 추구검사사항 | **약제감수성검사** | 가족감진사항 | 기타검진 | 관리자메모 | 진료내역 및 소견

메뉴보기

환자명 : (1170024620130109001)

순번	검사일	검사확인일	감수성구분	H (INH)	R (RMP)	E (EMB)	Z (PZA)	Rfb (RFB)	Km (KM)	Amk (AK)	S (SM)	Lfx (LFX)	Mfx (MFX)	Ofx (OLX)

모두 내성 | 모두 감수성 | 모두 검사중 | 초기화 | 행추가 | 행삭제 | 저장 | 신고서식 | 목록

⑥ 가족검진사항(필수)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연결됨

⑦ 기타검진(선택)

⑧ 관리자 메모(선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아웃 | 관리자 안내 | 내정보 | 유지사항

현재 선택하신 메뉴는 "결핵관리 > 신고관리 > 환자관리(보견소)" 입니다.

환자신고내역 | 투약상황 | 추구검사사항 | 약제감수성검사 | 가족감전사항 | 기타검진 | 관리자메모 | 진료내역 및 소견

메뉴보기

환자명 : (1170024620130109001)

순번	작성일	내용
----	-----	----

초기화 | 행추가 | 행삭제 | 저장 | 신고서식 | 목록

▶ 입력자료2_ 결핵환자 사례관리내용(http://ppm.or.kr)

- ① 균양성 호흡기결핵(신환자, 재발자, 중단후재등록자)로 등록된 자는 사례관리 내역을 PPM web site에 입력(부록 4 참고)

The screenshots show the following forms:

- 1. 사례관리 <환자기본정보등록>: Patient basic information registration form.
- 2. 사례관리 <결핵관리요구도>: Tuberculosis management requirement form.
- 3. 사례관리 <건강문제조사>: Health problem survey form.
- 4. 사례관리 <전화모니터링>: Telephone monitoring form.
- 5. 사례관리 <대상자만족도>: Target satisfaction form.
- 6. 사례관리 <대상자호응도>: Target response form.

※ 정기적인 추구관리는 전화 및 면담을 통해 사례관리 매뉴얼의 관리 일정을 따라 2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단, 환자에 따라 일정을 맞추어 관리



결핵환자 사례관리

결핵환자 사례관리 작성매뉴얼(PPM웹 사이트 입력사항)

가. 결핵환자 사례관리

2013

이름		관리번호	
질병코드		등록구분	
추구관리 등록일			
처방결핵약제			
퇴록구분			
퇴록일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 2013년 결핵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일정 -

결핵환자 사례관리

구분	면담	비대면접촉 (전화상담)	만족도, 호응도	요구도	비고
1주	●			●	
2주	●	◎			
3주	●	◎			
4주		◎			
6주		◎			
8주	●	◎		●	
10주		◎			
12주		◎			
14주		◎			
16주	●	◎		●	
18주		◎			
20주		◎			
22주		◎			
24주	●	◎			
24주 이후		◎			
퇴록 시		◎	♠		

※ 다제내성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하는 경우에는 10개월, 18개월에 요구도, 건강문제 조사를 재실시한다.

I. 결핵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개요

1. 사례관리 목적

- 장기간 규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에게 주기적인 진료·복약확인 및 보건교육 등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치료 중단을 사전예방하고 자기관리 실천율을 향상시켜 결핵의 치료성공률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결핵치료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치료성공의 중요요소로 환자의 치료 완결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 필요
 -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성공을 유도하려면 각각의 환자에 대한 다양하고, 개별적 접근이 유용하여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개념을 접목하고자 함

2. 결핵환자 사례관리 필요성

- 결핵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치료처방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평가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요소 파악, 의료제공자와 환자간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므로,
- 결핵환자와의 긴밀한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순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파악 및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선택, 조정,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함

3. 사례관리모형 적용

사례관리 기능들	결핵환자 지원망 차원들		
	자기관리 (Self Care)	전문가 관리 (Professional Care)	상호관리 (Mutual Care)
사정 (assess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욕구, 신체적 기동력 - 사회적·인간상호적 기술들 - 정신건강 상태 - 자신을 스스로 옹호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학문적 영역들로부터 사정을 획득하는 것 - 대인서비스의 적용기준에 대한 사정, 대인서비스의 이용성을 명백히 하는 것 - 환자와 함께 일하는 제공자들의 기술에 대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망의 구조와 구성원들이 클라이언트를 향한 감정 - 본래적 조력자를 명백히하는 것 - 이용 가능한 사회적지지자들의 유형들을 명백히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 순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평가 (순응도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의 확인(병명 위치, 도말 및 배양결과, X선 촬영결과) - 투약 약제 이전 치료기록 등 관련정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망의 구조파악 - 주위 가족이나 동료의 결핵환자에 대한 태도 - 이용가능한 사회적지지자들의 유형을 명확히 함
계획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능력 및 기술 개선을 위한 목표를 정하는 것 - 환자의 삶의 질과 기능적 상태 개선을 계획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있는 대인 서비스들의 활용을 목표로 정하는 것 - 이러한 서비스들의 접근성, 이용성,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망의 구성원들과 사회적 지지의 급부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가 가장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동의를 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망의 구성원들과 결핵환자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
개입 (Inter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에게 자기표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 - 환자에게 자기 옹호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 - 위기의 기간 동안 개입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욕구에 대한 책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환자를 옹호, 서비스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대인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의 급부에 있어서 사회적 망의 구성원과 함께 협의 하는 것 - 사회적 망의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감소하도록 하기 위해 지지적 서비스들을 배치하는 것 - 기술발전에 있어서 망 구성원들을 보조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가 스스로 결핵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 계속적으로 치료를 돕기 위한 각종조치(상기 가정방문, 인센티브 등) - DOT 치료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들이 사례관리의 계획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 - 부작용과 치료반응의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지의 급부와 사회적 망의 구성원들의 참여를 점검
점검 (Monito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기술과 능력배양에 속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들이 사례관리의 계획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지의 급부와 사회적 망의 구성원들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순응도 		
평가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기능적 위치, 삶의 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는지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들이 환자의 기능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기능화에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완결여부 - 결핵환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의 치료에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

4. 결핵환자 사례관리 효과

- 결핵환자의 전체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자로서 사례관리자 역할은 결핵환자의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5 대상자 선정

- 해당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기존 및 신규 결핵환자 100%(담당 진료의사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 타 의료기관에서 결핵 치료 중 전원되어 온 자
- 균양성 호흡기결핵 신환자로 등록된 자는 사례관리 내역을 PPM web site(<http://ppm.or.kr>)에 입력

6. 사례관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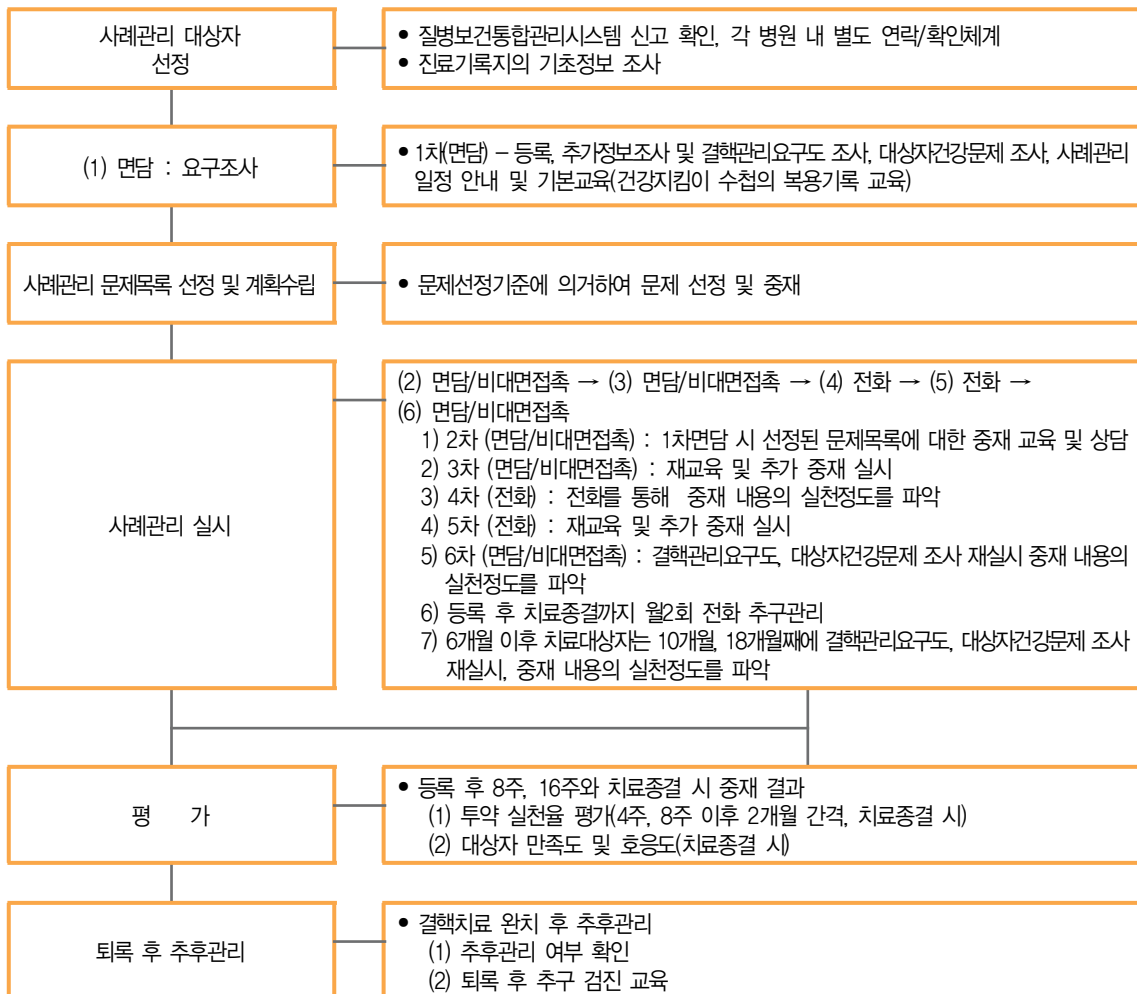
목 표	내 용
1. 건강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담 및 엑스선 검사 • 체중 • 혈색소 • 동반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
2.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치료순응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을 규칙적으로 방문(합병증이나 약제부작용 발생 시 포함) • 규칙적 약물 복용 • 결핵약제 부작용 설명 • 금연 • 절주 • 결핵합병증 발생 시 대처 교육(기침/객담/객혈 배출시 대처, 호흡곤란 시 호흡법 지도)
3. 결핵 관리에 대한 KAP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 복용의 중요성 인지 • 결핵의 전파 경로 및 예방 조치 숙지(가족교육) • 가족 검진 교육
4. 사회적지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지지 향상 : 투약지지, 병원동행 등, 복지 연계
5. 결핵 사례관리에 대한 만족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 호응도

7. 보건교육 자료

- 결핵치료 건강지킴이 수첩, 건강캘린더, 홍보물
- 종류별 항결핵제 사진
- 결핵환자 관리 기본교육 자료
- 기침, 객담, 객혈 배출시 대처법
- 호흡곤란 시 호흡 지도법
- 생활요법(금연, 절주)
- 결핵환자에 흔한 동반질환 관리(고혈압, 당뇨병)
- 중단자 관리 및 가정방문 / 복지 연계

II. 결핵환자 사례관리 과정

구분	1 주	2 주	3 주	4 주
1개월	(1) 면담 및 등록 - 건강면접/추가 정보 조사/기본교육	(2) 면담/비대면접촉 (전화) - 문제해결계획 - 중재/동기부여	(3) 면담/비대면접촉 (전화) - 중재 - 동기부여	(4) 전화 모니터링
2개월~ 치료 종결시		(5) 전화 모니터링		(6) 면담/전화 모니터링 평가



〈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요약표〉

접촉차수	내 용	간호사 지침	대상자 제공자료
1주 (1) 면담 (기본교육/ 추가정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확인 등록 결핵관리 요구도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 사례관리 일정안내 기본교육(건강지킴이 수첩의 복용 기록) 건강문제 선정에 따른 교육(관 련자료제공) 계획수립 (추구관리일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서식 및 관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진료기록지, 환자 문진 및 상담내용 활용 결핵환자 교육용 플립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교육자료 건강캘린더 건강지킴이 수첩
2주 (2) 면담/비대면접촉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문제해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관리 방향 제시 건강문제에 대한 인지정도 확인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건강문제 선정에 따른 보건교육 시행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교육 실시 비면담 접촉 시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복용 기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투약 기록
3주 (3) 면담/ 비대면접촉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집중 관리 문제목록에 대한 인지정도확인 중재 강화 교육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의뢰, 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교육 실시 비면담 접촉 시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복용 기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투약 기록
4주 (4) 전화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확인 문제목록에 대한 인지정도확인 대상자 실천 확인 투약 실천을 평가 추진 일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모니터링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복용 기록 확인 투약 실천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투약 기록
6주 (5) 전화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집중 관리 문제목록에 대한 인지정도 확인 중재 강화 교육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의뢰, 연계 등 대상자 실천 확인 추진 일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모니터링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복용 기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투약 기록
8주 (6) 면담/ 비대면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및 요구도 재조사 추구관리 형태 결정 관리주기 재판정 투약 실천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서식 및 기록표를 빠짐없이 작성 비면담 접촉 시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복용 기록 확인 투약 실천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투약 기록
추구관리 (10주~치료 종결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구관리 결핵관리 요구도 재조사 및 대상자 건강 문제 조사 정보제공 및 교육 투약 실천을 평가 대상자 만족도 및 호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서식 및 기록표를 빠짐없이 작성 대상자 추구관리 실시 건강지킴이 수첩 복용 기록 확인 투약 실천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약 확인 건강지킴이 수첩 투약 기록
퇴록 후 추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록 후 추후관리 추후검진 여부 확인 정보제공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모니터링 	

도중에 치료 중단 시 결핵관리 재교육 실시

Ⅲ. 결핵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수행

1차: 면담 및 면담 후 작업

■ 준비물 :

1. 대상자 진료 기록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환자신고 내역
3. 보건교육용 관련자료 (환자교육용 플립북, 건강지킴이수첩, 건강캘린더, 리플렛 등)
4. 사례관리 서식(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Web site에 입력)
5. 환자관리 기록카드
6.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명함

■ 사례관리 절차

1. 결핵환자 확인 후 면담
 - : 사례관리 참여 설명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여부 확인
2. 진료 기록지에서 기초 정보 조사
3. 다음의 서식을 작성한다.
 - : [환자관리 기록카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추구관리 내용 입력)
 - [결핵관리 요구도 조사표(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Web site에 입력)]
 -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Web site에 입력)]
4. 사례관리 일정 안내
5. 기본교육 실시 및 건강지킴이수첩의 복용기록 교육
6. [결핵환자 건강문제 선정]서식에서 문제목록을 결정한다.
 - 문제목록선정 시 [결핵환자 건강문제 선정기준]을 참조한다.
 - [결핵환자 건강문제에 따른 사례관리]를 참조하여 중재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건강문제에 따른 보건교육자료를 준비한다.
7. 사례관리 계획(사례관리일정포함)을 수립한다.
 - 면담 및 비대면 접촉(전화)일정 수립한다.

〈결핵환자 사례관리 설명문〉

결핵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는 환자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마칠 때까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결핵치료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환자분이 치료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줌으로써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요

환자분은 환자사례관리 전반에 대하여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로부터 사전설명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결핵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사례관리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위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치료과정

본 사례관리에 참여하게 되면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참여자와 직접 면담 혹은 전화 접촉을 통하여 결핵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약물치료 및 진료는 주치의로부터 계속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락을 통해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와 질병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참여에 따른 검사나 별도의 의약품은 없습니다.

사례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로부터 결핵 치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비밀 보장

사례관리에 참여하는 동안 환자의 투병상황기록 및 컴퓨터 기록은 보안이 유지됩니다. 진행과정에 참여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는 상담을 위해서 본인의 신분이 명기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출간되거나 발표되지 않을 것입니다.

- 결핵관리 요구도 조사표 -

항 목		건강관리 요구도
동반질환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건강 관리 수준	1. 규칙적 약복용	<input type="checkbox"/> 0. 규칙적 복용 <input type="checkbox"/> 1. 부분 도움 <input type="checkbox"/> 2. 완전도움
	2. 흡연	<input type="checkbox"/> 0. 비흡연 혹은 금연 <input type="checkbox"/> 1. 흡연
	3. 음주	<input type="checkbox"/> 0. 비음주/금주 <input type="checkbox"/> 1. 월 1회 미만 <input type="checkbox"/> 2. 주3회 이상
	4. 동반질환 진료 및 투약관리	<input type="checkbox"/> 0. 진단받은 적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진단받았으며 현재 의사 치료받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2. 진단받았으나 현재 의사 치료받고 있지 않음
	5.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의지	<input type="checkbox"/> 0. 높음 <input type="checkbox"/> 1. 보통 <input type="checkbox"/> 2. 낮음
	6. 건강문제(증상) 조절여부	<input type="checkbox"/> 0. 조절됨 <input type="checkbox"/> 1. 조절되지 않음
가 족 지지체계	동거가족 혹은 도움 가능한 자원	<input type="checkbox"/> 0. 부양가족 있음, 자원 있음 <input type="checkbox"/> 1. 부양가족 있으나 지원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2. 독거

요구도 판정		기 준	추구관리 시기
1군(집중관리군)		· 동반질환 있음 & (건강관리수준 6점 이상) & 가족지지체계 있음: 재가치료 · 만약 가족지지체계 없음: 본인이 원할 때 시설연계가 가능	본인이 원할 경우 주 1회 이상 전화 관리 & 본인이 원할 경우 국립병원 연계
2군 (정기관리군)	2-1	· 동반질환 있음 & (건강관리수준 5점 이하) & 가족지지체계 없음	사례관리 정기적 관리 & 본인이 원할 경우 주 1회 이상 전화 관리
	2-2	· 동반질환 있음 & 동반질환 없음(건강관리수준 5점 이하) & 가족지지체계 있음	사례관리 정기적 관리

구 분	측정일 / 점수				
	/(1주)	/(8주)	/(4개월)	/(10개월)	/(18개월)
1. 동반질환					
2. 건강관리수준					
3. 가족지지체계					
군 판정	()군	()군	()군	()군	()군

-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

1. 결핵 합병증, 증상

분 류	1주	8주	4개월	6개월	10개월	18개월	24개월
	0 : 없음, 1 : 있음						
기 침							
가 래							
호 흡 곤란							
흉 통							
객 혈							
발 열							
체 중 감소							
피 로 감							

2. 가족력

무	(외)조부	(외)조모	부	모	형제 자매	남편 부인	자녀
---	-------	-------	---	---	----------	----------	----

*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란에 모두 표시한다.

3. 과거력

무	1회	년도	2회	년도	2회 이상	년도
---	----	----	----	----	----------	----

4. 동반 질환

분 류	0 : 없음	1 : 있음 (질환명)	2 : 모르겠음
당뇨병			
고혈압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위장질환			
간장질환			
기타질환			

5. 결핵에 대한 지식, 태도

		총 점수		점
		그렇다	아니다	모름
1	음식을 통해서 전염된다.	0	1	0
2	결핵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은 곧 없어진다.	1	0	0
3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완치된다.	1	0	0
4	잘 먹고 폭 쉬면 약을 안 먹더라도 완치된다.	0	1	0
5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0	1	0
6	결핵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1	0	0
7	완치되면 합병증(호흡곤란)은 없어진다.	0	1	0
8	완치될 때까지 무리하게 일을 하면 안된다.	0	1	0
9	치료 중단하더라도 다시 치료하면 쉽게 완치된다.	0	1	0
10	결핵에 감염되면 모두 병에 걸린다.	0	1	0
계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1주	8주	4개월	10개월	18개월
1	음식을 통해서 전염된다.					
2	결핵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은 곧 없어진다.					
3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완치된다.					
4	잘 먹고 폭 쉬면 약을 안 먹더라도 완치된다.					
5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6	결핵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7	완치되면 합병증(호흡곤란)은 없어진다.					
8	완치될 때까지 무리하게 일을 하면 안된다.					
9	치료중단하더라도 다시 치료하면 쉽게 완치된다.					
10	결핵에 감염되면 모두 병에 걸린다.					
	총 점					

6. 처방 결핵약(약제명:)

		총 점수		점		
		전혀 못했다	가끔 했다	절반 정도 했다	1주일에 1회 이상 복용 안했다	매일 복용 했다
1	처방된 약물은 매일 복용하십니까?	1	2	3	4	5
2	약물은 지시된 용법으로 복용하십니까?	1	2	3	4	5

	1주	8주	4개월	6개월	10 개월	18개월
처방된 약물은 매일 복용하십니까?						
약물은 지시된 용법으로 복용하십니까?						
총 점						

7. 결핵약제 부작용

결핵약제 부작용 증상	관련증상	1주	8주	4개월	6개월	10개월	18개월
간독성 (AST&ALT 증가, 빌리루빈 증가, 황달, 발열, 오심, 구토, 발진 등)							
위장장애 (오심, 구토, 식욕감퇴, 복통 등)							
피부 관련 증상 (발진, 가려움, 점출혈-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피부염, 여드름 등)							
관절통, 근육통							
시력장애(시력혼탁, 시력감소, 중심성암증, 적록색맹 등)							
중추신경장애(초조, 발작, 불쾌감, 집중력저하, 현기증, 무력감 등)							
기타 증상							

1주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결과요약

예시) 부인과 함께 내원함
결핵발병에 대해 낙심하고 있으며, 질환에 대해 부정적임(결핵인지도 5점)
동반질환(고혈압) 관리 잘되고 있음
가족지지 잘 됨
기본 교육 실시하였으며, 규칙적 약복용과 절주에 대해 강조함

8주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결과요약

4개월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결과요약

6개월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결과요약

6개월 이후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결과요약

10개월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결과요약

18개월 결핵사례관리 대상자 건강문제 조사표 결과요약

결핵환자 건강문제 선정 기준

문제번호	문제제목	문제 선정 기준
1	투약지시 불이행	결핵사례관리대상자 건강문제 6번 문항 ① 투약 항목의 점수가(두 항목의 합) 6점 이하인 경우 ② 투약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3점 이하인 경우(약물의 빈도/약물 용량)
2	음주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나,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
3	흡연	현재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경우
4	결핵약제 부작용	결핵약제부작용 항목에서 2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
5	합병증 발생	합병증 항목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에 이환되었으나 의사 상담이나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합병증에 대한 특별한 투약이 없어도 의사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치료로 간주
6	동반질환 관리안됨	당뇨병, 고혈압 등 타 동반질환 치료중이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문제선정이 됨
7	가족지지 안됨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발자가 필요하나, 수발자가 없는 경우 ② 가족지지 항목에서 도움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결핵환자 건강문제 선정 및 중재 결과

건강문제 선정																			
문제번호	문제제목	문제선정 (V하시오)					문제선정 이유	건강문제 중재결과 (V하시오)											
		1주	8주	16주	10개월	18개월		건강문제 중재결과 (V하시오)											
		8주	16주	10개월	18개월	해결됨		해결중	미해결	해결됨	해결중	미해결	해결됨	해결중	미해결				
	투약지시 불이행																		
	흡연																		
	음주																		
	결핵약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동반질환 관리 안됨																		
	가족지지 안됨																		
	의사소통 장애																		

결핵환자 건강문제에 따른 사례관리

문제목록	원 인	수행활동	목 표
투약지시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부족 - 경제적 어려움 - 약물부작용 - 자기통제능력 부족(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 진료형태 및 의료인(약물효과, 불친절)불신 - 중요성 인식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육 - 복약지도 - 보건기관(복지시설)추천 또는 정보제공 - 건강수첩 이용(복용기록 관리) - 병원 의료인과 환자와의 중재 - 가족 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협조요청 - 성공사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받은 약은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복용 -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치료중단 방지
흡 연	- 의지의 부족	- 동기부여	- 금연실천
음 주	- 의지의 부족	- 성공사례 소개	- 절주실천
		- 금연, 금주 서약	
결핵약 부작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명 : 개인차에 따라 나타남 - 결핵약제의 과용량 - 복용방법의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작용 증상을 확인한다. - 경미한 부작용은 그대로 복용한다. - 심한 부작용 발생 시 주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부작용 발생원인 파악하여 규칙적 치료
호흡기 합병증 발생 및 동반질환 관리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관리 부족 - 지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실시한다. - 호흡법 교육 - 객혈 시 대처법 교육 - 자기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증 완화 - 혈당 조절
의사소통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기술 부족 - 불신 - 정보부족 - 자기표현 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이해를 촉진하기위해 설명 자료를 활용한다. - 병원방문 전에 질문 리스트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혹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보 - 담당간호사 혹은 담당의사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가족지지가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없음 - 관심, 시간 부족 - 결핵지식 부족 - 대상자가 질환으로 인해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대상 교육 - 사회적 활동 격려 - 사례관리간호사의 정서적 지지 - 건강관리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투약과 진료 - 건강습관 유지 모니터링과 지지 - 진료동행 등의 가족지지체계 확보

결핵환자 건강문제에 따른 중재요약

문제목록	중재자료(개별 교육시 활용)
투약지시 불이행	복약지도 보건기관추천 또는 정보제공 건강지킴이수첩 이용 가족 협조 요청 성공사례 소개
흡연 음주	동기부여 금연서약 금주서약
합병증 발생	합병증(당뇨병, 고혈압 등) 검사를 실시한다. 호흡법 교육 객혈 시 대처법 교육 자가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의사소통 장애	의사대응방법 교육 병원방문 전 질문리스트 작성
가족지지가 안됨	가족대상 교육 사회적 활동 격려 담당간호사의 정서적 지지 건강관리 정보제공 성공사례 소개

〈2주째〉 2차: 면담 및 전화상담 후 작업

- 준비물 :
 1. 환자관리기록카드 o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객담검사, 엑스선검사 등은 진료기록지에서 확인하여 기록 및 입력)
 2. 건강지킴이 수첩의 투약 기록 확인, 보건교육자료
 3. 사례관리 일정 확인
- 사례관리 절차
 1. 건강문제선정에 따라 사례관리에 대해 대상자와 합의한다.
 - 1차면담 시 조사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
 2. 약복용을 문진하고 [투약 기록]을 확인한다.
 - 규칙적 복용유무를 확인한다.
 - 투약 기록을 담당간호사가 문진하고 복용기록에 대해 재교육한다.
 3. 건강문제 선정에 따른 중재 교육을 실시한다.
 4. 다음 사례관리 계획(면담/비면담 일정포함)을 수립한다.
 5. 추서관리 내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PPM Web site에 입력한다.

〈3주째〉 3차: 면담 및 전화 상담 후 작업

- 준비물 :
 1. 환자관리기록카드 o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객담검사, 엑스선검사 등은 진료기록지에서 확인하여 기록)
 2. 건강지킴이 수첩의 투약 기록 확인, 보건교육자료
 3. 사례관리 일정 확인
- 사례관리 절차
 1. 건강문제 선정에 따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1차면담, 2차면담 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중재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2. 약복용을 문진하고 [투약 기록]을 확인한다.
 - 규칙적 복용유무를 확인한다.
 - 투약 기록을 담당간호사가 문진하고 복용기록에 대해 재교육한다.
 3. 다음 사례관리 계획(일정포함)을 수립한다.

※ 사례관리 일정에 따라 추서관리 한다.

전화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2주-24주>

전화를 통하여 지난 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투약 및 건강관리 실천 정도를 확인·평가하고, 다음 일정을 재확인한다.

결핵약 복용 및 건강관리 정도 평가지	확인한 사항											
	2주	4주	6주	8주	10주	12주	14주	16주	18주	20주	22주	24주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복약 후 투약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가?												
약물 부작용은 없는가?												
자신의 건강문제(동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를 알고 있는가?												
자신의 건강문제(동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를 관리하고 있는가?												
결핵 합병증은 호전되고 있는가?												
다음 병원 내원일을 알고 있는가?												

〈26주~48주〉 전화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전화를 통하여 지난 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투약 및 건강관리 실천 정도를 확인·평가하고, 다음 일정을 재확인한다.

결핵약 복용 및 건강관리 정도 평가지	확인한 사항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26주	38주
	28주	40주
	30주	42주
	32주	44주
	34주	46주
	36주	48주
복약 후 투약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가?	26주	38주
	28주	40주
	30주	42주
	32주	44주
	34주	46주
	36주	48주
약물 부작용은 없는가?	26주	38주
	28주	40주
	30주	42주
	32주	44주
	34주	46주
	36주	48주
자신의 건강문제(동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를 알고 있는가?	26주	38주
	28주	40주
	30주	42주
	32주	44주
	34주	46주
	36주	48주
자신의 건강문제(동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를 관리하고 있는가?	26주	38주
	28주	40주
	30주	42주
	32주	44주
	34주	46주
	36주	48주
결핵 합병증은 호전되고 있는가?	26주	38주
	28주	40주
	30주	42주
	32주	44주
	34주	46주
	36주	48주
다음 병원 내원일을 알고 있는가?	26주	38주
	28주	40주
	30주	42주
	32주	44주
	34주	46주
	36주	48주

〈50주~72주〉 전화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전화를 통하여 지난 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투약 및 건강관리 실천 정도를 확인·평가하고, 다음 일정을 재확인한다.

결핵약 복용 및 건강관리 정도 평가지	확인한 사항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50주	62주
	52주	64주
	54주	66주
	56주	68주
	58주	70주
	60주	72주
복약 후 투약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가?	50주	62주
	52주	64주
	54주	66주
	56주	68주
	58주	70주
	60주	72주
약물 부작용은 없는가?	50주	62주
	52주	64주
	54주	66주
	56주	68주
	58주	70주
	60주	72주
자신의 건강문제(동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를 알고 있는가?	50주	62주
	52주	64주
	54주	66주
	56주	68주
	58주	70주
	60주	72주
자신의 건강문제(동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를 관리하고 있는가?	50주	62주
	52주	64주
	54주	66주
	56주	68주
	58주	70주
	60주	72주
결핵 합병증은 호전되고 있는가?	50주	62주
	52주	64주
	54주	66주
	56주	68주
	58주	70주
	60주	72주
다음 병원 내원일을 알고 있는가?	50주	62주
	52주	64주
	54주	66주
	56주	68주
	58주	70주
	60주	72주

〈74주~96주〉 전화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전화를 통하여 지난 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투약 및 건강관리 실천 정도를 확인·평가하고, 다음 일정을 재확인한다.

결핵약 복용 및 건강관리 정도 평가지	확인한 사항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74주	86주
	76주	88주
	78주	90주
	80주	92주
	82주	94주
	84주	96주
복약 후 투약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가?	74주	86주
	76주	88주
	78주	90주
	80주	92주
	82주	94주
	84주	96주
약물 부작용은 없는가?	74주	86주
	76주	88주
	78주	90주
	80주	92주
	82주	94주
	84주	96주
자신의 건강문제(동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를 알고 있는가?	74주	86주
	76주	88주
	78주	90주
	80주	92주
	82주	94주
	84주	96주
자신의 건강문제(동반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를 관리하고 있는가?	74주	86주
	76주	88주
	78주	90주
	80주	92주
	82주	94주
	84주	96주
결핵 합병증은 호전되고 있는가?	74주	86주
	76주	88주
	78주	90주
	80주	92주
	82주	94주
	84주	96주
다음 병원 내원일을 알고 있는가?	74주	86주
	76주	88주
	78주	90주
	80주	92주
	82주	94주
	84주	96주

투약 실천율 확인(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4주간(28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4주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8주간(56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8주(2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16주간(12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4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24주간(18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6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8개월 (24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8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 확인(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10개월 (30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10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12개월 (36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12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14개월 (42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14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16개월 (48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16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18개월 (54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18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20개월 (60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20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22개월 (66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22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투약 실천율(건강지킴이 수첩 기록 확인)
- 24개월 (720일 기준) -

확인할 내용	처방일수 / 실천일수	실천율(%)
24개월 동안 약은 잘 드셨습니까? 복용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	

결핵환자 사례관리 대상자 만족도

결핵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팀에서 실시하는 결핵환자 사례관리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역을 설문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별 남 _____ 여 _____

본인유무: _____ 보호자구분: _____

연령대 :

지금까지 결핵관리전담간호사와의 직접면담 횟수는 몇 번입니까?

설문항목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병원에서 결핵사례관리 서비스(교육 및 상담)를 받기에 상담실 환경은 좋았다.					
2.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면담 시 시간상 편리했다 .					
3. 전화상담 시 전화를 받고 하기에 시간상 편리했다.					
4.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친절하였다.					
5. 진료받는 병원의 의사는 친절하였다.					
6. 결핵치료의 궁금한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					
7. 결핵사례관리서비스가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8. 직접면담과 전화상담 중 어느 방법이 더 좋으셨습니까? 1: 직접면담, 2: 전화상담, 3: 두가지 방법 다 좋다. 4: 기타					
9. 결핵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참여과정에서 불편하셨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10. 결핵사례관리 서비스 외에 추가로 더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습니까?					

결핵 사례관리 대상자 호응도(결핵관리 전담간호사 판단)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설 문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사례관리 시작할 때 대상자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까?					
2. 대상자가 전담간호사와의 면담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셨습니까?					
3. 대상자는 전담간호사의 교육이나 지시에 잘 따르셨습니까?					
4. 사례관리 치료기간동안 대상자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까?					
5. 성공요인					
6. 장애요인					

면담 및 전화상담 결과에 따른 소견

■ 전담간호사 소견 1

- 객담검사에서 전염성이 있는 상태이고 기침과 가래가 많은 편임으로 사람이 많은 곳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집안에서는 환기를 자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거가족 분들은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에서 지원하는 결핵검진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규칙적 약복용 및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담간호사 소견 2

- 결핵관련 증상이 거의 없고 전염성도 없는 상태이나 규칙적인 약복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직장) 등교(출근)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담간호사 소견 3

- 균음전이 되었으므로 전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규칙적으로 약복용을 잘 하시고 일상생활은 남들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전담간호사 소견 4

- 결핵약 복용 8주째인 현재는 가래검사 상 균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 규칙적으로 약복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전담간호사 소견 5

- 간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주치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역감이나 구토 증상 등이 심해지면 약제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결핵치료 중 알코올의 섭취, 한약, 보약, 개소주 등은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간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합니다.

■ 전담간호사 소견 6

- 진료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셔야 합니다.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여 결핵약이 떨어져 복용을 못하게 되는 횟수가 많으면 치료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담간호사 소견 7

- 객담검사에서 전염성이 있는 상태이고, 결핵약제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결핵입니다.
- 다제내성결핵은 치료 중 전염력이 소실되는 시기가 더딥니다.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입원을 하셔서 배양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되는 시기까지는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 다제내성결핵은 충분한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가래검사와 흉부 X선 결과 등을 보면서 치료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완치 판정을 받으실 때까지 약복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전담간호사 소견 8

- 추구검사에서 음성(도말음성, 배양음성)이므로 생활은 평상시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전염성은 없는 상태이나 규칙적인 약복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직장) 등교(출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담간호사 소견 9

- 결핵약 복용 6개월째인 현재는 가래검사 상 균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 규칙적으로 약복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1_ 인건비

- 인건비 개념
 -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부담금
- 모든 인건비는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가. 급여

-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함
 - 관계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기준은 위의 관계법령 및 지급근거에 의하며,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수당포함)
 - ※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결핵환자에 대한 교육, 부작용상담, 내원독려, 복약독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건비에 대한 제한(전체 예산의 30%)을 두지 않음

나. 퇴직금

- 퇴직금은 반드시 사업종료 시(매년) 정산함
- 퇴직연금의 경우,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고 그 근거(납입증명서, 신고서, 계약서 등)를 보관함
 - ※ 전년도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당해년도 사업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정산 할 수 있음

다. 부담금

- 부담금의 개념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유지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
 -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항목2_ 일반수용비

가. 회의참석비

- 회의참석비의 개념
 - 회의참석비 : 자문회의, 평가회의 등의 참석자 중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 회의참석비의 집행
 - 회의참석비 기준 : 100,000원 지급(2시간 초과)
 -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반드시 회의개최 및 참석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방명록)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국가결핵관리사업과 직접연관성이 있는 공무원, 회의주관단체 소속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경우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사업운영팀의 자체회의시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자료 제작 및 인쇄비

- 자료제작 및 인쇄비의 개념
 - 결핵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자료(소책자 및 슬라이드 등) 제작·배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워크숍, 자문회의 자료, 각종 홍보자료 등)의 복사·인쇄 및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의 인쇄비용
- 자료 제작 및 인쇄비용의 집행
 -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배포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제작된 교육 자료는 사업기관에 비치하여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품 물품 구입의 비용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은행수수료, 물품운송대금 등
- 비품수선비
 - 가전제품수리비, 정수기필터교체,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각종 사무용품 비품의 수선비

▶ 항목3_ 공공요금

- 공공요금의 개념
 -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 전기요금, 전신·전화료, 우편요금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비용
- 공공요금의 집행
 - 전기요금 : 상담실 크기 기준으로 평당 2,500원 으로 일괄 적용
 - 전화요금 : 전용 전화선을 설치하여 별도의 영수증에 첨부된 금액
 - 공공요금은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관하고 납기내에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음

▶ 항목4_ 기타운영비

가. 강사료

- 강사료 : 정기·비정기 교육 및 특강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 ※ 강사 1인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 장소에서 장시간의 강의·교육을 실시한 경우라도 강사수당은 1회를 기준으로 산출함
- 강사료의 집행
 - 집행기준
 - 1시간 미만 100,000원,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50,000원, 2시간 이상인 경우는 200,000원 지급
 - 30분 미만의 강의 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반드시 교육 개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소속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 시 강사료를 집행할 수 없음
 - 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단, 강사가 원거리에서 출강할 경우 교통비(실비)만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교통비 지급 시 해당 근거서류(기차표, 버스표, 톨게이트영수증 등)를 첨부함

나. 환자 인센티브

- 치료 완료, 완치 등의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상품 등)에 지급되는 비용

▶ 항목5_ 여비

가. 출장비(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 여비)

- 국내·외 출장의 경우, 이에 대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 및 출장비를 산출하여야 함
- 서울·수도권(지하철 연계지역)외의 국내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 출장비의 집행
 - 시외 여비는 출장비에 포함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붙임 12)' 및 '출장자 운임산출내역(붙임 13)'을 적용하여 작성·비치할 것
 - 시내교통비의 경우는 날짜, 시간, 목적, 목적지, 소요금액 등을 명시한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회의에 대한 여비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지급되므로 지출 제외 대상임

▶ 항목6_ 업무추진비

가. 경비

- 회의 및 교육 경비의 개념
 - 회의경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 교육경비: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 회의 및 교육 경비의 집행

	소 계	원
경비(다과비)	3,000원 × 인 × 회 =	원
경비(식비)	20,000원 × 인 × 회 =	원

- 회의, 교육 등 식비 및 다과비가 지출된 경우 해당 영수증을 (붙임 10)에 작성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항목5_ 집기비품비

- 집기비품비의 개념
 -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꼭 갖추어야 할 집기 및 비품에 한함
- 집기비품비의 집행
 - 건강증진기금 및 후원 등에 의해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구입·지원받은 물품에 대하여 재물목록표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서 등(붙임 11)을 작성·비치하여, 집기·비품의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구입을 피하도록 함
 - 특히, 건강증진기금으로 집기 및 비품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해 사도(사군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함
- 집기비품 폐기
 - 사업 중단 및 건강증진기금으로 구입·지원받은 물품에 대해서 폐기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폐기 처리함
 - ※ 가능한 집기비품비 사용은 지양함

▶ 항목6_ 행정지원비

- 행정지원비의 개념
 - 의료기관환자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행정처리 등 비용발생에 대한 대치금
- 행정지원비의 집행
 - 전체예산의 5%내에서 행정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자(개인)에게 간접비의 발생은 불가능함



관련서식

<서식1> 결핵환자관리 등록대장(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기간	신고접수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금일"/>	병록번호	<input type="text"/>
환자이름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질병코드1	A15.0 ~ A19.9	질병코드2	전체
승인여부	전체	추구관리	전체
치료결과	전체		

에이즈 - 결핵관리과 : 총 0건

순번	접수번호	신고기관	신고구분	신고일자	병록번호	환자이름	성별	나이	환자구분	치료결과	질병코드	DOI관리 관리시점	추구관 관리여부

〈서식2〉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사업 월말실적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20 년 월말 실적보고서

- 병원명 :
- 제출일 :

사유별	호흡기결핵									기타			계
	폐 결핵					폐외 결핵	다제 내성	광범위 내성	소계*	폐 외 결핵			
	도말 양성	도말 음성 배양 양성	도말 음성 배양 음성	기타	속립성					신경계	기타 장기	소계	
전 월말 환자수													
등록 신고	계												
	신환												
	재발												
	초치료 실패												
	중단후 재등록												
	전입												
	만성 배양자												
기타													
치료 결과 / 퇴록	계												
	완치												
	완료												
	실패												
	중단												
	전출												
	결핵관련사망												
	기타사망												
	진단변경												
기타													
금 월말 환자수													

- 호흡기 결핵
 - 폐결핵
 - 도말양성 : A15.0
 - 도말음성 배양양성 : A15.1
 - 도말음성 배양음성 : A16.0
 - 기타 : A15.2, A15.3, A15.5, A15.7, A15.8, A15.9, A16.1, A16.2, A16.4, A16.7, A16.8, A16.9
 - 속립성 : A19
 - 폐외결핵 : A15.4, A15.6, A16.3, A16.5
 - 다제내성결핵 : U88.0
 - 광범위 내성결핵 : U88.1
- 기타
 - 폐외결핵
 - 신경계 : A17
 - 기타장기 : A18
 - ※ 소계 : 다제내성과 광범위내성 결핵은 포함하지 않음

〈서식3〉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사업 분기실적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분기 실적보고서

- 병원명 :
- 제출일 :
- 1) 병의원 실적 현황
 - 사업 대상 병·의원 현황

대상	사업대상현황 (A)	추진실적 (B)	비율(% (B)/(A)*100
	인원	인원	인원
계	/()	/()	/()

* 현황 및 실적 : 현분기 / (누적분기)

2) 환자등록현황

사유별			등록신고									
			계	신환	재발	초치료 실패자	중단후 재등록	전입	만성 배균자	기타		
계	전분기말											
	분기	신규 등록 퇴록										
호흡기 결핵	폐결핵	금분기말										
		전분기말										
		도말 양성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전분기말										
		도말음성 배양양성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전분기말										
	도말음성 배양음성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전분기말											
	기타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전분기말											
속립성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전분기말												
폐외결핵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전분기말												

	다제내성	전분기말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광범위내성	전분기말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기타	폐외 결핵	신경계	전분기말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기타장기	전분기말																
		분기	신규 등록															
퇴록																		
금분기말																		

3) 치료성적

- 구분별 : 계, 신환, 재발, 초치료 실패자, 중단후 재등록, 전입자, 만성배균자, 기타

사유별			계																	
			치료중		완치		완료		실패		사망		중단		전출		진단변경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계																				
호흡기 결핵	폐결핵	도말 양성																		
		도말 음성 배양 양성																		
		도말 음성 배양 음성																		
		기타																		
		속립성																		
	폐외 결핵																			
	다제 내성																			
	광범위 내성																			
기타	폐외 결핵	신경계																		
		기타 장기																		

환자관리 기록 카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

관리번호 :

병원등록번호 :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진료과	등록일자		20 . . .	
주소					성/연령			/	
전화번호	/				체중	kg		최음 진단 기관 :	
E-mail					키	cm		최음 진단일 :	
증상	기침, 가래, 발열, 피로감, 호흡곤란, 흉통, 재중감소, 객혈, 기타() , 무증상		당뇨병, 고혈압, 기타() , 무		시력 검사		집번호		
	동반 질환				좌 () 우 ()				
과거치료력 횟수 (0.1.2 이상) 연도 ()	INH (월) (월)	총부 X-선 검사(CT등) (월 일)		객담 검사		기타 검사		1. 신환자	
	RIF (월) (월)	1. 정상		검사일	도말	배양	TBPCR		2. 재발자
	EMB (월) (월)	2. 결핵의심(공동 유, 무): R, L, 양측		월 일	월 일	월 일	조직검사		3. 초치로 실패자
	PZA (월) (월)	3. 기타()		월 일	월 일	월 일	기타		4. 중단 후 재등록자
()	(월) (월)	4. 미검		월 일	월 일	월 일	AST		5. 전입자
의제 감수성 검사	INH-RIF, EMB, PZA, Km, Ph, Cs, PAS, Ok, Mx, SM, Amk, Cm, Ltx, Rib		신속내성 검사		혈당 (mg/dL)		ALT		6. 만성배균자
	감수성	INH-RIF	감수성	INH-RIF			혈당 (mg/dL)		7. 기타환자
예약일	투약일	INH () () () ()	EMB	PZA	객담 검사		총부 X-선 검사 (CT등)		환자관리 사항 (면담, 진화)
		() () () ()	() () () ()	() () () ()	도말	배양	A A A A S S S S T T T T 기 타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서식5〉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사업 참여병원 평가 방법

• 각 영역별 평가방식 및 배점은 아래와 같음

	병원에 대한 평가
투 입	10점
과 정	20점
성 과	30점
결과 및 영향	40점
총 점	100점

1.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표

(1) 투입 10점

평 가 지 표	평 가 기 준	점검사항
1)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력의 신분은 어떠한가?(2점)	<input type="checkbox"/> ① 계약직(1점) <input type="checkbox"/> ② 연구간호사(0.5점) <input type="checkbox"/> ③ 정규직(2점)	실태조사
2)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실이 있는가?(4점)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4점) <input type="checkbox"/> ② 공동(2점) <input type="checkbox"/> ③ 없음(1점)	실태조사
3)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재반시설(컴퓨터, 책상, 전화기, 서랍장, 창문)은 확보되어 있는가?(4점)	<input type="checkbox"/> ① 모두 있음(4점)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2점) (미확보사항:)	실태조사

(2) 과정 20점

평 가 지 표	평 가 기 준	점검사항
1)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대해 병원 차원의 자체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가?(5점)	<input type="checkbox"/> ① 예(5점) (연간 개최횟수____)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2.5점)	실태조사
2) 병원 내, 타과에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5점)	<input type="checkbox"/> ① 양호(5점) <input type="checkbox"/> ② 보통(3점) <input type="checkbox"/> ③ 불량(1점)	실태조사
3)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월말실적보고 및 분기실적보고를 기간 내에 제출하고 있는가?(5점)	<input type="checkbox"/> ① 기간 준수 제출(5점) <input type="checkbox"/> ② 기간 외 제출(3점) <input type="checkbox"/> ③ 미제출(0점)	실태조사
4) 결핵환자 및 접촉자 추구관리 외 타업무를 하고 있는가?(5점)	<input type="checkbox"/> ① 예(1점)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5점)	실태조사

(3) 성과 30점

평가지표	측정지표	실적	
관리 대상 진료과 수	병원 내 결핵환자 신고 진료과 수(A)	개과	
대상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결핵환자 수	계(C)	명	
	도말 양성(D)	명	
	도말 음성/배양양성(E)	명	
	도말음성/배양음성(F)	명	
	기타(폐외결핵)(G)	명	
1) 참여율 (B/A)×100 (5점)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참여 진료과 수(B)	개과	%
2) 환자관리등록률 (H/C)×100 (5점)	등록관리 결핵환자 수(H)	명	%
3) 도말양성 환자등록률(I/D)×100 (5점)	도말양성 등록 결핵환자수(I)	명	%
4) 도말음성/배양양성 환자등록률 (J/E)×100 (5점)	도말음성/배양양성 등록 결핵환자수(J)	명	%
5) 도말음성/배양음성 환자등록률(K/F)×100 (5점)	도말음성/배양음성 등록 결핵환자수(K)	명	%
6) 기타 환자등록률 (G/L)×100 (5점)	기타 등록 결핵환자수(L)	명	%

(4) 결과 40점

평가지표		실적	율
1)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A/B)×100 (8점)	완치, 완료된 결핵환자 수(A)	명	%
	결핵환자 등록자수(B)	명	
2) 도말양성 치료성공률 (C/D)×100 (8점)	완치, 완료된 도말양성 결핵환자 수(C)	명	%
	도말 양성 결핵환자 등록자수(D)	명	
3) 도말음성/배양양성 치료성공률 (E/F)×100 (8점)	완치, 완료된 도말음성/배양양성 결핵환자 수(E)	명	%
	도말음성/배양양성 결핵환자 등록자수(F)	명	
4) 도말음성/배양음성 치료성공률 (G/H)×100 (8점)	완치, 완료된 도말음성/배양음성 결핵환자 결핵환자수(G)	명	%
	도말음성/배양음성 결핵환자 등록자수(H)	명	
5) 기타 치료성공률 (I/H)×100 (8점)	완치, 완료된 기타 결핵환자 수(I)	명	%
	기타 결핵환자 등록자수(J)	명	

〈서식6〉 결핵관리전담간호사 평가 방법

결핵관리전담간호사별 결핵환자 사례관리 평가 방법

- 각 영역별 평가방식 및 배점은 아래와 같음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 대한 평가
투 입	10점
과 정	40점
성 과	40점
결과 및 영향	10점
총 점	100점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평가

(1) 투입 10점

평 가지 표	평 가 기 준	점검사항
1)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참여(근무시작) 연도는 언제인가?	<input type="checkbox"/> ① 2009년(10점) <input type="checkbox"/> ② 2010년(7점) <input type="checkbox"/> ③ 2011년(5점) <input type="checkbox"/> ④ 2012년(3점)	병원별 채용현황

(2) 과정 40점

평 가지 표	평 가 기 준	점검사항
1)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별 결핵환자 추서관리 대상자 등록 수는 어떠한가? (10점)	<input type="checkbox"/> ① 50명 이하(3점) <input type="checkbox"/> ② 100명 이하(5점) <input type="checkbox"/> ③ 150명 이하(7점) <input type="checkbox"/> ④ 151~200명 이상(10점)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2) 병원별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몇 명인가? (질병코드) (10점)	<input type="checkbox"/> ① 10명 이하(3점) <input type="checkbox"/> ② 20명 이하(5점) <input type="checkbox"/> ③ 30명 이하(7점) <input type="checkbox"/> ④ 31~40명 이상(10점)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3)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별 결핵환자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수는 몇 명인가? (20점)	<input type="checkbox"/> ① 0명(0점) <input type="checkbox"/> ② 10명 이하(10점) <input type="checkbox"/> ③ 20명 이하(13점) <input type="checkbox"/> ④ 30명 이하(17점) <input type="checkbox"/> ⑤ 31~40명 이상(20점)	PPM 결핵환자사례 관리 시스템

(3) 성과 40점

평 가지 표	평 가 기 준	점검사항
1)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별 결핵환자 사례관리 제공 횟수는 어떠한가? (40점)	<input type="checkbox"/> ① 0회(0점) <input type="checkbox"/> ② 500회 이하(10점) <input type="checkbox"/> ③ 501-3000회 이하(20점) <input type="checkbox"/> ④ 3001-5000회 이하(30점) <input type="checkbox"/> ⑤ 5001회 이상(40점)	PPM 결핵환자사례관리 시스템

(4) 결과 10점

평 가지 표	평 가 기 준	점검사항
1)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별 결핵환자 사례관리 퇴록환자 중 완치, 완료환자 수는 몇 명인가? (10점)	<input type="checkbox"/> ① 5명 이하(3점) <input type="checkbox"/> ② 10명 이하(5점) <input type="checkbox"/> ③ 15명 이하(7점) <input type="checkbox"/> ④ 16-20명 이상(10점)	PPM 결핵환자사례관리 시스템

〈서식7〉 사업계획서 양식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수행 기관명					
사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		
	소속 부서		E-MAIL		
			FAX		
사업 협력기관					
예상 사업비	총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참여 인원수	면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 (개월)				
<p>위와 같이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장 서명 (인)</p>					
귀하					
<p>〈구비서류〉</p> <p>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p>					
<p>사업담당부서</p> <p>담당자 이름 : 연락처(Tel. , Fax.)</p> <p>사업수행기관 주소 :</p>					

성 과 지 표 요약

사업목표 ¹⁾	산출방법	목표수준	
		기준	목표치
1.		최근 3년간 실적 3년 평균치제시	
2.			
3.			
4.			

1) 성과지표 선정이유

그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

사업내용 \ 년도	추진성과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1.				
2.				
3.				
4.				

요 약 문 (1장 이내)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 (총 개월)		
사 업 내 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목 차(예시)

1. 본론	161
1.1 사업명	161
1.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61
1.3 사업내용 및 방법	161
1.4 사업성과 평가계획	161
1.5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161
2. 성과지표	161
3. 자원활용	162
4. 사업예산	162
4.1 자원조달	162
4.2 세부예산	162
5. 사업수행인력	163
6. 사업추진일정	163
7. 평가참고사항	164
7.1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164
7.2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	164
7.3 응모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164
7.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164

1. 본 론

1.1 사업명 : _____

1.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 응모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최종목표에 대하여 기술

1.3 사업내용 및 방법

- ※ 응모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1.4 사업성과 평가계획

- ※ 사업의 목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1.5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 기금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2. 성과지표

사업목표	전략·활동	목표수준		측정방법
		기준	목표치	

- ※ 성과지표 : 앞에서 작성한 사업목적, 내용·방법, 평가계획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목표 : 사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술하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함
(예, 00지역 청소년흡연률을 3%감소시킨다)
 - 전략과 활동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자원투입, 활동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 금연학교 정책을 개발한다. 금연관련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 기준 :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 전년도 실적 등의 근거를 제시
(예, 전국 청소년 흡연율 13.3%, 전년도 00지역 청소년흡연율 15%)
 - 목표치 :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예, 청소년 흡연율 12%)
 - 측정방법 :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예, 설문조사)

3. 자원활용 : 파트너십 구축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4. 사업예산

4.1 재원조달

구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액
		지방비	자체예산	기타	
금액(천원)					
백분율(%)					100

※ '기타'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하여야 함

4.2 세부예산

(1) 건강증진기금 산출내역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율(%)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집기비품비(자산취득비)			
행정지원비			
계			100

(2) 사업비 산출내역 설명

- (2)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은 건강증진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확보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 산출내역은 (1) 건강증진기금 산출내역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함
- 사업비 산정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기 바람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필요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
 - 건강증진기금지원 사업비 내에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와 세부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
 - 위탁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가능

5.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6. 사업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7. 평가참고 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나.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다.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

※ 개조식으로 기술(최근 3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실적지표 중심으로)
※ 응모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도 기술

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업계획서의 표지는 [붙임 제1호 서식]의 표지를 사용함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 단체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성과지표 요약과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제본하여 제출

〈서식8〉 최종보고서 양식

〈표지예시〉

〇〇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〇〇사업]

년도

발행기관명

※ 발행기관은 시·군·구와 사업기관명 및 로고를 동시에 기재함

2
0
0
0
년

0
0
최
종
보
고
서

사
업
기
관
명

본 책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목 차

1. ○○○사업 계획서
2. ○○○사업 최종보고서

※ 사업계획서는 원안을 첨부하고, 계획서와 최종보고서는 간지로 구분함

성 과 지 표 요약

사업목표 ¹⁾	산출방법	목표수준	
		기준	목표치
1.		최근 3년간 실적 3년 평균치제시	
2.			
3.			
4.			

1) 성과지표 선정이유

그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

사업내용 \ 년도	추진성과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1.				
2.				
3.				
4.				

요 약 문 (1장 이내)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 (총 개월)		
사 업 내 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및 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에 대한 달성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목 차(예시)

1. 본론	173
1.1 사업명	173
1.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73
1.3 사업내용 및 방법	173
1.4 최종실적	173
2. 성과지표	173
3. 자원활용	174
4. 사업비 집행실적	174
4.1 사업예산 변경내역	174
4.2 자원별 예산집행실적	174
4.3 세부집행실적	174
5. 사업수행인력	175
6. 사업의 유지가능성 및 확산전략	175
7. 붙임자료	176

1. 본 론

1.1 사업명 : _____

1.2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에 대하여 기술
- ※ 당초 계획서의 변경, 추가된 내용 기술. 중복이면 생략

1.3 사업내용 및 방법

-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 계획서의 진행된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기술. 중복이면 생략

1.4 최종실적

- ※ 사업내용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구체적 사업결과에 대해 기술

2. 성과지표

(1) 목표달성도

- ※ 당초 수립했던 목표에 대한 달성수준과 이에 대한 설명

(2) 평가방법 및 결과

- ※ 사업평가를 위해 사용된 방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성과지표

사업목표	전략·활동	목표수준		측정방법
		기준	목표치	

- ※ 성과지표 : 앞에서 작성한 사업목적, 내용·방법, 평가계획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목표 : 사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술하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함
(예, 00지역 청소년흡연률을 3%감소시킨다)
 - 전략과 활동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자원투입, 활동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 금연학교 정책을 개발한다. 금연관련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 기준 :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 전년도 실적 등의 근거를 제시
(예, 전국 청소년 흡연율 13.3%, 전년도 00지역 청소년흡연률 15%)
 - 목표치 :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예, 청소년 흡연율 12%)
 - 측정방법 :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예, 설문조사)

3. 자원활용 : 파트너십 구축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4. 사업비 집행실적

4.1 사업예산 변경내역

- 변경사유
- 변경사항
- 변경승인

4.2 재원별 예산집행실적

구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액
		지방비	자체예산	기타	
금액(천원)					
백분율(%)					100

※ '기타'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하여야 함

4.3 세부 집행실적

(1) 건강증진기금 집행실적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율(%)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지원비			
계			100

(2) 사업비 산출내역 설명

- ‘(2) 기타 예산 집행실적’은 건강증진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며, 확보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함. 산출내역은 ‘(1) 건강증진기금 집행실적’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건강증진기금지원 사업비 내에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와 세부사업별 세부 집행실적을 별도로 작성
 - 위탁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가능

5. 사업수행 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6. 사업의 유지가능성 및 확산전략

- ※ 금지원이 종결된 후에 해당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속 및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 및 전망을 기술
- ※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7. 붙임자료

※ 사업수행에 사용되었던 매체, 자료, 홍보물, 사진, 편지 등의 복사본을 포함

※ 실적보고서 작성요령

- 실적보고서는 주관사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실적보고서의 표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지를 사용함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 단체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사업의 종합적 사업관리 및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성과지표 요약’과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요약문은 사업주관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의 요약문만 제출함
- 실적보고서는 해당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한 평가목적 뿐 아니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실적보고서 작성에 특히 유의바람
- 실적보고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사업별로 작성해야 하며, 한 단체에서 2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실적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함. 단, 주관사업수행기관에서 여러 협동사업기관과 같이 수행한 사업인 경우에는 단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함
- 반드시 좌철 본드제분하여 제출할 것
-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여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9〉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개정 2007.12.31〉

서 약 서

본인은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로서 귀소관 비밀을 열람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

1. 열람(취급)한 비밀의 모든 부분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비밀을 열람(취급)함으로써 지득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관련 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20 . . .

서약자 (외국인일 때는 국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소속, 행위)

좌수무인	주민등록번호	우수무인
	성명 인	
서약집행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서식10〉 강사카드

강 사 카 드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사무실		휴대폰	
이 메 일				
주 소				
소 속 · 직 위				
계 좌 번 호				
주 요 경 력 및 학 력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인)

〈서식11〉 사업비 교부 신청서

()년 ()반기 국민건강증진기금 교부신청서

1. 신청기관 :
2. 주 소 :
3.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
 -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내용 등
4. ()반기 신청금액 :
5. 사업기간 :

상기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귀하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월별 자금소요계획서

년 월

기관명 : 000

()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명 기재)월별 소요내역서

(단위 : 천원)

세세목	예산액	월별 소요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1월	2월	3월	계	4월	5월	6월	계	7월	8월	9월	계	10월	11월	12월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지원비																			
000																			
000																			
000																			
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명 기재)월별 소요내역서 90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명 기재)월별 소요내역서 70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명 기재)월별 소요내역서 80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명 기재)월별 소요내역서 10

〈서식11-3〉

()년도 ○반기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명 기재) 교부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년 예산	()년 교부 누계	○반기 교부신청	○반기 교부 후 잔액	비 고

<서식11-4>

()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명○○○)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사본 첨부)

〈서식12〉 상반기 집행현황 보고서식

()년 상반기 국민건강증진기금
0000(사업명) 정산보고서

- 사업기관 :
 주 소 :
 정산내용

배정액	() 집행액		집행잔액
	소계	1분기	

(단위 : 원)

() 정산내역을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기관 :

책 임 자 : (인)

귀하

〈서식13〉 정산보고서 서식

()년 국민건강증진기금
0000(사업명) 정산보고서

- 사업기관 :
- 주 소 :
- 정산내용

예산액	() 집행액			이지역	반납액
	소계	상반기	하반기		

(단위 : 원)

()년 정산내역을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기관 : _____
책 임 자 : _____ (인)

귀하

〈서식13-2〉 정산보고서 서식

()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명) 세부 집행내역 (예시)

(단위: 원)

항 목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집행잔액 (C)	집행율 (D)
			소계(B)	상반기	하반기		
인건비	인건비						
	부담금						
	소계						
일반 수용비	자료제작 및 인쇄비						
	회의참석비						
	소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임차료 및 관리비						
	일반관리비	소계					
○○○	○○○						
	○○○						
	○○○						
	소계						
전체 총액							

※ 각 항목은 산출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산현액(A) : 예산액 + 예산 변경 등을 통한 증감액

집행액 소계(B) : 원인행위(실제 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계획으로 잡아놓은 예산 포함)로 집행한 예산액

집행잔액(C) : 총액(A)-집행액(B)

집행율(D) : 총액(A)을 기준으로 집행현황(%)

각 항목 명

총액 : _____ 원


세부항목	사용일	지급처 (상호)	금액
	소계		
	소계		
	소계		
	소계		

* 각 세세목에 해당된 집행금액을 작성

<비 고>

영수증 별첨

기타 참고사항 등 기록해야할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각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서식14〉 예산변경승인요청

사업계획변경요청서(예시)

- 사업명 :
- 사업기관(사업책임자) :
- 변경사유 : 1.
- 2.
- 3.

- 변경사항
- 가. 사업 내용

비목명	변경 전 프로그램	변경 후 프로그램	변경 사유 및 검토의견
계			

나. 예산 내역

- 총괄 사업비 내역 (변경 전·후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지원비					
총 계					

※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변경요청 사항을 작성함

• 변경 후 산출근거

구분	비목	금 액	구성비 (%)
1. 인건비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원 × 0명 × 0개 =	원
	소 계		원
2. 일반수용비	회의참석비	원 × 0명 × 0회 =	원
	자료제작및인쇄비	=	원
	사무용품구입비	=	원
	안내·홍보물등제작비	=	원
	각종수수료및사용료	=	원
	비품수선비	=	원
	소 계		원
3. 공공요금	공공요금	원 × 0월 =	원
	소 계		원
4. 기타운영비	강사료	원 × 0명 × 0회 =	원
	소 계		원
5. 여비	출장비	원 × 0명 × 0회 =	원
	소 계		원
6. 업무추진비	회의경비	원 × 0명 × 0회 =	원
	교육진행경비	=	원
	소 계		원
7. 행정지원비	행정지원비	=	원
	소 계		원
		=	원
	소 계		원
총	계		원

〈서식15〉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시내출장비(교통비)사용대장

년 월분		날짜	시간	목적	목적지	소요금액	사용자
년	월						
총 계							

년 월 일
 책임자 : (인)

10 문흥 도시관리위원회(보통위원회) 간담
 20 의정부시도시관리위원회(보통위원회) 간담
 30 결핵관리사업추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보통위원회) 간담
 40 의정부시도시관리위원회(보통위원회) 간담
 50 결핵관리사업추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보통위원회) 간담

〈서식16〉 카드·현금 사용 영수증 양식

예시) 회의경비 사용 영수증

- 회 의 명 :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석인원 :
- 사용경비총액 : 원

※ 관련 영수증 첨부란

〈서식17〉방명록

‘0000’ (회의명)

년 월 일()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서명	비고
1							
2							내부위원
3							
4							
5							외부위원
6							

물품취득 및 처분계획

□ 물품취득(50만원 이상)

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구매시기	사용장소 (지역/장소)	사유	비고 (기금/비기금)

□ 물품취득(50만원 미만)

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구매시기	사용장소 (지역/장소)	사유	비고 (기금/비기금)

□ 물품처분

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구매시기	사용장소 (지역/장소)	사유	비고 (기금/비기금)

〈카드19〉인력 교체시 회신자료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변경사항 보고〉

병원명 :

-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 1) 변경전 간호사

– 성명 :

– 퇴사일(근무종료일) : 년 월 일

- 2) 변경 후 간호사

– 성명 :

– 사무실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핸드폰 :

– 이메일 :

– 소속과 :

– 계약형태 : 정규직 / 계약직

년 월 일

귀하

〈서식20〉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요청서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요청서

수신 : 보건소 소장 귀하

발신 : 병원

귀 보건소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님이 저희 병원에서 결핵으로 치료 중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치료 실패 또는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 위험성이 있어 보고 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핵환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 의사	이름	핸드폰		이메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이름	핸드폰		이메일		
치료 비순응 환자 관리 의뢰 사유						
의뢰 날짜	년		월	일		

〈서식21〉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결과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결과

수신 : _____ 병원 결핵진료의사 귀하

발신 : _____ 보건소

귀 의료기관에서 요청하신 비순응 결핵환자의 조치사항을 회신하오니 환자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름		핸드폰		이메일	
결핵 담당자	이름		핸드폰		이메일	
회신 날짜	년 월 일					

〈서식22〉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501호, 2012.1.6,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滞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지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0]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9>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

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목개정 2011.2.9]

제2장 운 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 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附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합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합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4조 삭제 <2007.11.13>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3장 일반·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반·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반(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 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키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③ 일반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10.11.10]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반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반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목개정 2011.2.9]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4장 / 5장 생략

제6장 보칙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0]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0]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10]

부 칙 〈제23501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1 제1호라목(교육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가목, 별표 2 비고, 별표 4 비고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2.1.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 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 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2.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고 :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9] <개정 2012.1.6>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출장자 운임산출내역〉

출장자운임산출내역 관련

□ 출장자 운임산출내역

작성항목	작성협조사항
출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자 전원이 동일기간, 동일지역으로 출장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자 성명과 인원수 기재 (예시 : 연세대산학협력단 홍길동외 ○명) • 출장자별 출장기간 및 지역이 다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기재
출장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단의 예시참조)
도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기간 중 당일 숙박하는 곳을 기준으로 작성
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으로 기재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한 이용운송수단 및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작성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기간 지역이 동일할 경우 선임자 외 출장자 일괄작성 - 예시참조 • 출장기간 및 지역이 각각 다른 경우 개별작성 - 예시참조

〈출장기관과 지역이 동일한 경우〉

출장자 윤임산출내역서(예시)

출장자		출장일자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종별	등 급	산출금액(1인기준)	
직급	성 명							단가	지급액(원)
책임연구원	홍길동외3명	'00.00.00	서울	대구	포항	철도 자동차	새마을보통(서울-대구) 시외버스(대구-포항)	23,700 5,500	29,200
		'00.00.00		체류					
		'00.00.00	포항	밀양	부산	자동차	시외버스(포항-부산)		5,000
		'00.00.00	부산	제주	제주	항공기	할인요금적용(10%)		87,600
		'00.00.00		체류					
		'00.00.00	제주	부산	부산	항공기	할인요금적용(10%)		21,100
		'00.00.00	부산	통영	서울	자동차	시외버스(부산-통영) 고속버스(통영-서울)	6,500 17,500	24,000
								소 계	166,900
								총 계	166,900×4 = 667,600원
									667,600

〈출장기관 및 지역이 다른 경우〉

출장자 운임산출내역서(예시)

출장자		출장일자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종별	등 급	산출금액(1인기준)	
직급	성 명							단가	지급액(원)
이사관	홍길동외1명	'00.00.00	서울		목포	철도	새마을특실	35,700	35,700
		'00.00.00		체류					
		'00.00.00	목포	광주	서울	지동차 철도	고속버스(목포-광주) 새마을특실(광주-서울)	9,700 13,500	23,200
								소계	58,900 = 117,800원
선임연구원	김복순	'00.00.00	서울		울산	지동차	고속버스	15,200	15,200
		'00.00.00	울산		서울	지동차	고속버스	15,200	15,200
								소계	30,400
보건사무관	홍길동외2명	'00.00.00	서울	군산	대구	지동차 지동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10,200 7,800	18,000
		'00.00.00	대구		천안	철도	새마을보통	5,000	5,000
		'00.00.00	천안		서울	철도	새마을보통	3,000	3,000
								소계	26,000 =78,000원
								총계	226,200원

〈참고1〉 환자 등록 및 퇴록 구분

■ 환자 등록 구분

- 1) 신환자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 2) 재발자
과거 결핵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3) 초치료 실패자
과거 치료에 실패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 4) 중단 후 재등록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중단한 자
- 5) 전입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온 환자
- 6) 만성배균자
재치료(2차 항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 양성인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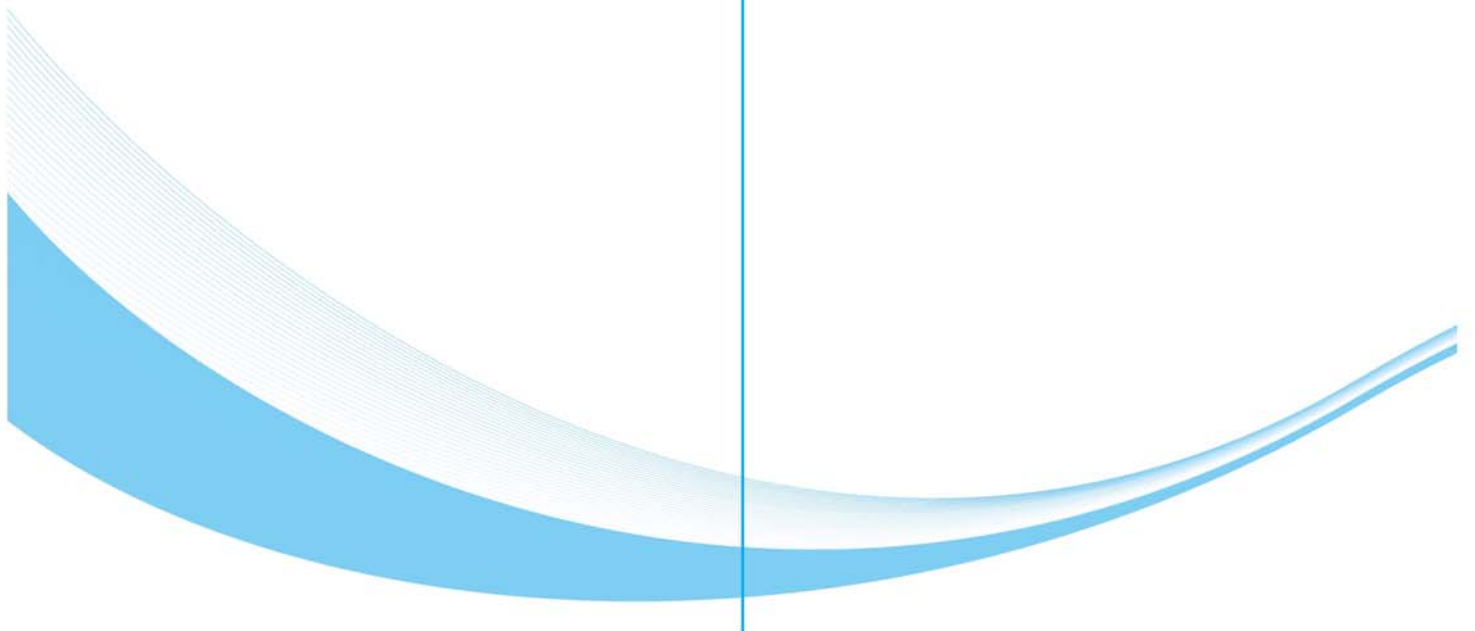
■ 환자 퇴록구분(결핵 초치료 치료결과의 정의)

- 1) 완치
치료 종결 후(마지막 달) 시행한 객담 배양이 음성이며 그 전에 한번이상 배양이 음성이었던 경우
- 2) 완료
치료를 완료하였지만, 치료 종결 후(마지막 달)의 객담 도말 및 배양 음성 결과가 없거나 그전에 한 번 이상 도말 및 배양 음성 결과가 없을 때
- 3) 실패
치료 4개월 후 또는 그 이후 시행한 배양이 양성인 경우
또는 치료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
- 4) 사망
어떤 이유론든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 5) 치료중단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
- 6) 전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 7) 진단변경
타 질환으로 진단이 변경된 경우
-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결과 및 배양에서 2회 이상 비결핵항산균이 판정되면 진단변경으로 퇴록시키고 전문 기관에 의뢰
※ 치료성공 : 완치 혹은 완료된 경우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사업

○ Contents

○ 주요변경내용	213
○ 1. 개요	214
○ 2. 사업추진체계	215
○ 3. 사업내용	217
● 가. 입원명령 지원	217
● 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226
● 다. 입원명령해제 이후 지원	228
○ 부록. 서식	231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2년	2013년
입원명령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성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 •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료한 담당의사 판단에 의해 입원명령을 실시함 :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객담 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환자가구), 500%미만(부양의무자가구)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환자가구)인 경우
약제비(환자본인 부담 항결핵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입원명령 실시 후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1년(입원명령해제환자의 DOT(직접복약확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 입원명령 실시 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최대 2년(입원명령 해제 후 복약확인 실시를 통해 지원) · 처방일~1년 : 무조건 지원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처방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추가 1년 지원
입원명령 해제 후 지원(복약확인 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방문 직접복약확인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마산, 목포, 서북병원 입원환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일부 대상자에 한함 • 디지털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일부 대상자에 한함



개요

가. 사업 목적

-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 및 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등 격리를 통한 타인에게 결핵균 전파방지 및 치료성공률 제고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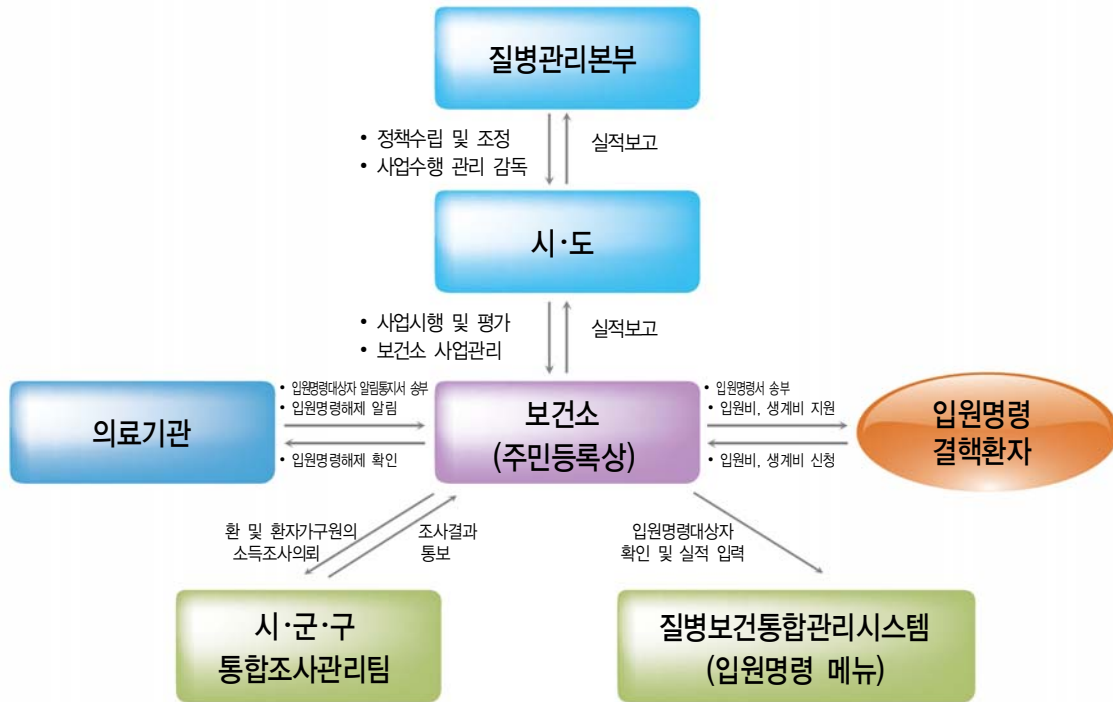
나. 사업 목표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해 85%까지 입원명령 실시
- 입원명령을 통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균 음전 시까지 반드시 100% 격리 조치하여 철저하게 치료 및 관리

다. 추진경과

2006. 09	결핵퇴치 2030계획 수립 -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순응도 제고(약제비 지원)
2008. 03. 19	결핵퇴치 2030 Revision 수립('08.3.19) -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치료 비순응자 수용 격리 치료) - 다제내성결핵환자 격리치료 지정전문병원 운영 및 진료비 지원
2010. 01. 1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10.1.18) - 감염병환자의 입원통지
2010. 01. 25	결핵예방법 개정('10.1.25) - 입원명령대상,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결핵 치료 비용 지원
2010. 08. 23	결핵조기퇴치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2010. 12. 31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예산 확보
2011. 04. 01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시행
2011. 04. 19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관련 고시 제정 - 부양가족생활보호조치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2011. 11	입원명령환자의 비급여 지원 비용 추가 지원 - 입원명령·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의 '비급여 2차 항결핵제 추가지원' 시행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상급병실차액료 추가 지원
2012. 04	입원명령해제환자의 비급여 항결핵제 직접복약확인 시행
2012. 10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관련 고시 개정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급 기준 완화(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삭제)
2012. 12	입원명령환자의 비급여 항결핵제 지원 기간 확대 계획 수립(최대1년→최대 2년)

가. 사업수행체계도



나.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 예산편성 및 기술 지원
- 사업 평가 모니터링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도

- 시·군·구의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홍보
- 시·군·구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예산 집행 결과 보고 포함)
-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시·군·구 기술 지원

●● 시·군·구

-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조정
- 입원명령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해제 이후 지원

●● 의료기관

- 입원명령 대상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 입원명령환자 치료 및 관리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보건소에서 요청한 입원명령결핵환자에 관한(본인 및 환자가구) 소득 조회 및 결과 알림



사업내용

가. 입원명령 지원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 진단기준 : 신속내성검사 또는 약제감수성검사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객담 균 양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 ☞ 입원명령 실시에 필요한 객담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
- 객담도말검사(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 객담배양검사(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
 - ※ 단, 항결핵제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객담배양검사를 입원명령 실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까지 인정함
 - * 객담검사는 객담검사 시행일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 미성년자녀는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
 -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지원 기간

- 입원명령으로 입원치료한 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해제 시까지

●● 지원 범위

■ 입원비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입원비 지원금액 표 참조)
 - 지원 항목
 - 투약 및 조제료
 - 식대
 - 주사료
 - 선택진료비
 - 균 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 제증명료
 - 상급병실 차액료
 - 비급여 지원항목으로 연간지원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지원 초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서식 13)를 제출받아 확인 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 입원명령기간동안 병실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 ✓ 장기입원으로 인해 비급여 연간 지원상한선을 초과하여 상급병실차액료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 지원 금액〉

구 분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 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주사료, 선택진료비,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 전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 만성배균자의 정의

- 다제내성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 환자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 금액 : 전액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는 최대 70,000원/일까지 지원
 - 지원 조건 :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치료를 실시한 결핵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로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된 경우
 -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환자
 - 퀴놀론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그 외 아래와 같은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심사 후 지원 대상 결정
 - 지속적인 도말 및 배양에서 양성결과로 인해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 약제 부작용 등으로 항결핵 치료제 1~4군* 까지의 약제로는 처방하기 어려운 경우
- * 결핵진료지침(초판) p48 참고(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지침의 분류기준)

■ 간병비

- 지원 대상
 - 치매 환자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²⁾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중풍·고령 등으로 해당 보건소장 또는 담당간호사가 거동불편자로 인정한 자
- 지원 금액
 - :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일 단위 지급 가능)
-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의 제출서류 확인 후 간병비 지급

지원대상자	치매 환자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중풍·고령 등 기타 환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1급 등록증 사본 ■ 뇌병변장애1급 등록증 사본 ■ 장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우보증서³⁾(서식 8) ※ 중풍환자는 병원진단서와 함께 제출

■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보호자 식대 등
- 입원명령 기간 외 소요되는 검사비 및 치료비
 - ※ 의료기관의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 송부일 이전 입원비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입원명령기간 중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검사비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 ※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확인하여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제외하여 지원함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2)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기준

3) 인우보증서 : 사회복지사, 보건소장이 세울 수 있으며, 인우보증인은 2명은 되어야 하고, 인우보증인의 등본 첨부하여야 함(서식 8)

●● 의료기관의 역할

1) 입원명령대상자 알림

-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대상자 발생 시 즉시 입원명령대상자알림통지서(서식 1)를 작성하여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입원명령대상자 통보
 - 해당 검사결과지(결핵균 양성 및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 첨부하여 송부
-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제내성결핵'으로 신고된 환자의 객담검사 및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를 확인 요청 시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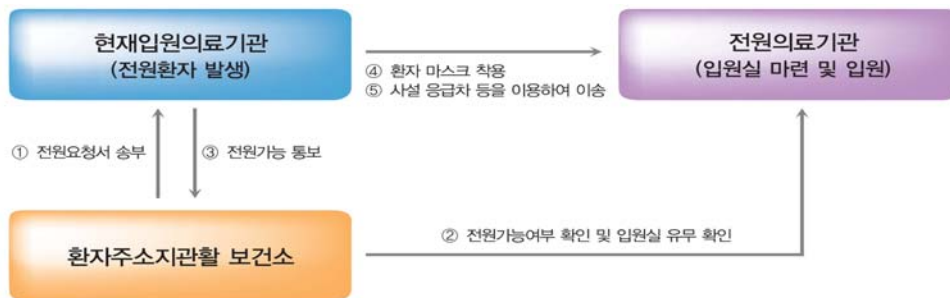
☞ 입원명령환자의 입원 의료기관 선정

- 환자가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에 입원을 원할 경우 해당 병원에 우선 입원조치
 - 단,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입원실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입원 가능한 입원실이 있는 타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입원명령 의료기관으로 선정
- 만성배균자
 - 국·공립의료기관에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병상 유무확인 후 입원명령 의료기관으로 선정
 - 1순위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 2순위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
 - ※ 입원명령대상자가 타 의료기관에 입원 시 사설 응급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며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

2)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치료 및 관리

2-1) 입원명령기간 중 전원 요청

- 입원명령환자가 입원 치료 중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전원요청서(서식 4)를 송부
 - 입원명령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동안 '만성배균자'로 전환된 경우
 - 그 외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어려운 사유(합병증 및 장기입원 등)가 발생한 경우
- 보건소 결핵담당자로부터 입원명령환자의 전원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 타 의료기관 전원 시 사설 응급차량 이용 가능
 - 전원 및 환자 이송 시 응급차량 사용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입원명령환자의 비급여 연간 지원금액과 별도 지원(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예산 활용)



[입원명령환자 전원 절차]

2-2)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지원대상자 심사요청

-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을 위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심사 요청
 - ‘지원 범위’의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조건 확인(p. 218)

☞ 심사방법

- 의료기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약제비 지원대상 심사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심사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심사 요청
 - 1차 :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원명령환자의 심사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심사
 - 2차 : 결핵 진료 및 치료 소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해당 건에 대해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약제비를 지원함
- ※ 심사 서류
 - 결핵환자 관리표(서식 7) 각 1부 : 입원명령환자의 입원치료 의료기관에서 작성
 - 객담도말/배양/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 각 1부
 - 의사소견서 각 1부 : 치료 경과, 향후 치료 계획 등
 - 심사 요청에 필요한 의무기록사본 각 1부 : 약제에 대한 처방 내역 등
 - 약제부작용과 증상 악화 등과 관련된 검사결과지 또는 타과 협의 진료 복사본 각 1부 : 해당자 한함

3) 입원명령해제 알림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균음전 확인 시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입원명령해제알림통지서(서식 6) 송부
 - 입원명령환자의 균 음전된 결핵균 검사결과 및 의사 소견 등 작성

〈입원명령해제 기준〉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최소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 및 객담배양검사 1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했을 때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최소한 2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 객담도말검사 연속 3회 이상 음성결과가 확인되고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충분히 감소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 객담검사 실시 기준

- 결핵 치료 중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입원명령 실시 후 객담도말검사와 객담배양검사는 최소 월 1회 이상 시행해야함
 - : 첫 음성결과 확인 시 최소 8~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 확인함
 - ※ 객담배양검사 : 액체배지·고체배지 결과 모두 인정

●●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신청

■ 입원비

-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단, 해당 입원비 지급은 입원명령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목적
 - 동 사업이 진료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이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입원비를 신청하도록 함
 - 적용대상
 - 입원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 활용 절차
 - 1) 입원명령결핵환자는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사항을 의료기관에 요청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2) 의료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입원비 중 결핵치료 관련 입원비를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선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후 잔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청구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 3) 보건소는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입원비 지급을 보증
-
- 신청 장소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입원비는 1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함
 -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료기관) 신청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⁴⁾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비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 입원기간동안의 환자 입원비 영수증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p>* 해당자 한함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로 민원인이 제출치 않도록 함</p>		

※ 매월 신청할 경우 동일한 서류는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가능

☞ 신청 구비서류 관련 참고사항

- 입원비지원신청서 1부(서식 9 또는 서식 10)
-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원본 1부(서식 14)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
 단,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결핵 치료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를 제출
 - 간이 영수증(수기용)은 인정하지 않음
- 입원기간동안의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1부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 원내 처방내역 확인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의 진료내역 확인
 ※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으로 반드시 제외
-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객담 도말/배양 검사결과지
 - 입원 중 중간정산 시 : 입원명령 실시 후 입원치료 중에 검사한 결핵균검사결과지
 - 입원명령 해제 후 정산 시 : 입원명령 해제 기준에 맞는 최종 균음전 검사결과지
 - 약제감수성검사 및 신속내성검사 결과지(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4) 보호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원명령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장구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최초 신청 시, 서식 15)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제출 생략
 - 보건소의 사업담당자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출력하여 첨부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 약제비(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단, 해당 약제비 지급은 입원명령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약제비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

☞ 약제비 지급보증제

- 적용대상
 - 약제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 신청 방법
 - 약국
 -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및 입원의료기관에 입원명령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원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Fax 신청 가능)
 - 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입원비 신청 절차와 동일

- 신청 장소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약제비는 1개월 단위 지원 신청
 -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 가능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시	약제비 지급보증제(약국 및 의료기관) 신청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⁵⁾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비 지원신청서(약국 및 의료기관용) 1부 ■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p>* 해당자 한함 **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로 민원인이 제출치 않도록 함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함(약국 신청 시)</p>		

※ 매월 신청할 경우 동일한 서류는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가능

☞ 신청 구비서류 관련 참고사항

- 약제비지원신청서 1부(서식 11 또는 서식 12)
- 처방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의사소견서 1부
 - ※ 약국 신청 시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첨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객담 도말/배양 검사결과지
 - 입원 중 신청 시
 - : 입원명령 실시 후 입원치료 중에 검사한 결핵균검사결과지
 - 입원명령해제 후 신청 시
 - : 지원 신청 시점의 최근 1개월 이내 결핵균 검사결과지로 이전 신청 시 사용한 검사결과지 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 약제감수성검사 및 신속내성검사 결과지(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
 - ※ 약국 신청 시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및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첨부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최초 신청 시, 서식 75)

5) 보호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원명령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장구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제출 생략
 - 보건소의 사업담당자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출력하여 첨부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6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



나.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 대상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 * 환자가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관할보건소로 문의

< 201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 저 생 계 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환자가구(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 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원)

-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생계지원)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 기간

- 입원명령으로 입원치료를 한 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해제 시까지

●● 지원 범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구 내 입원명령결핵환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를 의미함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한금 급여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 (8인 가구 2,202,994원)

※ 일 단위 계산 가능(30일 기준)

〈예시〉 입원명령결핵환자의 환자가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일할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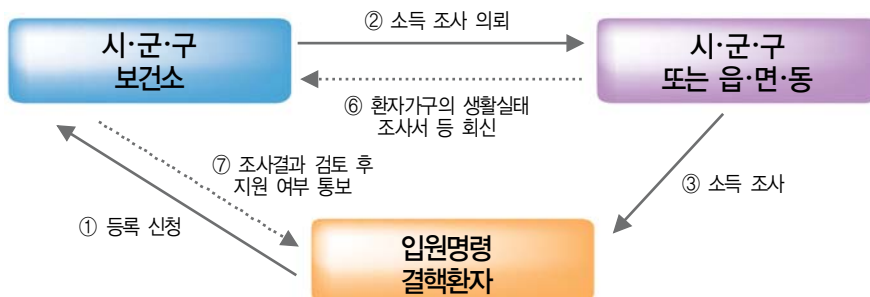
· 1인(10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468,453원)/30×10일} 생계비는 156,151원임

· 3인(15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1,031,862원)/30×15일} 생계비는 515,931원임

· 8인(15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2,202,994원)/30×15일} 생계비는 1,101,497원임

●● 지원 절차

- 입원명령환자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소득조사 의뢰 대상자 확인,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조사 의뢰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보건소로 소득조사결과서 송부
- 보건소는 소득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입원명령환자에게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가능여부 통보
- 보건소는 입원명령환자에게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 신청

■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 단, 해당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급은 입원명령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입원명령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1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
 -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 가능
 -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관할보건소에 문의

다. 입원명령해제 이후 지원

●● 지원 대상

- 입원명령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지원받아 복용한 입원명령해제환자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등)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 지원 기간

- 입원명령 해제 이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남은 지원 기간
 -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는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제기간 포함) 지원
 - 처방일~1년 : 무조건 지원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처방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1년 추가 지원

●● 지원 범위

-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 조건 :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
 - 지원 금액 : 전액지원(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보험 항결핵제)
 - ※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는 최대 70,000원/일 까지 지원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5천원/일)
 - ※ 기타 다른 복약확인 실시 환자에 대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복약확인 방법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입원명령해제환자가 보건소로 매일 방문하여 담당 결핵관리요원이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여부를 직접 확인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입원명령해제 후 부작용 및 타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재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동안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 여부 직접 확인
- 디지털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 거동불편자(고령, 노약자 등), 학생, 직장인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함
 - 디지털 복약기 복약확인(Digital DOT, D-DOT)
 - 디지털 복약기를 환자의 가정에 설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복약기에서 약을 꺼내어 복용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치료받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요원에게 전송하는 간접적인 복약확인 방법
 - 제한 사항 : 환자의 가정에 인터넷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모바일 복약확인(Mobile DOT, M-DOT)
 -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복약확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요원에게 전송하는 간접적인 복약확인 방법
 - 제한 사항 : 환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복약확인 절차

■ 환자 내원 직접복약확인(보건소 내원)

-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도록 함

■ 의료기관 입원 직접복약확인

: 입원명령해제 후 부작용 및 타 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해당 입원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입원의료기관에서 직접복약확인치료를 실시함
 ※ 단,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약제비를 제외한 입원비(기타 진료비 포함)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의료기관
 - 환자의 처방 약제 보관 및 관리
 - 단, 입원명령해제환자의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 시
 - 의료기관에서는 퇴원 시점까지의 복용 및 투여한 약을 제외하고 남은 약의 개수를 환자에게 확인시키고,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서식 17)에 환자의 서명을 받음
 - 남은 약은 반드시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 반납
 - ※ 보건소 남은 약제 반납 시 배송 비용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부담(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예산 활용)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직접복약확인 실시
 - 의료기관은 매일 환자의 복약확인 및 주사 항결핵제 투여
 -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을 작성하여 매월(입원치료기간동안)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로 송부(환자, 의료기관 담당자 서명)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 입원명령해제 이후 입원치료기간 동안 직접복약확인 실시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획득
 - 입원 치료 의료기관으로부터 매월(입원치료기간동안) 의료기관 직접복약확인 확인증을 받아 약제비 지급

■ 디지털 복약기 및 모바일 복약확인

-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환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도록 함

●● 지원 신청

- 입원명령 해제 이후 약제비 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가. 입원명령 지원' 중 약제비 지원 신청과 동일함



관련 서식

<서식 1> 입원명령대상자 알림 통지서

입원명령대상자 알림 통지서						
입원명령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진단코드			최근 결핵균 검사결과	도말	20__ . .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배양	20__ . . <input type="checkbox"/> 양성 <input type="checkbox"/> 음성
					약제감수성검사 결과	20__ .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과거력여부	과거결핵치료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기저질환 여부	<input type="checkbox"/> 규폐증 <input type="checkbox"/> 위·장절제 등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만성신부전증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HIV <input type="checkbox"/> 알콜중독 <input type="checkbox"/> 스테로이드복용 <input type="checkbox"/> 면역억제제복용(TNF- α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입원명령 대상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입원 시 객담 도말 또는 배양 양성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진료 당시 객담 도말 또는 배양 검사가 양성인 경우 (의사소견)					
해당의료 기관입원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입원가능일: _____)		국공립병원입원필 요성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불가능 사유: _____)			(필요사유: _____)		
입원명령 대상자알림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위 환자가 입원명령 대상자임을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 결핵담당자에게 알립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담당의사 : _____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_____						

※ 1. 입원명령대상자의 결핵균양성검사지를 함께 첨부하여 환자의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송부
 2. 최근검사결과지 : 객담도말검사/ 객담배양검사/ 약제감수성검사

〈서식 2〉 입원명령서

입원명령서			
성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입원장소	(시설명)	입원일	
	(주소)	기 간	~
<p>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p> <p>※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p>			

※ 기간작성 예시 : 실제 입원일 ~ 균음전 확인 시까지(전염력 소실 판정 시까지)

〈서식 3〉 입원명령 안내문(예시)

입원명령결핵환자 안내문
<p>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입원을 통한 결핵치료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결핵감염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는 입원명령을 받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로부터 결핵균이 음전될 때까지 일정기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국가에서는 입원치료기간동안 발생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비 및 약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결핵 이외의 타과질환에 대한 입원비 본인부담금 제외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전액지원(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및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 급여의 전액본인부담 항결핵제 및 비보험 항결핵제 ○ 부양가족생활보호비(해당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 일정 소득이 확인되고 · 환자가구의 소득수준이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미만인 경우 <p>를 지원해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입원비 및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40px;">_____보건소 담당자_____</p> <p>전화 _____</p> <p>팩스 _____</p>

- 임원명령 안내문 첨부(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 -

구분	입원비 지원	약제비 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명령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명령을 받고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임원명령결핵환자 - 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및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명령을 받은 일정 소득 이하 결핵환자 (자세한 지원대상자 기준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문의)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장소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월 단위로 신청(필요시 분기별 신청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기간동안의 진료비 영수증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임원기간동안의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 ■ 입원비지원신청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비지원신청서 1부 ■ 처방약제비영수증 1부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신청서 1부 ■ 소득 관련 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신고서 · 소득 정보 확인 동의서 · 소득 확인 서류(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1부 ■ 결핵균검사 결과지 1부(객담도말 및 배양 검사 결과지, 약제감수성 결과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⁶⁾ 1부(해당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1부 		

6) 보호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임원명령대상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징구

구분	입원비 지원	약제비 지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원 금액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다체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td> <td>다체내성 결핵이 아닌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 이외</td> </tr> <tr> <td>금액</td> <td>전액 지원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제외)</td> <td>전액 지원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제외)</td> </tr> <tr> <td>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td> <td>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td> <td>연간 100만원 연간 100만원</td> </tr> <tr> <td>비급여 지원항목</td> <td>투약 및 조제료 식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여료, 군용인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재응양료 등 ※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td> <td></td> </tr> </table> <p>※ 단, 상급병실차여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비급여 초 과비용 추가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관할보건 소에서 확인 후 추가 지원함</p>	구분	다체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	다체내성 결핵이 아닌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 이외	금액	전액 지원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제외)	전액 지원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여료, 군용인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재응양료 등 ※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전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금액 (원/월) <table border="1"> <tr> <td>1인</td> <td>2인</td> <td>3인</td> <td>4인</td> <td>5인</td> <td>6인</td> <td>7인</td> </tr> <tr> <td>468,463</td> <td>797,636</td> <td>1,031,862</td> <td>1,266,089</td> <td>1,500,315</td> <td>1,734,541</td> <td>1,968,768</td> </tr> </table> <p>※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한도 금액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마다 234,226원씩 증가 (8인 가구 2,202,994원) ※ 일 단위 계산 가능(30일 기준) (예시) 입원명령 결정환자의 환자구원수에 따른 생계비 산출방법 (일월계산) · 1인(10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468,463원)/30] X 10 일 생계비는 156,151원임 · 3인(15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1,031,862원)/30 X 15일] 생계비는 515,931원임 · 8인(15일지원):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2,202,994원)/30 X 15일] 생계비는 1,101,497원임</p>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68,46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구분	다체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	다체내성 결핵이 아닌 호흡기 결핵환자 만성폐렴자 이외																											
금액	전액 지원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제외)	전액 지원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여료, 군용인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재응양료 등 ※ 잔액 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68,46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명령 실시 후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 일로부터 최대 2년(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 제기간 포함)까지 ※ 단, 입원명령해제 이후는 환자본인부담 항결 핵제 복용확인 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지원활동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익는 주민 등록관할보건소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실제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실제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서식 8〉 인우보증서(예시)

인 우 보 증 서

본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 보 증 사 항 -

위 _____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필요로 합니다.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20__년 월 일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 인우보증서 : 담당간호사, 보건소장, 보건소 결핵담당자가 세울 수 있으며, 인우보증인은 2명은 되어야 하고, 인우보증인의 등본 첨부하여야 함

〈서식 10〉 입원비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입원비지원신청서 (의료기관용)								
□ 신규 □ 기존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진단 코드			연락처	Tel :			
	주 소							
신청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지원 대상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2종/ □ 특례 중/ □ 차상위 중)						□ 해당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종별	□ 직장 □ 지역				
후원여부	긴급의료비 등 국가지원여부	□ 없음 □ 있음(기관 :		. 금액 :)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내용 :		. 금액 :)				
	환급금 수령여부	□ 없음 □ 있음(진료기간 :		. 금액 :)				
환급·환수 안내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입원기간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재신청 입원비	총입원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지원 (A1+C1)	비지원 (A2+C2)	법정부담금(A)		보험자부담금 (B)	지원(C1)	비지원(C2)
				지원(A1)	비지원(A2)			
위와 같이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 의료기관 장 :		(직인)				
보건소장 귀하								
처리 절차								
입원명령을 실시한 의료기관 지원 신청 →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 입원비 지급								
의료기관 제출 서류								
1.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입금통장사본								

※ 입원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자

〈서식 14〉 입원비 영수증(예시)

□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③)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필수 항목	진찰료		진료비 총액 ⑤(①+②+③+④)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환자부담 총액 ⑥(①+④)		
	주사료				
	마취료		이미 납부한 금액 ⑦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수납금액 (⑥-⑦)	카드	
	치료재료대			현금영수증	
정액수가(요양병원)		현금			
전액본인부담		합계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정신요법료			신분확인번호		
CT 진단료					
MRI 진단료			현금승인번호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보철·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포괄수가진료비					
계		④			
본인부담금	①	-			
상한액초과금	②	-			
공단부담금	③	-			
요양기관종류	□의원급·보건기관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서식 제6호

〈서식 1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p>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결핵균검사 및 치료결과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환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본인의 입원명령결핵환자 관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_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인 : _____(서명 또는 인) 확인자 기관명 : _____ 성 명 : _____(서명 또는 인)</p>			
<p>〈개인정보취급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등 - 입원명령결핵환자 관리정보 : 결핵균검사결과(객담도말, 배양, 약제감수성검사 등), 기타 검사, 치료결과가 포함된 입원명령결핵환자치료관리현황 • 제공처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활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의 결핵관련 정보제공과 보건교육·상담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향후 결핵 재발 대비 추구 관리를 위해 활용 • 보관기간 : 반영구 • 활용근거 : 결핵예방법 제6조(결핵통계사업),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의 결핵균검사결과 및 입원명령결핵환자 치료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상 비밀준수의 의무, 결핵예방법 상 통계업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기타 상업적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식 16〉 환자 복약확인 관리대장

〈앞면〉

환자 복약확인 관리 대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세	성별	() 보건의료		
진단코드								남	여	
주소				연락처		Tel :				
						H.P :				
관련 일자		입원명령일	년	월	일	입원명령기간	총 _____ 일			
		입원명령해제일	년	월	일	입원명령해제기간	총 _____ 일			
		실제입원기간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내원 복약확인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복약확인 <input type="checkbox"/> 디지털복약기 복약확인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복약확인				
		복약확인 시작일	년	월	일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관할 <input type="checkbox"/> 실제 거주지관할			
처방 약제		경구용 항결핵제	약제명			처방 용량	복용 주기 /			
		주사 항결핵제	약제명			처방 용량	투약 주기 /			
중도 복약확인 실시 포기 시 사유										

* 의료기관에서 복약확인처료를 하는 경우로, 해당 빈칸에 의료기관명을 작성하고 뒷면의 관리대장은 의료기관 DOT 확인증으로 대체함

○ Contents

○ 주요변경사항	252
○ 1. 개요	253
○ 2. 사업추진체계	254
○ 3. 사업내용	255
● 가. 지원대상	255
● 나. 지원범위	255
○ 4. 사업추진방법	256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256
● 나. 의료비지급	257
○ 부록.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예시	259
○ 2. Q&A	262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2012년	2013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신고된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불능 처리 하며, 차후 신고시 소급되어 지급 	2013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내역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심사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심사후 지급) 	



개요

가. 사업 목적

-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결핵환자와 그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 향상
-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결핵 치료성공의 장애를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나. 사업 목표

-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하여 결핵 치료중단 예방으로 치료성공률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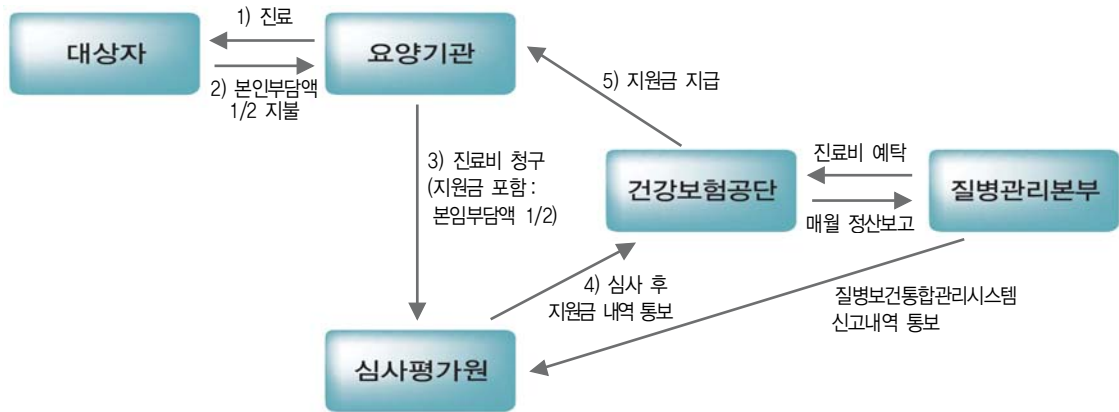
다. 추진경과

2006. 4	결핵퇴치 2030 계획 수립 -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2008. 4	결핵신환자 약제비지원 시범사업 실시 - 경기도 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
2009. 1	결핵환자 약제비지원 시범사업 확대실시 - 단국대학교의료원 약제비 지원
2011. 1.	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고시 개정
2011.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위탁을 위한 협약 체결
2011. 4. 1~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수행체계도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수행체계도]

나.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발 및 담당자 교육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예·결산 관리 및 실적 관리
-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결핵 연구 및 지원대상 질환 선정 등 기타 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예탁금 관리·집행·예산집행 실적관리
- 결핵 환자 자격정보연계, 구축 및 요양기관 제공
- 의료비 지급 및 환수내역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금 통보내역 확인 및 지급
- 의료비지원내역 질병관리본부에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결핵환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여부 확인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지원금 및 진료내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의료기관

- 결핵환자 발생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신고
- 수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 「수진자자격확인」에서 결핵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여부(산정특례) 확인 후 처리
- 지원대상자에게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사업추진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만 해당
 - ※ 의료급여, 보훈은 제외
- 대상명세서 :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의 결핵진료 명세서(입원·외래)
 - ※ 단,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 대상 특정기호 : V206, V246, V231(상해외인 구분자 'L' 인 경우만 해당)
- 대상매체 : 전산청구(정보통신망, 디스켓) 및 서면청구
- 지원대상 의료비 범위 : 요양급여비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액의 1/2만 해당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100/100)은 제외
- 지원대상 진료 범위 :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포함) 진료 적용범주와 동일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 (부록2 참고)

-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결핵진료(합병증 포함)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중 결핵진료분(합병증 포함)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명세서 「구분자」기재 :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 ※ 입원 중 동일과목진료의사(외래)의 경우 동일진료의사에게 결핵진료와 동시에 진료받은 타상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 지원금

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50/100 금액(10원미만 절상)

- 해당 특정기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2(특정기호)'
해당 특정기호 : V206, V246, V231(가정간호)
- 해당 등록번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특정기호(V231)와 함께 구분자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

나. 의료비 지급

■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간

- 지급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V206, V246)
 - 가정간호를 받은 자(V231)
- 지급기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날부터 산정특례 자격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50%)
 - ※ 단, 결핵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산정특례 등록 신청한 경우, 입원 초일부터 지급

■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간

- 지급범위
 - 결핵 진료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50%)
 - ※ 지원 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50%)을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 사소견서(또는 진단서)첨부 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함
 - ※ 지원 대상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결핵상병) 요양급여로,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
- 지급절차
 - 1) 결핵상병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환자를 신고하고 「4. 사업추진방법 → 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신고된 경우 의료비 미지급되며, 차후 신고시 소급되어 지급
 -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 청구한 요양기관에 지원금을 포함한 심사결정금액을 집행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서면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서면청구 요건 및 절차
 - 1) 서면청구 요건
 -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 결핵상병에 대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담당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 2) 서면청구 방법
 - 청구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청구기간 :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 진료비영수증, 합병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야 함
- 청구가능자: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 결핵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 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3)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지원대상 진료
 - 결핵 질환으로 인한 치료로 입원 시 동일 진료과목, 외래 시 같은 날 동일의사의 진료분에 한해 지급. 단, 입원 및 외래 시 합병증으로 인한 타과 전과 시에도 지원가능하고 이 경우 합병증임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 시 지원가능
 - ※ 명세서상 주상병이 결핵 상병이어야 함(단, 부상병일 때는 소견서 필요)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결핵상병(산정특례) 및 결핵상병 산정특례 미적용군(합병증과 관련된 약제)의 경우도 합병증치료를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 시 지원가능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
 - 한방진료 의료비(항결핵제가 없음)
 - 보건기관 진료(무료진료_보건진료원 제외)

• 지급절차

1) 지원대상자 확인

- 공단 각 지사에서 서면접수 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

2) 지급 요건 확인

- 결핵상병 또는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여부 확인
- 의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의 원본 여부 확인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비급여 항목 등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항목 여부

3) 본인부담금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는 지원자격, 지원범위, 사업안내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기준 시점을 준수하여 심사 및 지급의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일괄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영수증 서면 접수시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요됨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공지
 - ※ 서면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전 가지급이 불가능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완료 후 지급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소요됨

■ 지원금 환수 관리

- 요양기관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지급된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환수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예시

■ 작성예시

- 예시1 : 고시에서 정한 결핵 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전월누적 청구분			350만원 ^{주1)}					
현청구분	8,029,920	8,029,920	904,690 ^{주2)}	250,000 ^{주3)}	404,690	7,125,230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2013년도 진료분 중 전월까지 누적된 본인부담액
 주2) $[(254,250\text{원}(\text{식대총액}) \times 50\%) + (7,775,670\text{원}(\text{요양급여비용총액 1} - \text{식대총액}) \times 10\%)]$ 금액
 주3) 500,000원(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times 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전월누적 청구분			350만원 ^{주1)}					
현청구분	8,029,920	8,029,920	904,690 ^{주2)}	250,000 ^{주3)}	404,690	7,125,230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2013년도 진료분 중 전월까지 누적된 본인부담액
 주2) $[(254,250\text{원}(\text{식대총액}) \times 50\%) + (7,775,670\text{원}(\text{요양급여비용총액 1} - \text{식대총액}) \times 10\%)]$ 금액
 주3) 500,000원(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times 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예시2 : 고시에서 정한 결핵 상병으로 가정간호(병원급)를 시행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1	MT002	MT014
31,890	31,890	3,100 ^{주1)}	1,550 ^{주2)}	28,790	L ^{주3)}	V231	등록번호 기재

주1) 31,8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times 10% 금액
 주2) 3,100원(본인일부부담금) \times 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주3) 결핵환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만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상해외인	특정기호	등록번호
31,890	31,890	3,100 ^{주1)}	1,550 ^{주2)}	28,790	L ^{주3)}	V231	등록번호 기재

- 주1) 31,89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10% 금액
 주2) 3,1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주3) 결핵환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만 기재

- 예시3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고시에서 정한 결핵 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F	723,520	723,520	20,340 ^{주1)}	10,170 ^{주2)}	62,180	641,000	V206	등록번호 기재

- 주1) 101,700원(기본식대총액)×20% 금액
 주2) 20,34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F	723,520	723,520	20,340 ^{주1)}	10,170 ^{주2)}	62,180	641,000	V206	등록번호 기재

- 주1) 101,700원(기본식대총액)×20% 금액
 주2) 20,34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예시4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고시에서 정한 결핵 상병으로 의원 외래진료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F	18,010	18,010	250 ^{주1)}	130 ^{주2)}	750	17,010	V246	등록번호 기재

- 주1) 그밖의 외래진료시 정액본인부담액
 주2) 25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F	18,010	18,010	250 ^{주1)}	130 ^{주2)}	750	17,010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그밖의 외래진료시 정액본인부담액

주2) 25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예시5 : 약국에서 결핵상병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17,500	17,500	1,700 ^{주1)}	850 ^{주2)}	15,800	V206	등록번호 기재

주1) 17,5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10% 금액

주2) 1,7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17,500	17,500	1,700 ^{주1)}	850 ^{주2)}	15,800	V206	등록번호 기재

주1) 17,5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10% 금액

주2) 1,7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 예시6 : 약국에서 보훈감면환자(60%)에게 결핵상병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MT002	MT014
6	20,000	20,000	800 ^{주1)}	400 ^{주2)}	7,200 ^{주3)}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2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20,000원×0.6)}×10% 금액

주2) 8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주3) {2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20,000원×0.6)}-800원(본인일부부담금)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상 등 구분	요양급여 비용총액 2	요양급여 비용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금	청구액	특정기호	등록번호
6	20,000	20,000	800 ^{주1)}	400 ^{주2)}	7,200 ^{주3)}	V246	등록번호 기재

주1) {2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20,000원×0.6)}×10%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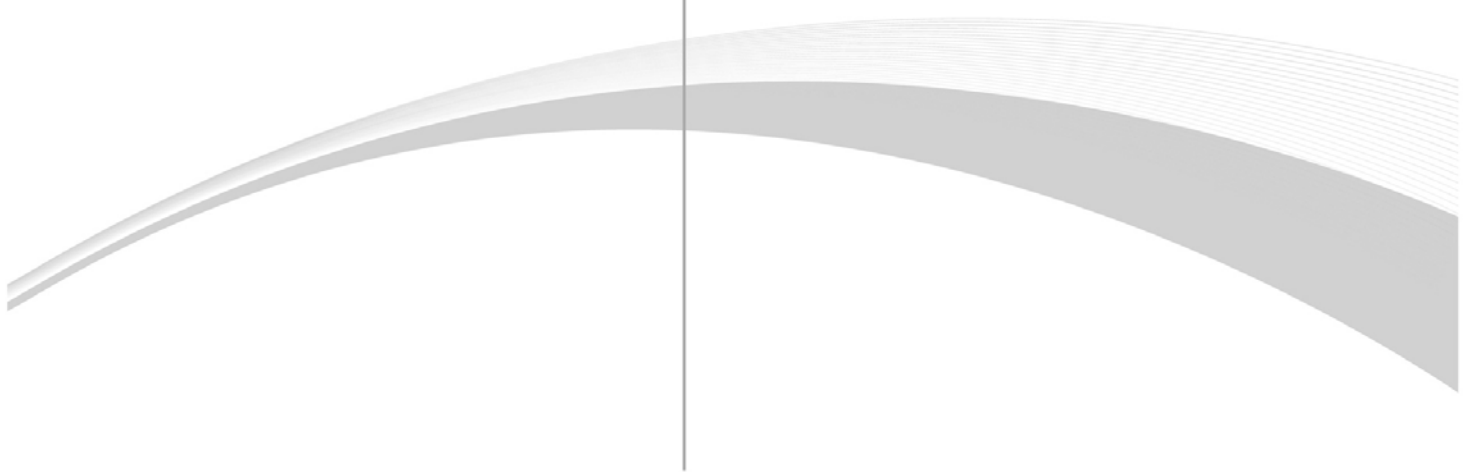
주2) 800원(본인일부부담금)×50% 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주3) {2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20,000원×0.6)}-800원(본인일부부담금)

연번	질 문	응 답
1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 현행과 동일하게 건보공단 자격조회시 “V” 만 표기
2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 청구시 지급시기는?	- 접수 후 심사전 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사전 지급 함(청구매체 불문)
3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 기재방법은?	- 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 × 1/2금액(10원미만 절상한 금액)
4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에게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을 일부 감면해주는 경우 지원금 기재방법은?	- 법정본인부담액의 1/2금액을 먼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서 감면해주도록 함
5	• 한방이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결핵환자를 진 료한 경우 지원 여부는?	- 해당되지 않음 · 한방 : 표준진료지침에 위배됨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 무료진료에 해당됨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 지원여부	- 해당되지 않음
6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제외) 가정간호와 결핵 환자 가정간호가 동일일에 함께 발생한 경우 청구방법(월 통합 작성기관)은?	- 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7	• 6세미만 아동(신생아 제외)이 결핵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특정기호를 모두 기재하되, 결핵 상병 관련 특정기호를 우선 기재함 ① V206(또는 V246) : 결핵상병 진료 ② F004 : 6세미만 입원진료
8	• 신생아가 결핵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 법은?	- 특정기호를 모두 기재하되, 신생아 입원진료 관련 특정기 호를 우선 기재함 ① F005 : 신생아 입원진료 ② V206(또는 V246) : 결핵상병 진료
9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지원금과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의 지원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의 지원금액을 우선 기재함
10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구분자 : F)로써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액만 발생된 경우 에도 지원 여부	- 지원대상임
11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구분자 : F)가 의원급 외래 진료시 정액본인부담액 250원 (또는 750원)만 발생된 경우에도 지원 여부	- 지원대상임
12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미신고되어 지급 불능 처리된 경우, 신고 후 다시 진료비 청구할 경우 소급하여 진료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신고 후 다시 진료비 청구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

○ Contents

○ 1. 결핵예방법	264
○ 2. 관련기관 연락처	279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

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투약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 및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검진)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출생 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결핵예방접종증명서 및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接客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 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모금 등)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쌀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쌀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쌀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 ②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경비
6. 제20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 금지) 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9963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2.9.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등록, 진료 및 복약(服藥) 관리
2. 결핵환자등과 그 가족 및 잠복결핵감염자의 교육과 상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제3조(결핵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소에서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에는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원 또는 병원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결핵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입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환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5조(부양가족의 생활보호조치) ① 법 제16조에서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소득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여 제4항에 따른 소득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 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 또는 그 가족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보호조치의 신청 절차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여부의 판정은 전염성결핵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22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支部)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① 협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크리스마스쌀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 시작일 2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총당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금 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 예정 총액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제12조(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1. 협회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부 칙 <제22667호, 2011. 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별지서식]

입원명령서			
성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입원장소	(시설명)	입원일	
	(주소)	기 간	~
<p>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p> <p>※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p>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15px; margin-left: 100px;">인</div>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16] [보건복지부령 제44호, 2011. 2.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인적사항, 진료·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결핵환자등의 사체를 검안(檢案)하거나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검진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실시 시기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결핵검진에 필요한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진대상, 그 밖에 결핵검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임산부·노인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喀痰)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병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시설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핵환자등의 발견 및 신고 접수 등
2. 결핵환자등의 추구검사(追求檢査) 및 집단유행 사례에 관한 역학조사
3. 결핵환자등의 검사 및 투약 등
4. 결핵환자등과 관련된 기록 및 통계 등의 관리
5. 그 밖에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방법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대상 접촉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결핵 감염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44호, 2011. 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작성요령		결핵질병코드 (※ 기타 결핵의 경우에는 해당 입력코드를 적습니다.)		
	입력코드	연계코드	내용	
<p>[1. 신고범위, 진단기준, 신고기한 및 법적 근거]</p> <p>가. 신고범위 : 환자(병원체 확인), 의사환자(병원체 미확인)</p> <p>나. 진단기준</p> <p>1) 환자: 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p> <p>가)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인 사람</p> <p>나)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인 사람</p> <p>2) 의사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p> <p>다. 신고기한: 지체 없이 신고</p> <p>라.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승인번호 제11756호</p>	A15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0		○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A15.1		○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2		○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3		○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4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A15.5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5.6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
		A15.7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일차 호흡기 결핵
		A15.8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기타 호흡기 결핵
		A15.9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A16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0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폐결핵
		A16.1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
		A16.2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결핵
		A16.3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A16.4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6.5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결핵성 흉막염
		A16.7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일차 호흡기 결핵
	A16.8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타 호흡기 결핵	
	A16.9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p>[2. 환자 구분]</p> <p>① 신환자: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p> <p>② 재발자: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환자</p> <p>③ 초치료 실패자: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 균양성인 경우 또는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p> <p>④ 중단 후 재등락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인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p> <p>⑤ 전입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장소를 옮겨 내소·내원한 환자</p> <p>⑥ 만성배균자: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인 환자</p> <p>⑦ 기타 환자: ① ~ ⑥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p>	A17		● 신경계통의 결핵	
		A17.0	G01*	○ 수막결핵
		A17.1	G07*	○ 수막결핵종
		A17.8	G05.0* G07* G63.0*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 결핵성 수막뇌염, 결핵성 척수염 · 뇌 및 척수의 결핵종,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결핵성 다발신경병증
		A17.9	G99.8*	○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결핵
		A18		● 기타 기관의 결핵
		A18.0	H75.0* M01.1* M49.0* M68.0* M90.0*	○ 목 및 관절의 결핵 · 결핵성 유골염 · 기타 관절의 결핵성 관절염 · 척추의 결핵 · 결핵성 윤활막염, 결핵성 활주면활막염 · 결핵성 뼈의 괴사, 결핵성 골염, 결핵성 골수염
		A18.1	N29.1* N33.0* N51.1* N74.0* N74.1* N77.0*	○ 비노생식기계의 결핵 · 신장 및 요관의 결핵 · 방광의 결핵 · 기타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 · 자궁경부의 결핵 · 결핵성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 결핵성 자궁내막염, 결핵성 난소염 및 난관염 · 결핵에서의 위음의 경우
		A18.2		○ 결핵성 말초 림프관병증
		A18.3	K67.3*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 결핵성 복막염
		A18.4	H03.1*	○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핵 · 결핵에서의 눈꺼풀 침범
		A18.5	H19.0* H19.2* H22.0* H32.0*	○ 눈의 결핵 · 결핵성 상공막염 · 결핵성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간질성) · 결핵성 홍채염·망막염 · 결핵성 맥락막염
		A18.6	H67.0*	○ 귀의 결핵 · 결핵성 중이염
		A18.7	E35.1*	○ 부신의 결핵 · 결핵성 애디슨 병
		A18.8	E35.0* I32.0* I39.* I41.0* I68.1* K23.0*	○ 기타 명시된 기관의 결핵 · 감삼선의 결핵 · 심낭막의 결핵 · 심내막의 결핵 · 심근의 결핵 · 결핵성 대뇌동맥염 · 식도의 결핵
		A19		● 종발 결핵
		A19.0		○ 하나로 명시된 부위의 급성 종발 결핵
		A19.1		○ 여러 부위의 급성 종발 결핵
		A19.2		○ 상세불명의 급성 종발 결핵
	A19.8		○ 기타 종발 결핵	
	A19.9		○ 상세불명의 종발 결핵	
	B20.0		● 결핵을 유발한 HIV병	
	B90		● 결핵의 후유증	
	J65		● 결핵과 연관된 친매종	
	O98.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결핵	
	P37.0		● 선천 결핵	
	U88.0		● 다약제내성 결핵	
	U88.1		●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참 조]
위 내용은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항결핵약제 목록]

약제명	표기	약제명	표기
isoniazid	H	levofloxacin	Lfx
rifampicin	R	moxifloxacin	Mfx
ethambutol	E	ofloxacin	Ofx
pyrazinamide	Z	protionamide	Pto
rifabutin	Rfb	cycloserine	Cs
kanamycin	Km	p-aminosalicylic acid	PAS
amikacin	Amk	Linezolid	Lzd
streptomycin	S	clarithromycin	Clr

(뒤쪽)

작성요령		결핵질병코드 (※ 기타 결핵의 경우에는 해당 입력코드를 적습니다.)																																							
입력코드	연계코드	내용																																							
<p>[1. 신고범위, 진단기준, 신고기한 및 법적 근거] 가. 신고범위 : 환자(병원체 확인), 의사환자(병원체 미확인) 나. 진단기준</p> <p>1) 환자: 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가)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인 사람 나)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배양 양성이 확인된 사람</p> <p>2) 의사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p> <p>다. 신고기한: 지체 없이 신고 라.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등의 신고,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승인번호 제11756호</p> <p>[2. 환자 구분] ① 신환자: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② 재발자: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환자 ③ 초치료 실패자: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 균양성인 경우 또는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④ 중단 후 재등록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인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⑤ 전입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장소를 옮겨 내소·내원한 환자 ⑥ 만성배균자: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인 환자 ⑦ 기타 환자: ① ~ ⑥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p> <p>[3. 신고요령] ① 제1호나목에 따른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② 제2호에 따른 "환자 구분"이 동일한 환자인 경우에는 한 번만 신고합니다. 단, 환자 구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환자구분에 따라 재신고합니다. ③ 질병코드는 보험청구 시 사용하는 표준 질병코드를 적습니다. (내성결핵인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추가로 표시합니다) ④ 기타 결핵의 경우 반드시 해당 입력코드를 적어야 합니다.</p> <p>[4. 항결핵약제 목록]</p> <table border="1"> <thead> <tr> <th>약제명</th> <th>표기</th> <th>약제명</th> <th>표기</th> </tr> </thead> <tbody> <tr> <td>isoniazid</td> <td>H</td> <td>levofloxacin</td> <td>Llx</td> </tr> <tr> <td>rifampicin</td> <td>R</td> <td>moxifloxacin</td> <td>Mfx</td> </tr> <tr> <td>ethambutol</td> <td>E</td> <td>ofloxacin</td> <td>Olx</td> </tr> <tr> <td>pyrazinamide</td> <td>Z</td> <td>protonamide</td> <td>Pto</td> </tr> <tr> <td>rifabutin</td> <td>Rfb</td> <td>cycloserine</td> <td>Cs</td> </tr> <tr> <td>kanamycin</td> <td>Km</td> <td>p-aminosalicylic acid</td> <td>PAS</td> </tr> <tr> <td>amikacin</td> <td>Amk</td> <td>Linezolid</td> <td>Lzd</td> </tr> <tr> <td>streptomycin</td> <td>S</td> <td>clarithromycin</td> <td>Clr</td> </tr> </tbody> </table> <p>[참조] 위 내용은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약제명	표기	약제명	표기	isoniazid	H	levofloxacin	Llx	rifampicin	R	moxifloxacin	Mfx	ethambutol	E	ofloxacin	Olx	pyrazinamide	Z	protonamide	Pto	rifabutin	Rfb	cycloserine	Cs	kanamycin	Km	p-aminosalicylic acid	PAS	amikacin	Amk	Linezolid	Lzd	streptomycin	S	clarithromycin	Clr	<p>A15 A15.0 A15.1 A15.2 A15.3 A15.4 A15.5 A15.6 A15.7 A15.8 A15.9 A16 A16.0 A16.1 A16.2 A16.3 A16.4 A16.5 A16.7 A16.8 A16.9 A17 A17.0 A17.1 A17.8 A17.9 A18 A18.0 A18.1 A18.2 A18.3 A18.4 A18.5 A18.6 A18.7 A18.8 A19 A19.0 A19.1 A19.2 A19.8 A19.9 B20.0 B90 J65 O98.0 P37.0 U88.0 U88.1</p>	<p>●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 상세분류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흉부,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일차 호흡기 결핵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기타 호흡기 결핵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상세분류의 호흡기 결핵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폐결핵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폐결핵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흉부,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결핵성 흉막염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일차 호흡기 결핵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타 호흡기 결핵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분류의 호흡기 결핵 ● 신경계통의 결핵 ○ 수막결핵 ○ 수막결핵중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 결핵성 수막염, 결핵성 척수염 - 뇌 및 척수의 결핵중,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결핵성 다발신경병증 ○ 상세분류의 신경계통의 결핵 ● 기타 기관의 결핵 ○ 폐 및 관腔의 결핵 - 결핵성 유동염 - 기타 관腔의 결핵성 관장염 - 척추의 결핵 - 결핵성 윤활막염, 결핵성 림프관염 - 결핵성 뼈의 과사, 결핵성 골염, 결핵성 골수염 ○ 비노생식기계통의 결핵 - 신장 및 요관의 결핵 - 방광의 결핵 - 기타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 - 자궁경부의 결핵 - 결핵성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 결핵성 자궁내막염, 결핵성 난소염 및 난관염 - 결핵에서의 외음부의 궤양 ○ 결핵성 말초 림프절병증 ○ 상, 복벽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 결핵성 복막염 - 결핵성 장염, 횡(대)소장의 결핵, 항문 및 직장 결핵, 후복막 결핵 ○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핵 - 결핵에서의 눈꺼풀 침범 ○ 눈의 결핵 - 결핵성 상공막염 - 결핵성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간질성) - 결핵성 홍채염 - 결핵성 맥락막염 ○ 귀의 결핵 - 결핵성 중이염 ○ 후신의 결핵 - 결핵성 에디슨 병 ○ 기타 명시된 기관의 결핵 - 감성선의 결핵 - 심장막의 결핵 - 심내막의 결핵 - 심근의 결핵 - 결핵성 대뇌동맥염 - 식도의 결핵 ● 종발 결핵 ○ 허나로 명시된 부위의 급성 종발 결핵 ○ 여러 부위의 급성 종발 결핵 ○ 상세분류의 급성 종발 결핵 ○ 기타 종발 결핵 ○ 상세분류의 종발 결핵 ● 결핵을 유발한 HIV병 ● 결핵의 후유증 ● 결핵과 연관된 진배증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결핵 ● 선천 결핵 ● 다인체내성 결핵 ● 광범위약제내성 결핵</p>
약제명	표기	약제명	표기																																						
isoniazid	H	levofloxacin	Llx																																						
rifampicin	R	moxifloxacin	Mfx																																						
ethambutol	E	ofloxacin	Olx																																						
pyrazinamide	Z	protonamide	Pto																																						
rifabutin	Rfb	cycloserine	Cs																																						
kanamycin	Km	p-aminosalicylic acid	PAS																																						
amikacin	Amk	Linezolid	Lzd																																						
streptomycin	S	clarithromycin	Clr																																						

나. 시·도

●● 연락처

No.	지역	담당과	사무실전화	사무실팩스
1	서울	보건정책담당관	02-2133-7525	02-2133-0724
2	부산	보건위생과	051-888-2852	051-888-2809
3	대구	보건정책과	053-803-6281	053-803-4069
4	인천	보건정책과	032-440-2747	032-440-8657
5	광주	건강정책과	062-613-3332	062-613-3329
6	대전	보건정책과	042-270-4852	042-600-2539
7	울산	보건위생과	052-229-3562	052-229-3519
8	경기	보건정책과	031-8008-4382 031-850-2764	031-8008-2429 031-850-2779
9	강원	보건정책과	033-249-2671	033-249-4038
10	충북	보건정책과	043-220-3144	043-220-3139
11	충남	보건행정과	042-251-2423	042-251-2429
12	전북	보건의료과	063-280-4692	063-280-2429
13	세종시	건강증진과	044-301-2145	044-211-5739
14	전남	보건한방과	061-286-6062	061-286-4780
15	경북	보건정책과	053-950-2422	053-950-2799
16	경남	보건행정과	055-211-4963	055-211-4959
17	제주	보건위생과	064-710-2938	064-710-2919

다. 민간단체

●● 연락처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 02-6929-3277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02-6326-3825

나. 홍보 실행방법

■ 전국 시·도 및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제공 홍보물(교육DVD, 포스터, 리플릿, 수첩 등) 적극 활용
- 관할 의료기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핵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결핵예방의 날(3.24)」 전·후 결핵예방주간(또는 결핵검진주간) 선포 및 거리 캠페인
- 관공서 및 공공기관 건물 로비 PDP(TV 등) 활용한 결핵예방 메시지 홍보
-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결핵사업에 대한 내용 게재 및 팝업 홍보
- 지역 내 버스 LED 모니터 및 음성광고 활용 홍보
- 지역 기차역(KTX역 등) 로비 및 대형 스크린 등에 결핵영상 홍보
-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모니터 활용 홍보
- 지역신문을 통한 언론홍보(인터뷰, 기획기사 등 적극 활용)
- 지역 건물 옥상 등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그래픽 자막 홍보
- 지하철 역사 내 안내용 전광판 활용 자막 메시지 홍보
- 보건소 전화 '링고서비스'를 활용한 안내 홍보
- 해당 기관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
- 기타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및 현수막 부착, 게시
- ※ 건물 로비 등 포스터, 리플릿 비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대국민 결핵ZERO 홈페이지(www.tbzero.com), 결핵바로알기 홈페이지(tbfree.cdc.go.kr) 등에서 결핵 관련 홍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

■ 의료기관

- 질병관리본부 제공 홍보물(교육형 DVD, 포스터, 리플릿, 수첩 등) 적극 활용
- 해당 기관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
- 의료기관 로비 PDP(TV 등) 활용한 안내 메시지 홍보
-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결핵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게재 및 팝업창 게시
- 유동인구가 많은 복도 등에 포스터 부착
- 결핵 관련 진료과(호흡기내과 등)에 리플릿 비치
- 지역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결핵예방 검진 캠페인